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과제



경기도

365열린도서관



B46292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과제



# 목차

제1장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출범.....1	
1. 안전문화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부의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출범	
제2장 경기도 안전사고 사례분석 현황.....10	
1. 교통사고.....10	
1)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2)31개 시,군 교통사고 사례분석 현황	
2. 생활안전사고.....83	
1)전기사고	
2)가스사고	
3)화재사고	
3. 산업재해.....99	
1)산업재해 발생 현황	
2)16개 시,도별 재해율 현황	
3)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전체 사망사고 원인분석	
4. 범죄발생 현황.....106	
1)경기도 5대 범죄 발생 현황	
2)2012년 범죄 발생 현황	
3)2010~2012년 범죄유형과 검거 현황	

5. 승강기사고 현황.....	117
제3장 선진국의 안전문화운동 사례고찰.....	118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영국	
5. 개별 우수사례소개(사례1~사례15)	
제4장 경기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129
1.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2. 도민의 안전문화운동 10대 실천수칙	
3. 우리가족의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제5장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133
1. 사회안전	
2. 생활안전	
3. 교통안전	
4. 산업재해	
제6장 31개 시,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180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사업)	

## 제 1장.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

### 1. 안전문화의 개념과 필요성

#### 1). 안전문화의 개념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CCPS(미국 화학공업협회)에서는 “공정안전관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개인과 조직의 안전에 관한 자세와 의식,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행동의 일원화가 필요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안전문화 지침으로는 첫째,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째, 자만의 방지와 최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하며, 셋째, 개인의 책임의식과 조직의 규제능력 함양이다.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허 익 등 현장에서 활동을 해온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문화를 “모든 국민 일상 삶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 전개하려는 의식과 행동변화의 통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 2). 안전문화 운동의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최근 30여년간 이루한 급진적인 경제발전과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 도처에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제와 안전의식 미흡등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 가중

※ 최근 들어서 안전의식부재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안전 대책이 요구됨

- ◆ 노량진 배수지 익사 사고 : 2013년 7월 15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하저터널 공사 중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7명이 익사 사망함
- ◆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 2013년 7월 17일 수영금지구역에서 훈련을 받다 고교생 5명 사망
- ◆ 울산 소방용수 탱크파열 사고 : 2013년 7월 26일 폴리실리콘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물탱크가 터져 3명 사망
- ◆ 삼성전자 불산 누출 : 2013년 5월 2일 작업 중이던 직원 3명 부상

- ◆ 잠실 롯데 슈퍼 타워 사고 : 2013년 6월 25일 건축물 상판 붕괴로 현장에서 1명 사망
- 또한 일반국민, 근로자, 시민단체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안전이 대외 경제력을 제고시키는 기반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국민 문화수준을 평가받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자기 직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선진 안전문화 정착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 3). 안전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정부에서는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초에 공포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의 특징은 ①「안전정책조정회의」신설, 총괄조정권 강화, ② 재난발생시 중앙재난대책본부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의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③ 재난 안전사고 현장에 대한 원인 조사제도 도입, ④ 중앙 및 지자체 안전책임관 임명, ⑤ 지역별 안전지수 공표제 도입 ⑥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1개의 장 신설 등이다.

## 2. 정부의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과 실천과제

### 1). 그간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

안전문화운동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1990년대 중반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세계가 주목하게 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주도의 본격적인 안전문화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1995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민-관 협의체가 발족되어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정기적으로 민-관-기업이 함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특히 시민단체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한 계몽활동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2004년 소방방재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안전문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안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안전부가 신설되고 2010년부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안전문화 업무를 이관 받아 안전문화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 안전을 국정의 최고 핵심 과제로 선정, 안전관련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 향후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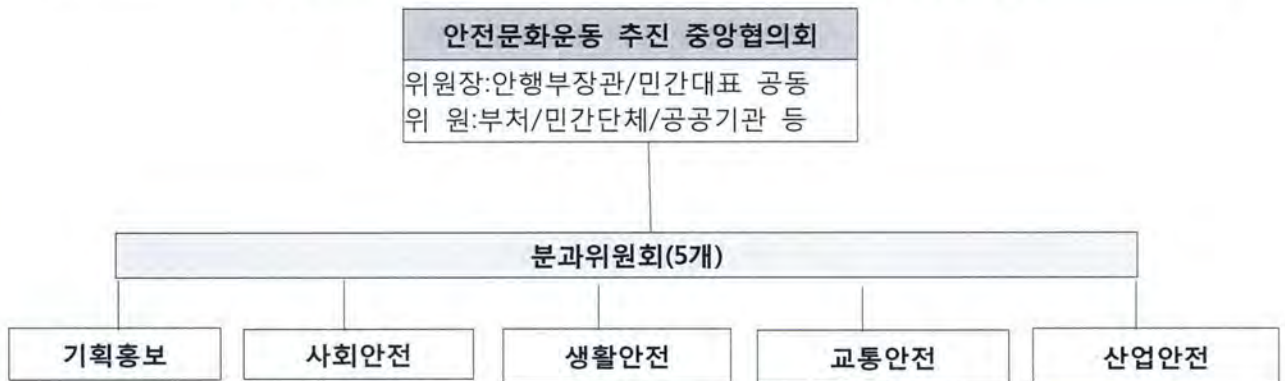
(1) 안전문화 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2013년 5월 30일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하였다.

80여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사회안전, 생활·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문협 분과회의와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4대분야 9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구성안



※ 분과별 참여기관

분과	민간단체	주무부처	협력부처	공공기관
기획 홍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안행부 문체부	방통위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소비자원
사회 안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패트롤맘,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사이버지킴이연합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학교안전공제회 양성평등교육진흥 원 한국정보진흥원

분과	민간단체	주무부처	협력부처	공공기관
생활 안전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코리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레저안전협회,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행부	산업부 방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안전관리원
교통 안전	대한교통학회,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어머니안전지도자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찰청	안행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산업 안전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노총,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안전진흥협회	고용부	산업부 방재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2) 읍면동 단위 「안전한 마을 만들기」운동 전개

금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자발적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안전한 마을 만들기」운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초기 이러한 안전공동체 활동의 붐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안전 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공모를 통해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초기 사업 운영비와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안전 시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내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마을의 시설안전(노후시설물 예찰활동 및 개선조치), 범죄안전(유형가.폐가 방범순찰, 가로등 설치 등), 교통안전(교통안전 지도.캠페인)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3) 안전교육 활성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국민들의 안전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안전습관은 조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방식도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사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식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종합 체험안전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등 10만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 성폭력, 화재, 식품 등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안전 위험이 높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14개의 체험관을 구성하고, 통학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년중에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 대상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학교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안전교육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 과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 (4)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준비

안전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들의 행동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민간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주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안전문화진흥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 3). 안전문화 실천과제 선정

- 향후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4대 분야의 9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분야	테마	실천과제
사회안전	안심사회 (Safe Society)	-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 NO) -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생활안전	안심생활 (Safe Life)	- 1가정 1안전요원 - 비상구 확인하기
교통안전	안심운전 (Safe Traffic)	-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 생활도로 30km/h 이하 서행하기
산업안전	안심일터 (Safe Work)	-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

### 4). 안심마을 시범 지자체 10개 선정

- 안행부는 2013년 8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10곳의 지자체에는 안행부에서 2014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원씩을 지원한다.
- 선정된 10곳의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지역	서울 은평구 김포 수원	진천군 천안시	부산 연제구 거창군	광주 남구 순천시	고성군

###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

####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3조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지침(2013. 6.)

#### □ 구 성 : 총 43명(위원장 2, 당연직 6, 공공기관 13, 민간단체 22)

- **공동대표(2명)** : 도지사 + (민간) 공동대표  
⇒ 민간공동 위원장 :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당연직(6명)** : 행정2부지사, 경기도 부교육감, 경기지방경찰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 고용노동부경기지청장
- **위촉직(35명)** : 시민단체(22명), 공공기관(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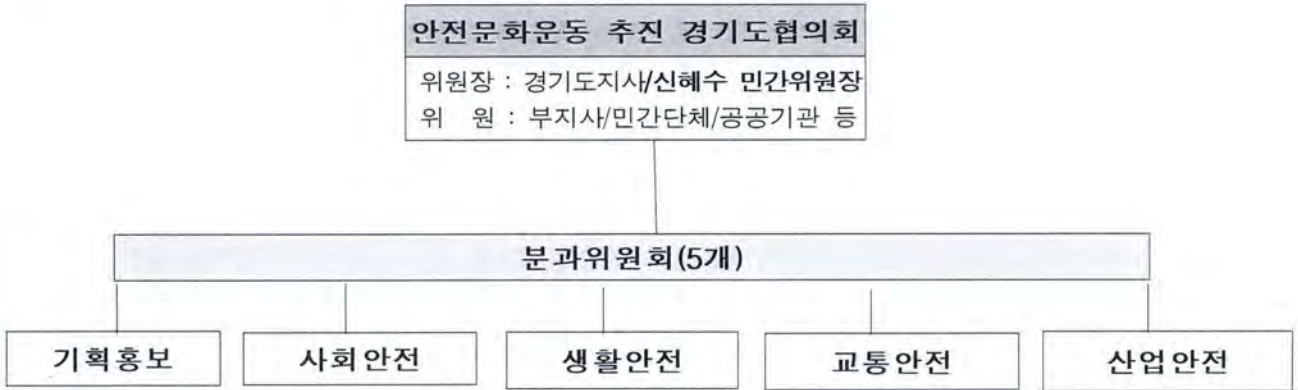
#### □출 범 일 : 2013년 11월 4일

#### □ 역 할

- 도내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분야 민·관 협의체 구성
-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해 사전예방을 우선시 하는 풍토 확산
-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로의 전환

#### □ 경기도 안문협 조직 체계도(별첨)

# 붙임 1 경기도 안문협 조직 체계도



## ※ 분과별 참여기관

분과위	시민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기획홍보 (9)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개발연구원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도청
사회안전 (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남부지역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경기대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생활안전 (9)	경기도 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한강유역환경청
교통안전 (8)	경기도 녹색어머니 연합회 경기도 새마을 교통봉사대 경기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지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교통연수원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 (7)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영자 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산업보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남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경기 안문협 분과별 위원 명단

연번	분 과		민 간 단 체 명	직위명	대표명	비고
1	기획홍보 (8명)	시민단체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장	김현탁	기획
2			경기도 새마을회	회장	이도형	홍보
3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이재문	홍보
4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지부장	우신구	홍보
5			경인일보	사장	송광석	홍보
6			경기일보	상임이사	신교철	홍보
7			중부일보	사장	임재울	홍보
8			공공기관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홍순영
9	사회안전 (7명)	시민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지부	위원장	박옥식	학교폭력
10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	이근묵	식품안전
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남부지역협의회	회장	장영석	인터넷 음란물
12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경기대표	회장	최영수	가정폭력
13		공공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소장	유순덕	가정폭력
14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	자살
15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장	오경석	외국인인권
16	생활안전 (7명)	시민단체	경기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	회장	박상복	생활안전
17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장	권영수	생활안전
18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문상옥	대형화재
19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지부	지부장	손동욱	인적재난
20		공공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이기종	전기안전
2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안완식	가스안전
2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지원장	강신천	승강기시설

연번	분과		민 간 단 체 명	직위명	대표명	비고
23	교통안전 (7명)	시민단체	경기도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	이유경	어린이 교통안전
24			경기도 새마을 교통봉사대	대장	업창섭	교통안전
25			경기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지부	회장	김광호	교통안전
26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원일	교통안전
27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김완섭	교통안전
28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허 인	교통안전
29			경기도 교통연수원	원장	김경삼	보행안전
30	산업안전 (6명)	시민단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회장	허 원	산업단지 안전
31			경기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	조용이	산업단지 안전
32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한주	건축 및 시설물관리
33			경기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윤동진	보건의료
34		공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남부지도원)	원장	김동춘	산업단지 안전
3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채병용	산업단지 안전

## 제 2장. 경기도 안전사고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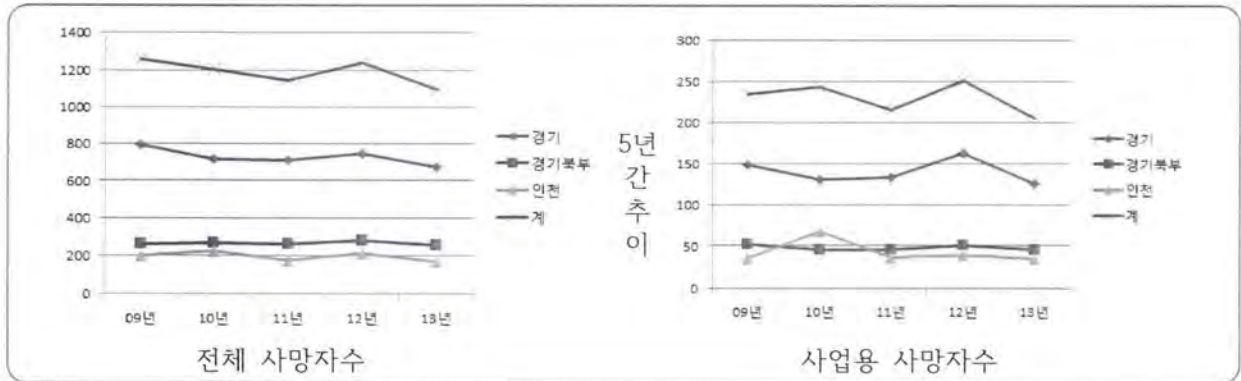
### 1. 교통사고 분석현황

#### 1)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22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392명이 사망했고 344,565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경기도는 44,763건이 발생하여 1,039명이 사망했고 71,026명이 부상당했다.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 체	경기	797	718	709	748	673
	경기북부	259	265	261	279	252
	인천	203	223	175	210	169
	계	1,259	1,206	1,145	1,237	1,094
사업용	경기	148	130	133	162	125
	경기북부	52	46	46	51	45
	인천	35	68	36	39	35
	계	235	244	215	252	205



-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는 5년간 1,151명 발생, 년평균 230명 발생하였으며, '13년 사망자는 205명으로 전년대비 47명(18.7%)이 감소
  - 지역별로 경기남부지역이 전년대비 가장 많은 37명(22.8%)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북부 6명(11.8%), 인천 4명(10.3%) 순으로 감소하였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5년간 5,941명 발생, 년평균 1,188명 발생하였으며, '13년에는 1,094명이 발생 전년대비 143명(11.6%)이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 인천지역이 전년대비 가장 많은 41명(19.5%)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남부 75명(10.0%), 경기북부 27명(9.7%) 순으로 감소하였음

■ 사고요인별 분석

구분	최근5년 평균	2013년	경기남부
업종별	○ 버스 : 77.4명(33.7%) ○ 법인택시 : 34.6명(15.1%) ○ 개인택시 : 17.6명(7.7%) ○ 화물 : 83명(36.1%) ○ 렌터카 : 17.2명(7.5%)	○ 버스 : 57명(28.2%) ○ 법인택시 : 32명(15.8%) ○ 개인택시 : 25명(12.4%) ○ 화물 : 67명(33.2%) ○ 렌터카 : 21명(10.4%)	○ 버스 : 32명(25.6%) ○ 법인택시 : 18명(14.4%) ○ 개인택시 : 11명(8.8%) ○ 화물 : 52명(41.6%) ○ 렌터카 : 12명(9.6%)
요일별	○ 월요일 : 34.8명(14.9%) ○ 화요일 : 38.2명(16.4%) ○ 수요일 : 31.8명(13.6%) ○ 목요일 : 34.2명(14.6%) ○ 금요일 : 33명(14.1%) ○ 토요일 : 32.8명(14.0%) ○ 일요일 : 28.8명(12.3%)	○ 월요일 : 36명(17.6%) ○ 화요일 : 31명(15.1%) ○ 수요일 : 28명(13.7%) ○ 목요일 : 35명(17.1%) ○ 금요일 : 30명(14.6%) ○ 토요일 : 16명(7.8%) ○ 일요일 : 29명(14.1%)	○ 월요일 : 24명(19.2%) ○ 화요일 : 20명(16.0%) ○ 수요일 : 12명(9.6%) ○ 목요일 : 22명(17.6%) ○ 금요일 : 19명(15.2%) ○ 토요일 : 10명(8.0%) ○ 일요일 : 18명(14.4%)
시간대별	○ 06~11 : 54명(23.1%) ○ 12~17 : 56.8명(24.3%) ○ 18~23 : 58명(24.8%) ○ 24~05 : 64.8명(27.7%)	○ 06~11 : 47명(22.9%) ○ 12~17 : 49명(23.9%) ○ 18~23 : 41명(20.0%) ○ 24~05 : 68명(33.2%)	○ 06~11 : 32명(25.6%) ○ 12~17 : 32명(25.6%) ○ 18~23 : 26명(20.8%) ○ 24~05 : 35명(28.0%)
지역별 (41개 행정구)	○ 성남 : 71명(6.2%) ○ 용인 : 67명(5.8%) ○ 고양, 평택 : 63명(5.5%) ○ 안양 : 54명(4.7%)	○ 평택 : 17명(8.3%) ○ 성남 : 16명(7.8%) ○ 고양 : 14명(6.8%) ○ 부평 : 11명(5.4%)	○ 평택 : 17명(13.6%) ○ 성남 : 16명(12.8%) ○ 수원 : 10명(8.0%) ○ 안산, 시흥 : 9명(7.2%)

구분	합계			경인(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12년	13년	증감 (증감률)	12년	13년	증감 (증감률)	12년	13년	증감 (증감률)	12년	13년	증감 (증감률)
계	252	205	△47 (△18.6)	163	125	△38 (△23.3)	50	45	△5 (△10.0)	39	35	△3 (△7.7)
버스	85	58	△27 (△31.7)	57	32	△25 (△32.9)	18	14	△4 (△22.2)	10	12	2 (20.0)
법인택시	43	34	△9 (△20.9)	17	18	1 (5.9)	10	9	△1 (△10.0)	16	7	△9 (△56.2)
개인택시	13	25	12 (92.3)	6	11	6 (83.3)	4	10	6 (150.0)	3	4	1 (33.3)
화물	91	67	△24 (△26.4)	68	52	△16 (△23.5)	13	8	△5 (△38.5)	10	7	△3 (△30.0)
렌터카	20	21	1 (5.0)	14	12	△2 (△14.3)	6	4	△2 (△33.3)	0	5	5 (-)

## 1 버스

■ 경인지역본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6.3%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28명 (85명→57명, 32.9%) 감소

연도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월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9년	87명	6명 (6.9%)	93명	-28명 (-30.1%)	65명	11명 (16.9%)	85명	-28명 (-32.9%)	57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93명	6명 (6.9%)	93명	-28명 (-30.1%)	65명	11명 (16.9%)	85명	-28명 (-32.9%)	57명	2009	4	3	6	10	5	9	9	2	7	13	10	9									
2011년	65명	11명 (16.9%)	85명	-28명 (-32.9%)	57명	2010	9	12	6	7	6	2	16	3	5	7	8	12	2011	8	9	2	6	10	2	4	6	2	6	4	6
2012년	85명	-28명 (-32.9%)	57명	2012	13	5	9	3	6	4	5	2	6	8	9	6	2013	8	3	5	4	6	1	4	2	8	4	7	5		
2013년	57명	2013	계	42	32	28	30	33	18	38	15	28	38	38	38																

■ 경기남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7.3%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25명 (57명→32명, 43.9%) 감소

연도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월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9년	52명	-12명 (-23.1%)	40명	-1명 (-0.03%)	39명	18명 (46.2%)	57명	-25명 (-43.9%)	32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40명	-12명 (-23.1%)	39명	18명 (46.2%)	57명	-25명 (-43.9%)	32명	2009	4	2	5	4	3	6	7	1	2	10	5	3											
2011년	39명	18명 (46.2%)	57명	-25명 (-43.9%)	32명	2010	3	7	3	6	3	1	1	1	4	1	3	7	2011	5	5	2	3	5	1	4	4	1	1	3	5
2012년	57명	-25명 (-43.9%)	32명	2012	11	3	5	2	4	2	7	1	3	6	7	6	2013	3	0	4	3	3	1	4	2	1	1	5	5		
2013년	32명	2013	계	26	17	19	18	18	11	23	9	11	19	23	26																

■ 경기북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9.5%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4명 (18명→14명, 22.2%) 감소

연도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월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9년	21명	-2명 (-9.5%)	19명	-4명 (-21.1%)	15명	3명 (20.0%)	18명	-4명 (-22.2%)	14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9명	-4명 (-21.1%)	15명	3명 (20.0%)	18명	-4명 (-22.2%)	14명	2009	0	0	1	4	0	3	1	0	3	1	4	4								
2011년	15명	3명 (20.0%)	18명	-4명 (-22.2%)	14명	2010	1	3	2	0	1	0	1	0	1	0	1	4	3	3								
2012년	18명	-4명 (-22.2%)	14명	2011	2	1	0	1	3	1	0	1	0	4	1	1	2012	1	1	3	1	0	2	2	0	2	2	2
2013년	14명	2012	계	6	6	7	7	6	6	5	1	9	12	12	10													

## 2 법인택시

■ 경인지역본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7.5%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11명 (43명→32명, 25.6%) 감소



■ 경기남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2%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1명 (17명→18명, 5.9%) 증가



■ 경기북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6%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1명 (10명→9명, 10.0%) 감소



### ③ 개인택시

■ 경인지역본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2.0%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12명 (13명→25명, 92.3%) 증가



■ 경기남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1.0%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5명 (6명→11명, 83.3%) 증가



■ 경기북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2%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6명 (4명→10명, 150.0%) 증가



#### 4 화물

■ 경인지역본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7%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24명 (91명→67명, 26.3%) 감소



■ 경기남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16명 (68명→52명, 23.5%) 감소



■ 경기북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8.7%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7명 (13명→8명, 38.5%) 감소



#### 4 렌터카

■ 경인지역본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2.1%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1명 (20명→21명, 5.0%) 증가



■ 경기남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대비 증감이 없고, 전년대비 2명 (14명→12명, 14.3%) 감소



■ 경기북부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3.3%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2명 (6명→4명, 33.3%) 감소



## 2 시간대별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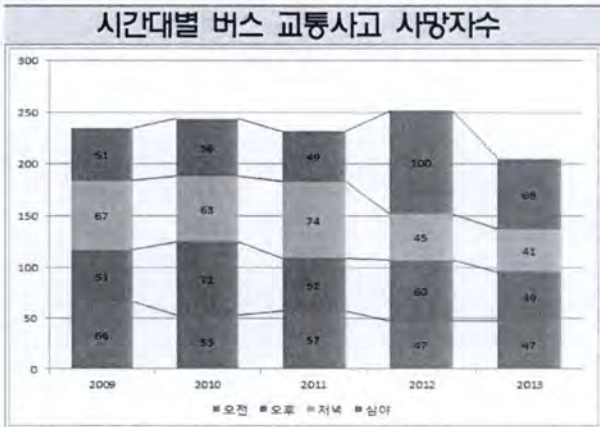


### 시간대별 사고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계			경인(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계	252	205	△47 (△18.6)	163	125	△38 (△23.3)	50	45	△5 (△10.0)	39	35	△3 (△7.7)
오전(06~11)	47	47	0 (0.0)	28	32	4 (14.3)	13	7	△6 (△46.2)	6	8	2 (33.3)
오후(12~17)	60	49	△11 (△18.3)	39	32	△7 (△17.9)	17	10	△7 (△41.2)	4	7	3 (75.0)
저녁(18~23)	45	41	△4 (△8.9)	32	26	△6 (△18.8)	3	9	6 (200.0)	10	6	△4 (△40.0)
심야(24~05)	100	68	△32 (△32.0)	64	35	△29 (△45.3)	17	19	2 (11.8)	19	14	△5 (△26.3)

■ 경인지역본부 : 5년 평균 및 '13년 시간대별 점유율은 심야시간이 각각 27.7%, 33.2%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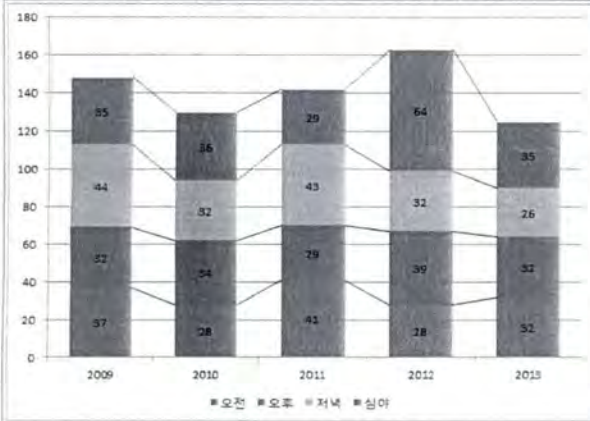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	오전 (06 ~ 11)	오후 (11 ~ 18)	저녁 (18 ~ 23)	심야 (23 ~ 06)	계
2009	66 (28.1%)	51 (21.7%)	67 (28.5%)	51 (21.7%)	235
2010	53 (21.7%)	72 (29.5%)	63 (25.8%)	56 (23.0%)	244
2011	57 (24.6%)	52 (22.4%)	74 (31.9%)	49 (21.1%)	232
2012	47 (18.7%)	60 (23.8%)	45 (17.9%)	100 (39.7%)	252
2013	47 (22.9%)	49 (23.9%)	41 (20.0%)	68 (33.2%)	205
계	270 (23.1%)	284 (24.3%)	290 (24.8%)	324 (27.7%)	1,168

■ 경기남부 : 5년간 점유율은 저녁시간과 심야시간에 가장 높고, '13년도에는 심야시간 사고가 증가

시간대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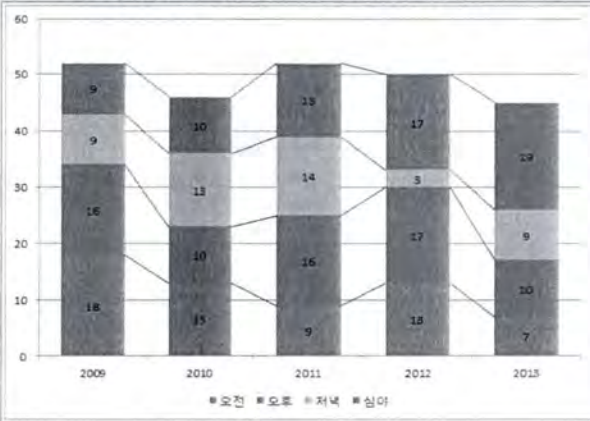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	오전 (06 ~ 11)	오후 (11 ~ 18)	저녁 (18 ~ 23)	심야 (23 ~ 06)	계
2009	37 (25.0%)	32 (21.6%)	44 (29.7%)	35 (23.6%)	148
2010	28 (21.5%)	34 (26.2%)	32 (24.6%)	36 (27.7%)	130
2011	41 (28.9%)	29 (20.4%)	43 (30.3%)	29 (20.4%)	142
2012	28 (17.2%)	39 (23.9%)	32 (19.6%)	64 (39.3%)	163
2013	32 (25.6%)	32 (25.6%)	26 (20.8%)	35 (28.0%)	125
계	166 (23.4%)	166 (23.4%)	177 (25.0%)	199 (28.1%)	708

경기북부 : 5년간 점유율은 고루 분포되어 있고, 13년도에는 심야시간 사고가 증가

시간대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	오전 (06 ~ 11)	오후 (11 ~ 18)	저녁 (18 ~ 23)	심야 (23 ~ 06)	계
2009	18 (34.6%)	16 (30.8%)	9 (17.3%)	9 (17.3%)	52
2010	13 (28.3%)	10 (21.7%)	13 (28.3%)	10 (21.7%)	46
2011	9 (17.3%)	16 (30.8%)	14 (26.9%)	13 (25.0%)	52
2012	13 (26.0%)	17 (34.0%)	3 (6.0%)	17 (34.0%)	50
2013	7 (15.6%)	10 (22.2%)	9 (20.0%)	19 (42.2%)	45
계	60 (24.5%)	69 (28.2%)	48 (19.6%)	68 (27.8%)	245

### 3 요일별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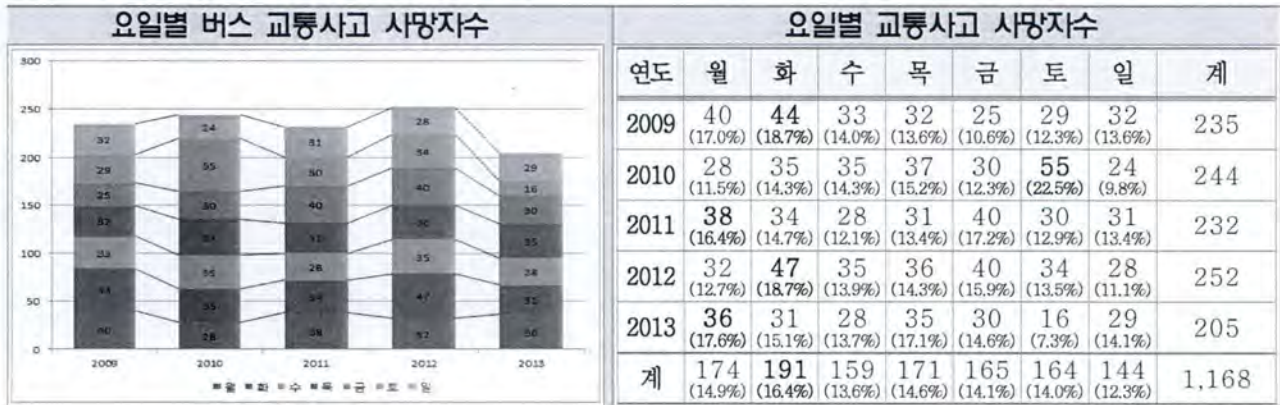


#### 요일별 사고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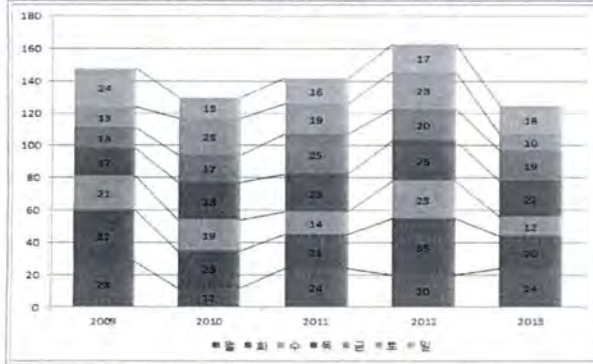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경인(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12년	13년	증감 (증감율)
계	252	205	△47 (△18.6)	163	125	△38 (△23.3)	50	45	△5 (△10.0)	39	35	△3 (△7.7)
월	32	36	4 (12.5)	20	24	4 (20.0)	4	8	4 (100.0)	8	4	△4 (△50.0)
화	47	31	△16 (△34.0)	35	20	△15 (△42.9)	8	4	△4 (△50.0)	4	7	3 (△75.0)
수	35	28	△7 (△20.0)	23	12	△11 (△47.8)	11	8	△3 (△27.3)	1	8	△7 (△700.0)
목	36	35	△1 (△2.8)	25	22	△3 (△12.0)	7	7	0 (0.0)	4	6	2 (△50.0)
금	40	30	△10 (△25.0)	20	19	△1 (△5.0)	8	7	△1 (△12.5)	12	4	△8 (△66.7)
토	34	16	△18 (△52.9)	23	10	△13 (△56.5)	5	1	△4 (△80.0)	6	5	△1 (△16.7)
일	28	29	1 (△3.6)	17	18	1 (5.9)	7	10	3 (42.9)	4	1	△4 (△75.0)

경인지역본부 : 5년간 및 13년도 요일별 사망자수 점유율은 월, 화요일에 집중되어 있음



경기남부 : 5년간 요일별 사망자수는 주중에 분포되어 있고 13년도에는 월요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요일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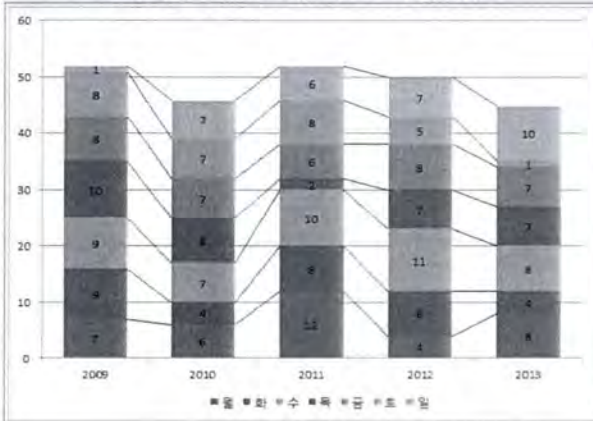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2009	28	32	21	17	13	13	24	148
	(18.9%)	(21.6%)	(14.2%)	(11.5%)	(8.8%)	(8.8%)	(16.2%)	
2010	12	23	19	23	17	23	13	130
	(9.2%)	(17.7%)	(14.6%)	(17.7%)	(13.1%)	(17.7%)	(10.0%)	
2011	24	21	14	23	25	19	16	142
	(16.9%)	(14.8%)	(9.9%)	(16.2%)	(17.6%)	(13.4%)	(11.3%)	
2012	20	35	23	25	20	23	17	163
	(12.3%)	(21.5%)	(14.1%)	(15.3%)	(12.3%)	(14.1%)	(10.4%)	
2013	24	20	12	22	19	10	18	125
	(19.2%)	(16.0%)	(9.6%)	(17.6%)	(15.2%)	(8.0%)	(14.4%)	
계	108	131	89	110	94	88	88	708
	(15.3%)	(18.5%)	(12.6%)	(15.5%)	(13.3%)	(12.4%)	(3.4%)	

■ 경기북부 : 5년간 요일별 점유율은 월, 수, 목요일이 높고 '13년도에는 일요일이 높게 나타남

요일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수



요일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
2009	7	9	9	10	8	8	1	52
	(13.5%)	(17.3%)	(17.3%)	(19.2%)	(15.4%)	(15.4%)	(1.9%)	
2010	6	4	7	8	7	7	7	46
	(13.0%)	(8.7%)	(15.2%)	(17.4%)	(15.2%)	(15.2%)	(15.2%)	
2011	12	8	10	2	6	8	6	52
	(23.1%)	(15.4%)	(19.2%)	(3.8%)	(11.5%)	(15.4%)	(11.5%)	
2012	4	8	11	7	8	5	7	50
	(8.0%)	(16.0%)	(22.0%)	(14.0%)	(16.0%)	(10.0%)	(14.0%)	
2013	8	4	8	7	7	1	10	45
	(17.8%)	(8.9%)	(17.8%)	(15.6%)	(15.6%)	(2.2%)	(22.2%)	
계	37	33	45	34	36	29	31	245
	(15.1%)	(13.5%)	(18.4%)	(13.9%)	(14.7%)	(11.8%)	(12.7%)	

## 2)31개 시,군 교통사고 사례분석 현황

### (1) 경기 수원시

#### 가. 교통안전지수

#####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 교통여건

구 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147,955	415,774	836.10

######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4,483	58	6,946
중사고	1,421	58	2,327
보행사상자	-	36	1,032

경기 수원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2.7%(29,758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4%(17,568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3%(2.49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7.8%(323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34.9%(15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38.5%(10명) 증가하였다.

#####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18	123.79	1.39	5.05	0.01	0.62	1.70	0.07
백분위(%)수준	83.0	92.2	93.2	95.6	94.5	37.9	64.1	70.9

경기 수원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62명으로 37.9%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7건으로 64.1% 수준으로 나타났다.

#####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 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9795	-0.3639	0.6717	-0.3182	79.0	-1.1
백분위(%)수준	86.4	75.7	62.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수원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9점으로 전년의 80.1점 보다 1.1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6.4%, 희생요인 75.7%, 도로환경요인 62.3%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36	6	3	23	1	9	2	4	5

- 사고증감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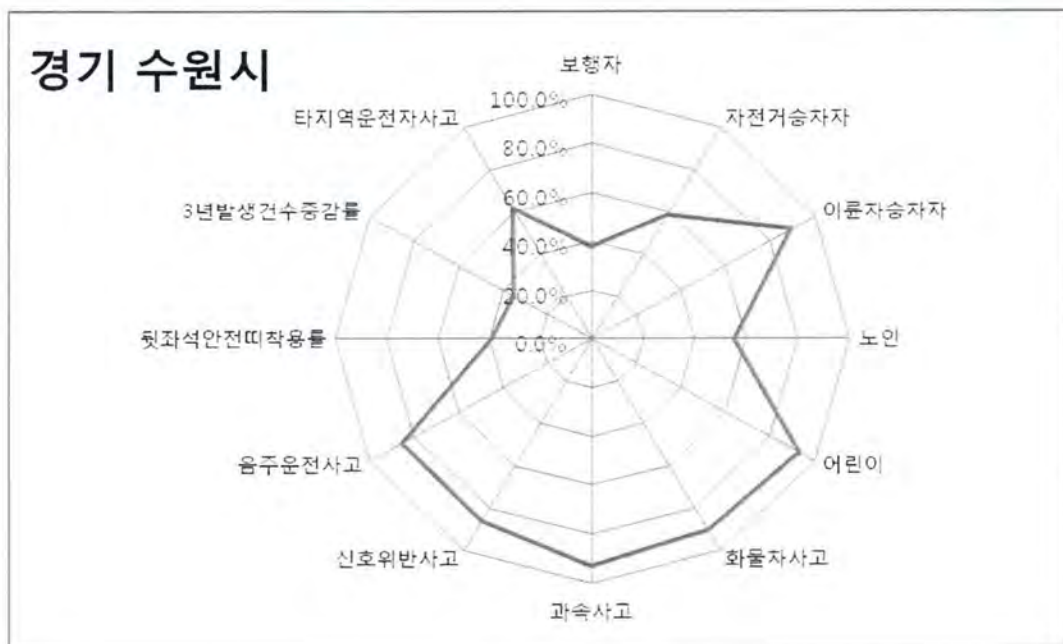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4.4	38.9	37.9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37.9	58.6	89.7	55.4	93.5	90.5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3.1	86.2	85.6	38.9	35.1	62.1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수원시에서는 보행자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기 성남시

### 가. 교통안전지수

####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994,271	330,670	650.89

#####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3,317	44	5,064
중사고	1,394	44	2,294
보행사상자	-	22	834

경기 성남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2%(2,178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0.5%(1,669대) 감소했으며, 도로연장은 0.5%(3.0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3.4%(391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3.7%(7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12%(3명) 감소하였다.

####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2.16	140.20	1.33	4.43	0.01	0.50	2.14	0.07
백분위(%)수준	73.9	89.1	93.8	96.5	94.1	50.0	54.2	71.8

경기 성남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5명으로 50%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2.14건으로 54.2% 수준으로 나타났다.

####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5577	-0.5415	0.9061	-0.2407	77.8	-0.8
백분위(%)수준	79.5	80.3	57.6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성남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7.8점으로 전년의 78.7점 보다 0.8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9.5%, 희생요인 80.3%, 도로환경요인 57.6%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2	1	4	12	3	5	0	4	6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8.5	52.0	56.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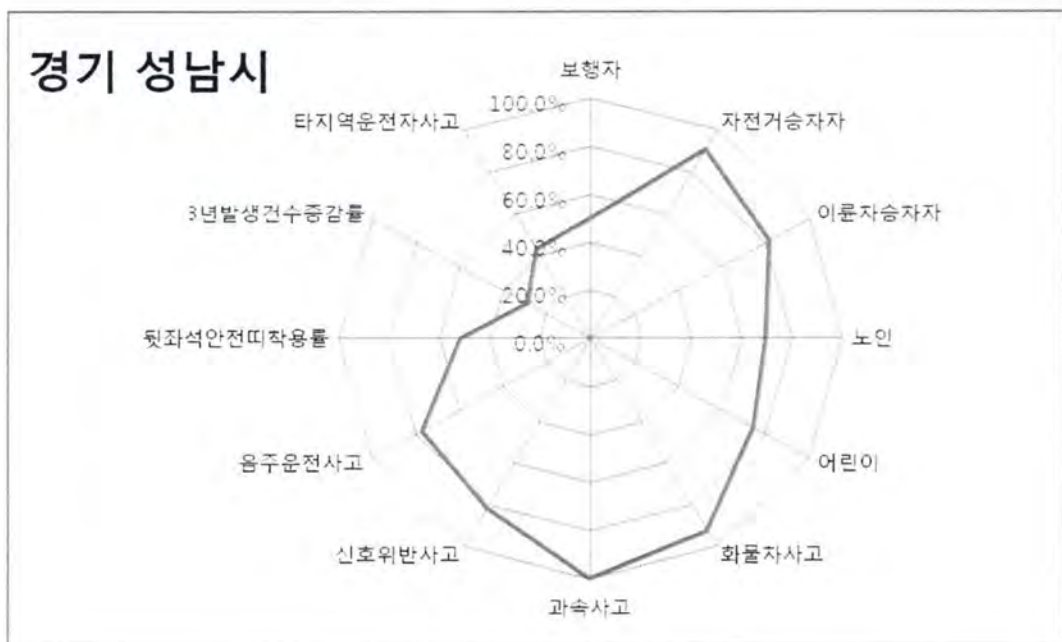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0.0	90.9	81.8	69.3	74.4	92.5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81.8	77.3	52.0	28.7	43.2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성남시에서는 보행자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3) 경기 의정부시

#### 가. 교통안전지수

#####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32,760	140,045	345.42

######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438	27	2,140
중사고	481	27	710
보행사상자	-	17	386

경기 의정부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4%(1,530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1%(1,578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2.1%(6.97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3.5%(224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2.5%(3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54.5%(6명) 증가하였다.

#####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35	111.15	1.93	6.24	0.01	0.63	1.39	0.08
백분위(%)수준	82.8	94.7	89.0	94.0	89.8	37.0	71.0	66.6

경기 의정부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63명으로 37%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8명으로 66.6% 수준으로 나타났다.

#####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0513	-0.2181	0.6287	-0.2733	78.3	-1.5
백분위(%)수준	87.6	71.9	63.2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의정부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8.3점으로 전년의 79.8점보다 1.5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7.6%, 희생요인 71.9%, 도로환경요인 63.2%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7	4	1	15	0	3	2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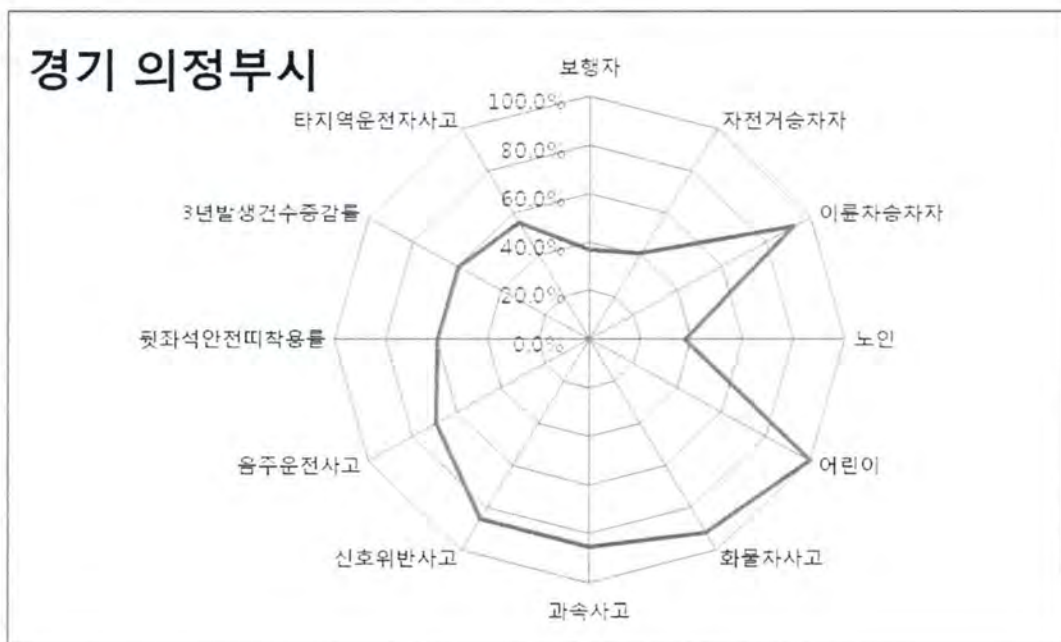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8	59.5	44.4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37.0	40.7	92.6	37.5	100.0	92.1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85.2	85.2	69.1	59.5	59.3	55.6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보행자사고, 자전거사고, 노인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4) 경기 안양시

##### 가. 교통안전지수

######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618,230	207,922	392.28

######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082	36	3,136
중사고	726	36	1,119
보행사상자	-	17	492

경기 안양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8%(4,997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0.8%(1,584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2%(0.61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4.7%(267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7.7%(3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2.7%(5명) 감소하였다.

######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92	117.43	1.73	5.82	0.01	0.47	1.85	0.09
백분위(%)수준	82.2	93.5	90.5	94.6	91.0	52.8	60.7	60.0

경기 안양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47명으로 52.8%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9명으로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9894	-0.4758	1.1161	-0.2841	78.5	1.1
백분위(%)수준	86.5	78.6	53.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 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안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8.5점으로 전년의 77.4점 보다 1.1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6.5%, 희생요인 78.6%, 도로환경요인 53.3%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7	5	7	8	1	1	0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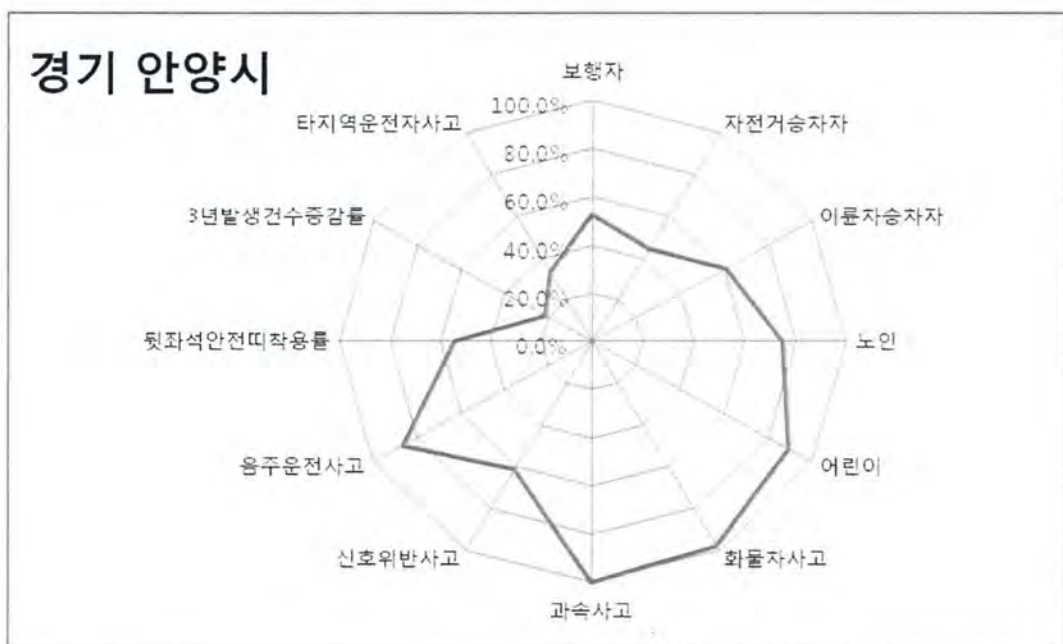
####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3.2	54.2	66.7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2.8	44.4	61.1	75.0	89.6	98.0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61.1	86.1	54.2	21.2	33.3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안양시에서는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5) 경기 부천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885,949	296,249	593.44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3,097	29	4,725
중사고	1,129	29	1,806
보행사상자	-	13	849

경기 부천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4%(3,551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2%(3,614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3%(74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9.4%(3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35%(7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8.11	127.43	0.98	3.27	0.01	0.45	1.90	0.05
백분위(%)수준	78.5	91.5	96.6	98.1	97.0	55.2	59.6	80.9

경기 부천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45명으로 55.2%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9건으로 59.6%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7992	-0.7034	0.4675	-0.4833	81.5	2.0
백분위(%)수준	83.4	84.6	66.4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부천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1.5점으로 전년의 79.6점 보다 2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3.4%, 희생요인 84.6%, 도로환경요인 66.4%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3	4	9	8	0	4	0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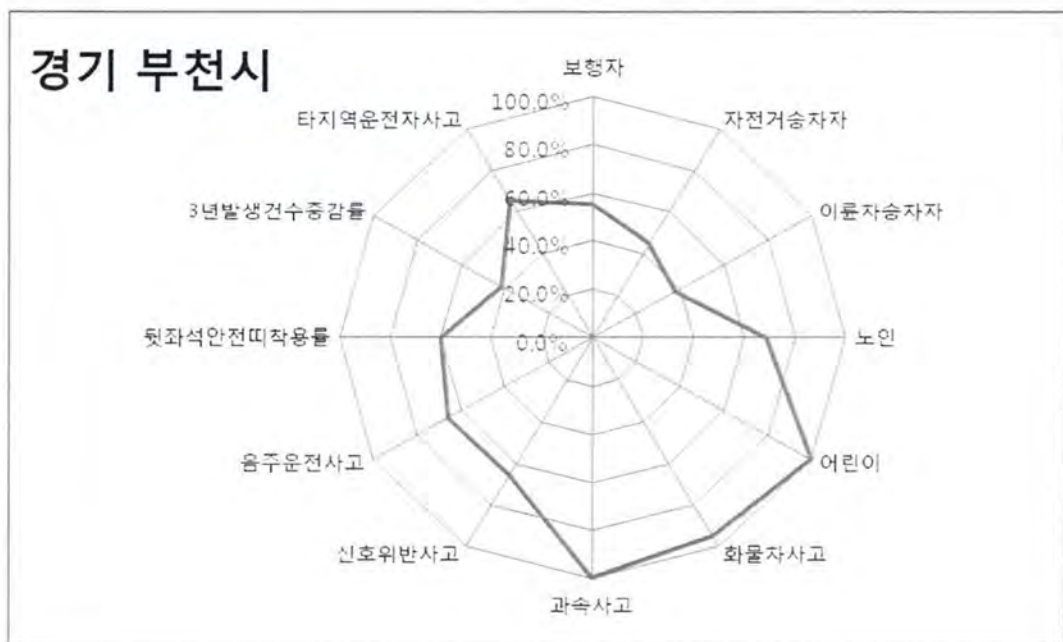
####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3	59.6	34.5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5.2	44.8	37.9	69.0	100.0	95.2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65.5	65.5	59.6	41.6	65.5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부천시에서는 자전거사고, 이륜차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6) 경기 안산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758,573	278,714	859.74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835	49	4,518
중사고	1,144	49	1,899
보행사상자	-	15	663

경기 안산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2%(1,329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5%(3,992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6%(13.31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8%(156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8.9%(4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5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1.05	150.81	1.76	6.46	0.01	0.31	1.33	0.06
백분위(%)수준	75.2	87.1	90.3	93.7	91.7	69.4	72.4	76.9

경기 안산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1명으로 69.4%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33건으로 72.4%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5363	-0.6974	0.2568	-0.4509	81.0	0.5
백분위(%)수준	79.1	84.4	70.7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안산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1점으로 전년의 80.5점 보다 0.5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9.1%, 희생요인 84.4%, 도로환경요인 70.7%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5	4	9	13	1	8	2	2	15

- 사고증감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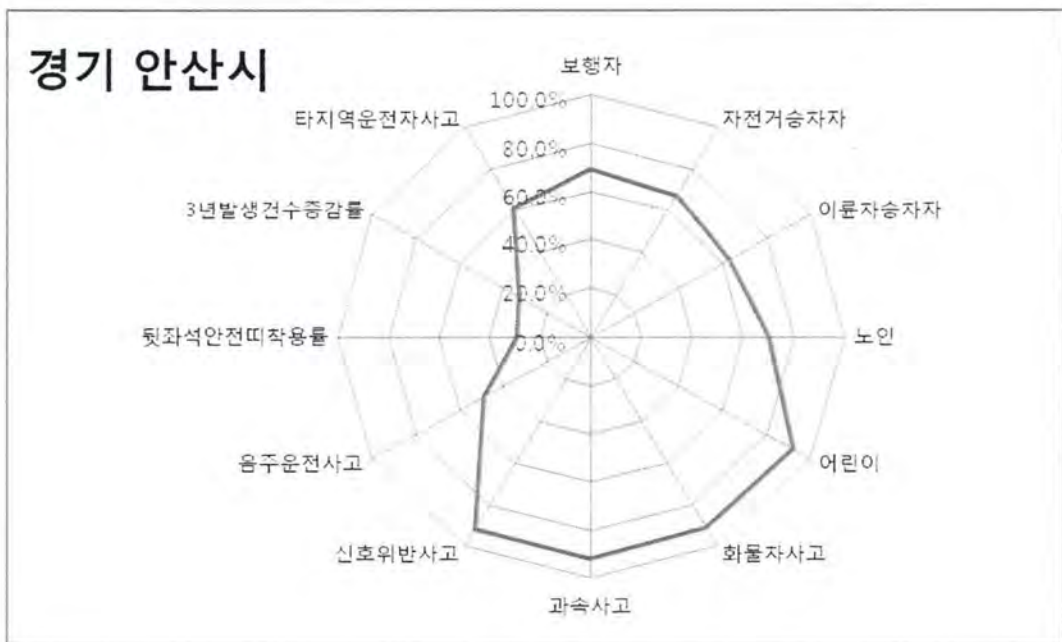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5.9	29.1	38.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9.4	67.3	63.3	70.2	92.3	91.3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1.8	91.8	49.0	29.1	32.7	61.2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안산시에서는 음주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7) 경기 평택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47,337	201,082	721.62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021	58	3,288
중사고	840	58	1,385
보행사상자	-	24	464

경기 평택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6%(7,154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7,69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35.5%(189.21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3.2%(66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6.5%(4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4.3%(1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1.77	187.78	2.88	12.97	0.02	0.41	1.16	0.08
백분위(%)수준	74.4	80.0	81.2	84.5	84.3	58.6	76.1	65.5

경기 평택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41명으로 58.6%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8명으로 65.5%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2773	-0.2287	0.5281	-0.0827	75.4	3.8
백분위(%)수준	74.9	72.2	65.2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평택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5.4점으로 전년의 71.6점 보다 3.8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4.9%, 희생요인 72.2%, 도로환경요인 65.2%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4	4	5	16	2	11	0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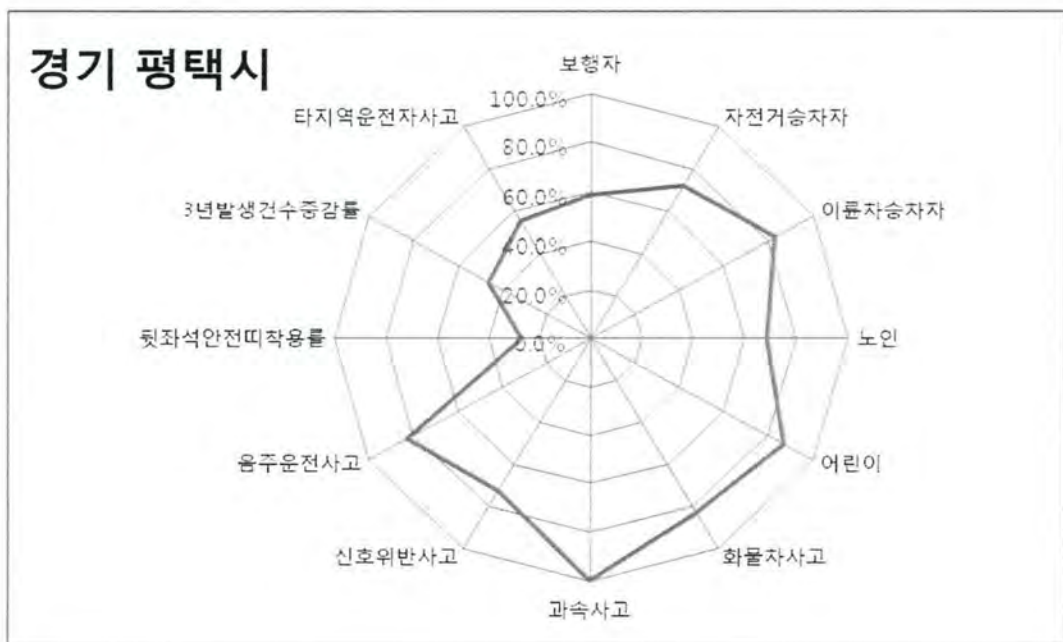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2.5	27.1	44.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8.6	72.4	82.8	69.0	87.1	83.1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72.4	82.8	27.1	46.1	55.2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평택시에서는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8) 경기 광명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360,004	111,318	245.95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818	22	1,218
중사고	338	22	502
보행사상자	-	10	243

경기 광명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54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2.3%(2,476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1%(0.31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3.3%(28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4.8%(1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9.1%(1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0.36	93.89	1.98	6.11	0.02	0.45	1.37	0.09
백분위(%)수준	87.3	98.0	88.6	94.2	83.8	54.5	71.4	61.1

경기 광명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45명으로 54.5%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9명으로 61.1%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3182	-0.3796	0.7966	-0.3949	80.2	1.6
백분위(%)수준	91.9	76.1	59.8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광명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0.2점으로 전년의 78.5점 보다 1.6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91.9%, 희생요인 76.1%, 도로환경요인 59.8%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0	2	6	1	0	4	0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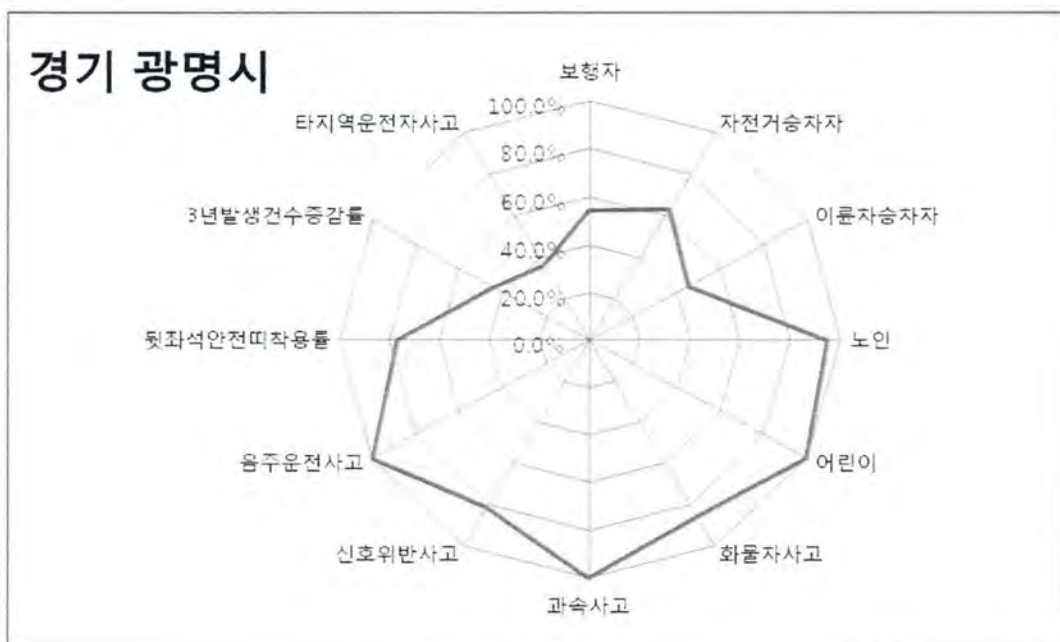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5	76.9	63.6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4.5	63.6	45.5	94.9	100.0	86.3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81.8	100.0	76.9	44.5	36.4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광명시에서는 이륜차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9) 경기 구리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93,745	65,814	130.40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672	9	1,125
중사고	253	9	473
보행사상자	-	3	155

경기 구리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3%(2,596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0.2%(137대) 감소했으며, 도로연장은 4.7%(6.46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4%(9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50%(9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62.5%(5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8.44	130.58	1.37	4.65	0.01	0.33	1.94	0.07
백분위(%)수준	78.2	90.9	93.5	96.2	94.9	66.7	58.7	71.1

경기 구리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94건으로 58.7% 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33명으로 66.7%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7664	-0.7712	0.8090	-0.4365	80.8	7.8
백분위(%)수준	82.9	86.3	59.5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구리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0.8점으로 전년의 73점 보다 7.8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2.9%, 희생요인 86.3%, 도로환경요인 59.5%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3	1	0	1	0	2	0	1	5

####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	52.4	66.7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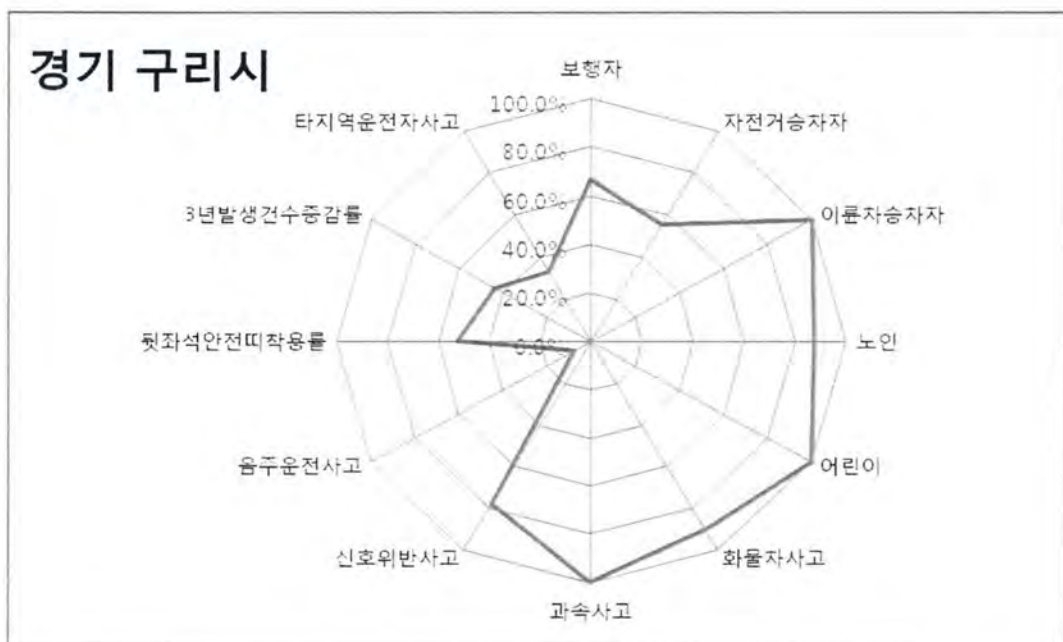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6.7	55.6	100.0	87.5	100.0	89.9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77.8	7.4	52.4	43.8	33.3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구리시에서는 음주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기 양주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07,321	83,954	396.9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925	26	1,500
중사고	372	26	630
보행사상자	-	9	156

경기 양주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3%(550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8%(1,466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6%(2.5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8%(51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6.1%(5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3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4.31	179.43	3.10	12.54	0.02	0.35	0.94	0.07
백분위(%)수준	71.5	81.6	79.5	85.1	84.6	65.4	81.1	72.8

경기 양주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5명으로 65.4% 수준, 자동차1만대당 중사고건수는 44.31건으로 71.5%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2275	-0.3116	0.1579	-0.1890	77.0	1.2
백분위(%)수준	74.1	74.3	72.7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양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7점으로 전년의 75.9점 보다 1.2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4.1%, 희생요인 74.3%, 도로환경요인 72.7%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9	0	3	5	0	4	0	1	2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4	75.0	73.1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5.4	100.0	76.9	78.4	100.0	87.3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92.3	87.2	75.0	41.5	26.9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양주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1) 경기 여주군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11,929	61,736	504.0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464	19	815
중사고	239	19	459
보행사상자	-	7	66

경기 여주군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3%(290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2.8%(1,672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2.8%(13.79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9%(13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4%(6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2.2%(2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8.71	213.53	3.08	16.98	0.02	0.37	0.47	0.04
백분위(%)수준	77.9	75.0	79.7	78.9	78.1	63.2	91.5	86.3

경기 여주군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7명으로 63.2% 수준, 인구10만명당 중사고건수는 213.53건으로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2400	-0.1228	-0.5571	-0.2473	77.9	4.2
백분위(%)수준	74.3	69.4	87.1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여주군의 교통안전지수는 77.9점으로 전년의 73.7점 보다 4.2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4.3%, 희생요인 69.4%, 도로환경요인 87.1%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7	2	3	7	0	2	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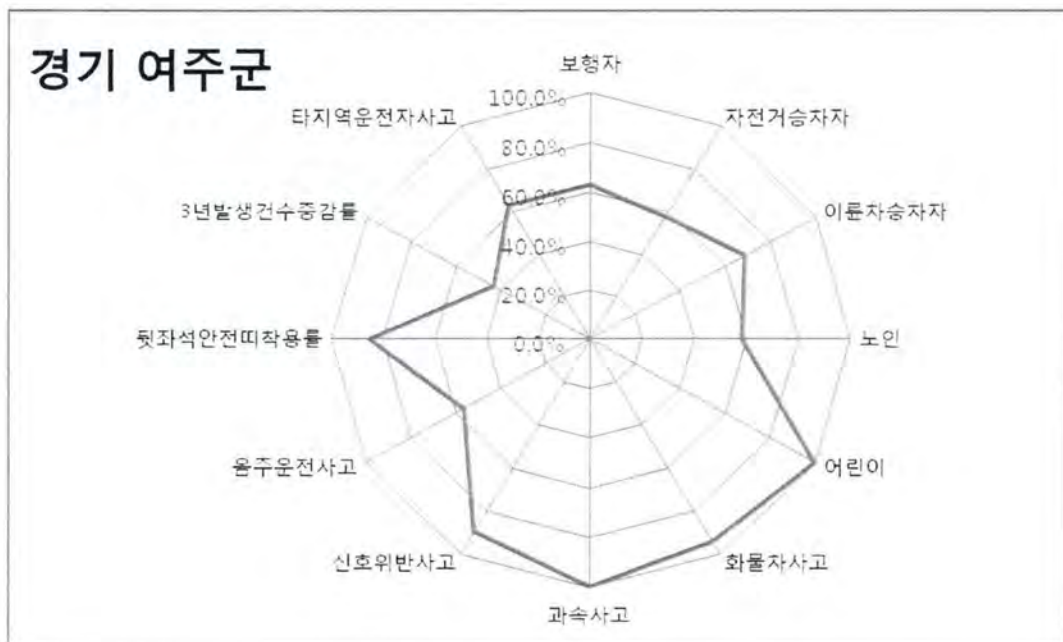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5	85.2	36.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3.2	57.9	68.4	58.6	100.0	94.5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89.5	56.1	85.2	43.0	63.2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여주군에서는 자전거사고, 노인사고, 음주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2) 경기 화성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550,649	249,389	714.77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998	81	3,266
중사고	758	81	1,350
보행사상자	-	23	343

경기 화성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3%(6,805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2%(7,831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3.2%(23.66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0.3%(5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8.6%(18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8%(8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0.39	137.66	3.25	14.71	0.02	0.28	1.06	0.11
백분위(%)수준	87.3	89.6	78.3	82.1	76.5	71.6	78.4	49.5

경기 화성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11명으로 49.5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28명으로 71.6%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0450	-0.2412	0.9883	-0.2074	77.3	0.2
백분위(%)수준	87.5	72.5	55.9	-		

주 : 1) 요인합계 = 적제값(W<sub>1</sub>)×발생요인 + 적제값(W<sub>2</sub>)×희생요인 + 적제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화성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7.3점으로 전년의 77.1점 보다 0.2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7.5%, 희생요인 72.5%, 도로환경요인 55.9%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3	1	15	24	4	13	1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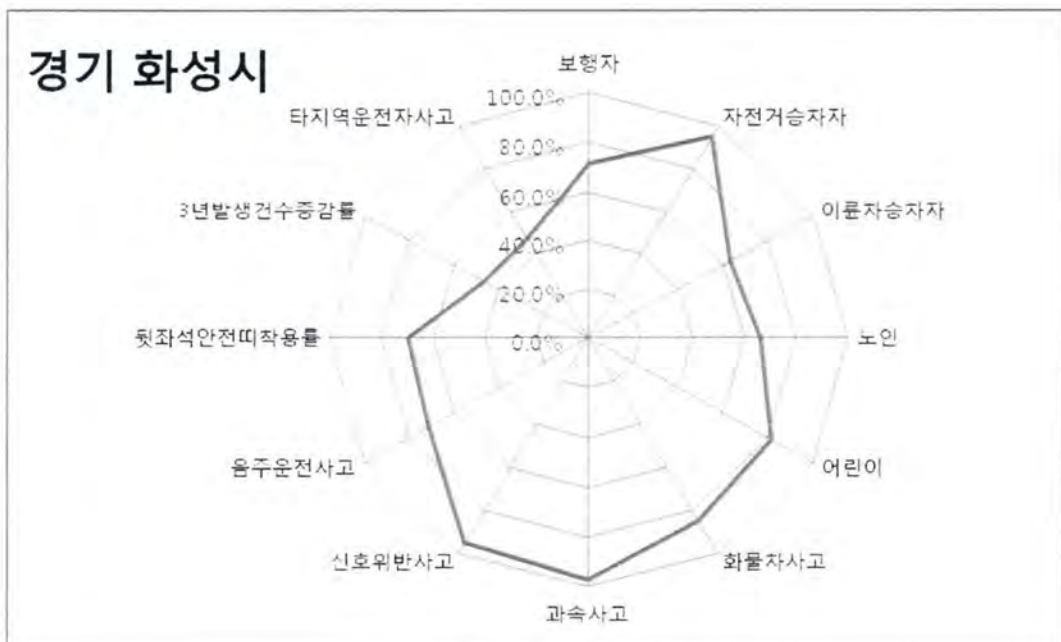
####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2.6	69.6	53.1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1.6	95.1	63.0	66.7	81.5	84.8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7.5	95.1	71.2	69.6	46.2	46.9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화성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3) 경기 시흥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20,445	172,534	576.95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252	49	3,678
중사고	801	49	1,402
보행사상자	-	16	432

경기 시흥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2%(871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2%(1,997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7.4%(46.09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3.4%(75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1%(1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상자수는 23.8%(5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상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6.43	190.51	2.84	11.65	0.01	0.33	1.39	0.08
백분위(%)수준	69.1	79.4	81.6	86.4	89.0	67.3	71.1	63.3

경기 시흥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8명으로 63.3수준, 보행사상자비는 0.33명으로 67.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0739	-0.4350	0.7334	-0.0872	75.5	-0.3
백분위(%)수준	71.6	77.5	61.1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시흥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5.5점으로 전년의 75.7점 보다 0.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1.6%, 희생요인 77.5%, 도로환경요인 61.1%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6	1	9	9	0	10	1	8	11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8	51.2	61.2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7.3	91.8	63.3	79.3	100.0	85.5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5.9	67.3	62.6	51.2	43.5	38.8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시흥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4) 경기 파주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02,126	169,085	529.87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545	39	2,419
중사고	669	39	1,134
보행사상자	-	13	318

경기 파주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3.8%(14,853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5%(8,022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6%(8.44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4.8%(71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30.4%(17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18.8%(3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9.57	166.37	2.31	9.70	0.02	0.33	1.26	0.07
백분위(%)수준	76.9	84.1	85.9	89.1	85.9	66.7	73.9	68.8

경기 파주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3명으로 66.7%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7명으로 68.8%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4989	-0.4751	0.4794	-0.2804	78.4	3.9
백분위(%)수준	78.5	78.6	66.2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파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8.4점으로 전년의 74.5점 보다 3.9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8.5%, 희생요인 78.6%, 도로환경요인 66.2%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3	2	7	7	2	6	0	6	2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3.4	49.1	41.0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6.7	79.5	64.1	79.8	80.8	89.1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69.2	91.5	49.1	36.7	59.0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파주시에서는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5) 경기 고양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981,220	345,758	357.68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3,532	53	5,334
중사고	1,425	53	2,294
보행사상자	-	27	709

경기 고양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8%(7,555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4%(4,616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2.5%(51.08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3%(178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5.9%(10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상자수는 8%(2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1.21	145.23	1.53	5.40	0.01	0.51	3.98	0.15
백분위(%)수준	75.0	88.1	92.1	95.2	92.8	49.1	13.1	32.5

경기 고양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3.98건으로 13.1%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15명으로 32.5%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5642	-0.4738	3.2753	0.2917	69.7	0.4
백분위(%)수준	79.6	78.6	9.8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고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69.7점으로 전년의 69.3점 보다 0.4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9.6%, 희생요인 78.6%, 도로환경요인 9.8%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7	2	7	11	2	8	1	8	5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4	50.6	37.7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49.1	84.9	73.6	76.7	85.8	90.2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6.2	69.8	84.3	50.6	39.9	62.3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고양시에서는 보행자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6) 경기 광주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84,762	133,957	371.5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145	24	1,816
중사고	444	24	756
보행사상자	-	6	243

경기 광주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3.6%(9,948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9%(6,23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4.1%(16.06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1.6%(119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5%(8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45.5%(5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3.14	155.92	1.79	8.43	0.01	0.25	1.19	0.06
백분위(%)수준	84.2	86.1	90.1	90.9	89.1	75.0	75.4	73.2

경기 광주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6명으로 73.2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25명으로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8212	-0.7029	0.2966	-0.5252	82.2	1.8
백분위(%)수준	83.8	84.5	69.9	-		

주 : 1) 요인합계 = 적제값(W<sub>1</sub>)×발생요인 + 적제값(W<sub>2</sub>)×희생요인 + 적제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sub>i</sub>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광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2.2점으로 전년의 80.4점 보다 1.8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3.8%, 희생요인 84.5%, 도로환경요인 69.9%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6	0	2	3	2	8	0	1	4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9	60.3	41.7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5.0	100.0	83.3	85.9	68.8	84.9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91.7	72.2	60.3	26.4	58.3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광주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7) 경기 연천군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46,328	27,962	307.44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62	12	242
중사고	75	12	108
보행사상자	-	3	27

경기 연천군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5%(671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2%(866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4%(12.75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4.1%(7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9.1%(1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26.82	161.89	4.29	25.90	0.05	0.25	0.24	0.04
백분위(%)수준	91.4	84.9	69.9	66.3	50.4	75.0	96.6	85.7

경기 연천군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사고심각도는 0.05명으로 50.4% 수준,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25.9명으로 66.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0375	0.3427	-0.6725	-0.2588	78.1	-1.3
백분위(%)수준	87.3	57.2	89.4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연천군의 교통안전지수는 78.1점으로 전년의 79.4점 보다 1.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7.3%, 희생요인 57.2%, 도로환경요인 89.4%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3	2	2	6	0	2	1	1	1

- 사고증감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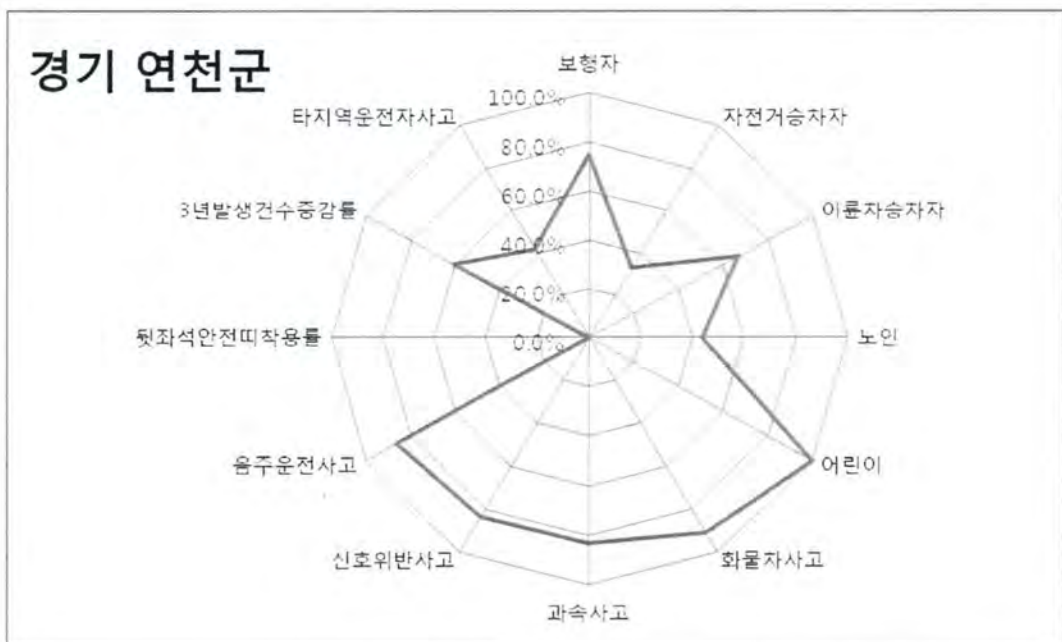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1.3	0.0	58.3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5.0	33.3	66.7	43.8	100.0	91.1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83.3	83.3	86.1	60.1	41.7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연천군에서는 자전거사고, 노인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8) 경기 포천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68,145	89,526	523.39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836	33	1,364
중사고	324	33	537
보행사상자	-	11	133

경기 포천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4%(752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5%(3,00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7%(8.53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5%(20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0%(3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175%(7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6.19	192.69	3.69	19.63	0.02	0.33	0.62	0.06
백분위(%)수준	80.7	79.0	74.8	75.2	77.2	66.7	88.3	74.0

경기 포천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3명으로 66.7%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6명으로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4706	-0.0510	-0.0696	-0.1727	76.8	-2.6
백분위(%)수준	78.1	67.5	77.2	-		

주 : 1) 요인합계 = 적제값(W<sub>1</sub>)×발생요인 + 적제값(W<sub>2</sub>)×희생요인 + 적제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sub>i</sub>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포천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6.8점으로 전년의 79.4점 보다 2.6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8.1%, 희생요인 67.5%, 도로환경요인 77.2%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1	2	3	7	2	9	1	0	7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7.6	0.0	42.4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6.7	75.8	81.8	76.1	77.3	78.6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3.9	100.0	64.6	0.0	54.3	57.6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포천시에서는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9) 경기 가평균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61,788	27,538	367.6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364	18	717
중사고	150	18	312
보행사상자	-	4	61

경기 가평균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2.4%(1,432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5.6%(1,457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7.9%(31.44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사망자수는 5.9%(1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42.9%(3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54.47	242.77	6.54	29.13	0.02	0.22	0.41	0.05
백분위(%)수준	60.0	69.4	51.8	61.8	76.2	77.8	93.0	80.8

경기 가평균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는 6.54명으로 51.8% 수준, 자동차1만대당 중사고건수는 54.47건으로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5733	0.2628	-0.4180	0.2063	71.0	1.5
백분위(%)수준	61.0	59.3	84.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sub>i</sub>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가평균의 교통안전지수는 71점으로 전년의 69.6점 보다 1.5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61%, 희생요인 59.3%, 도로환경요인 84.3%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4	0	7	5	0	2	0	0	1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5	89.5	61.1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7.8	100.0	22.2	68.8	100.0	82.8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100.0	90.7	89.5	43.0	38.9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가평균에서는 이륜차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 경기 양평군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03,331	47,591	511.30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411	19	701
중사고	198	19	363
보행사상자	-	5	67

경기 양평군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2.7%(2,700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6%(2,69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5.3%(25.84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2.4%(10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8.8%(3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1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1.60	191.62	3.99	18.39	0.03	0.26	0.39	0.04
백분위(%)수준	74.6	79.2	72.3	76.9	74.0	73.7	93.4	86.6

경기 양평군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는 3.99명으로 72.3% 수준, 보행사망자비는 0.26명으로 73.7%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2603	-0.0989	-0.6171	-0.2535	78.0	-0.5
백분위(%)수준	74.6	68.8	88.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text{백분위정규화값} = \frac{\text{Max} - x_i}{\text{Max} - \text{Min}} \times 100, \text{ 여기서 } x_i \text{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양평군의 교통안전지수는 78점으로 전년의 78.6점 보다 0.5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4.6%, 희생요인 68.8%, 도로환경요인 88.3%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5	0	3	6	0	1	0	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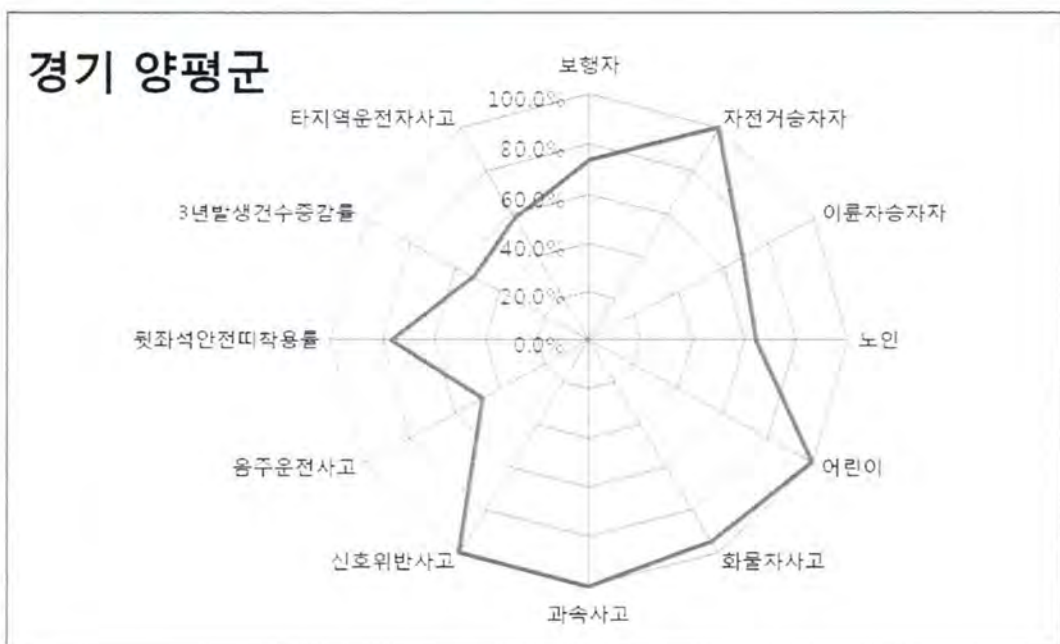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6.3	76.0	42.1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3.7	100.0	68.4	64.5	100.0	94.9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100.0	47.4	76.0	52.1	57.9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양평군에서는 음주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1) 경기 이천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09,339	98,751	432.2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985	42	1,655
중사고	337	42	591
보행사상자	-	10	152

경기 이천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2%(314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2,864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0.8%(3.6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1.7%(103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3.5%(8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2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13	160.98	4.25	20.06	0.02	0.24	0.78	0.10
백분위(%)수준	83.1	85.1	70.2	74.5	75.9	76.2	84.7	57.4

경기 이천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1명으로 57.4수준,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는 4.25명으로 70.2%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7504	-0.1006	0.5658	-0.1424	76.3	-2.3
백분위(%)수준	82.6	68.8	64.4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이천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6.3점으로 전년의 78.6점 보다 2.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2.6%, 희생요인 68.8%, 도로환경요인 64.4%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0	1	4	14	0	17	0	3	7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6	67.9	47.6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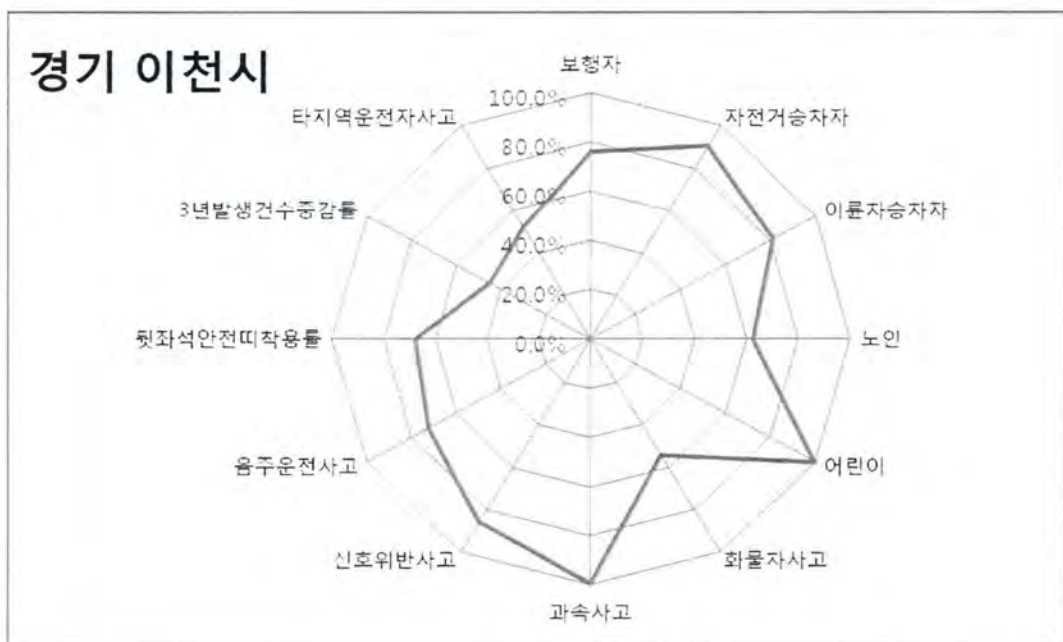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6.2	90.5	81.0	62.5	100.0	54.4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85.7	72.2	67.9	44.7	52.4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이천시에서는 화물차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2) 경기 용인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930,058	368,170	440.68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525	68	4,165
중사고	1,260	68	2,187
보행사상자	-	27	524

경기 용인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2%(18,564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2.6%(9,375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35.9%(246.9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7%(190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21.4%(12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8%(2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22	135.48	1.85	7.31	0.02	0.40	2.86	0.15
백분위(%)수준	83.0	90.0	89.6	92.5	85.7	60.3	38.2	29.5

경기 용인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15명으로 29.5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2.86건으로 38.2%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9050	-0.4735	2.7048	0.0759	73.0	-5.2
백분위(%)수준	85.2	78.6	21.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용인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3점으로 전년의 78.2점 보다 5.2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5.2%, 희생요인 78.6%, 도로환경요인 21.3%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7	4	4	19	1	19	2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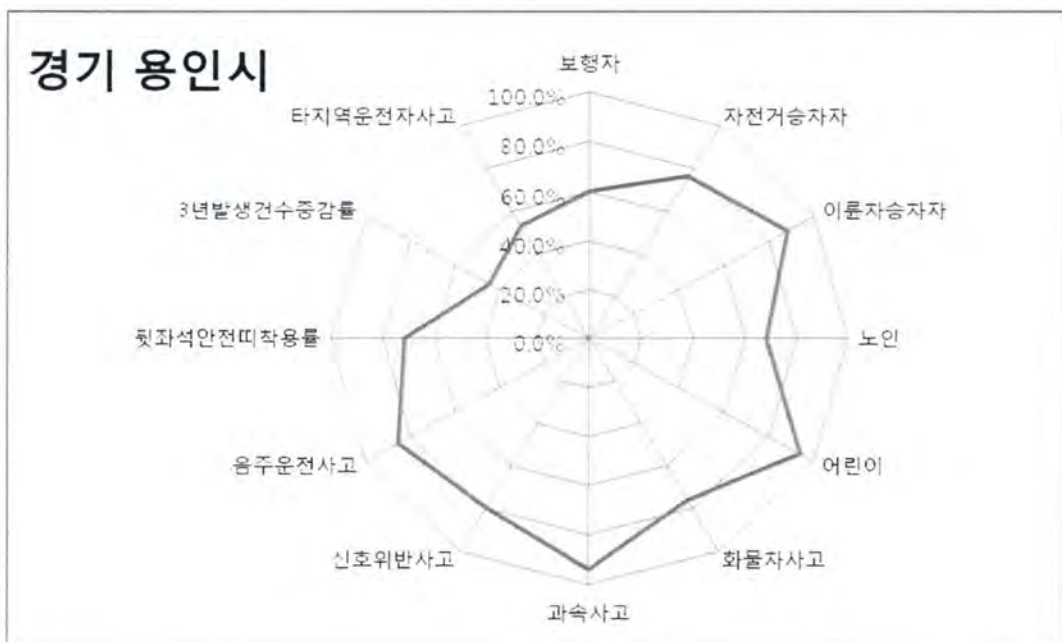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6	71.3	47.1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0.3	76.5	88.2	68.6	94.5	76.4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4.1	79.4	85.3	71.3	44.7	52.9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용인시에서는 보행자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3) 경기 안성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88,919	91,137	605.31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841	48	1,497
중사고	416	48	808
보행사상자	-	15	131

경기 안성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3%(645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3.3%(2,951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9.1%(50.46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2.9%(125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5%(5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5.65	220.20	5.27	25.41	0.03	0.31	0.69	0.08
백분위(%)수준	70.0	73.7	62.0	67.0	68.7	68.8	86.7	66.1

경기 안성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는 5.27명으로 62%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8명으로 66.1%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0794	0.2868	0.2281	0.2162	70.9	4.9
백분위(%)수준	69.1	58.7	71.2	-		

주 : 1) 요인합계 = 적제값(W<sub>1</sub>)×발생요인 + 적제값(W<sub>2</sub>)×희생요인 + 적제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안성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0.9점으로 전년의 65.9점 보다 4.9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69.1%, 희생요인 58.7%, 도로환경요인 71.2% 수준으로 나타나 희생요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5	4	3	12	1	13	0	0	7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9.2	94.1	56.3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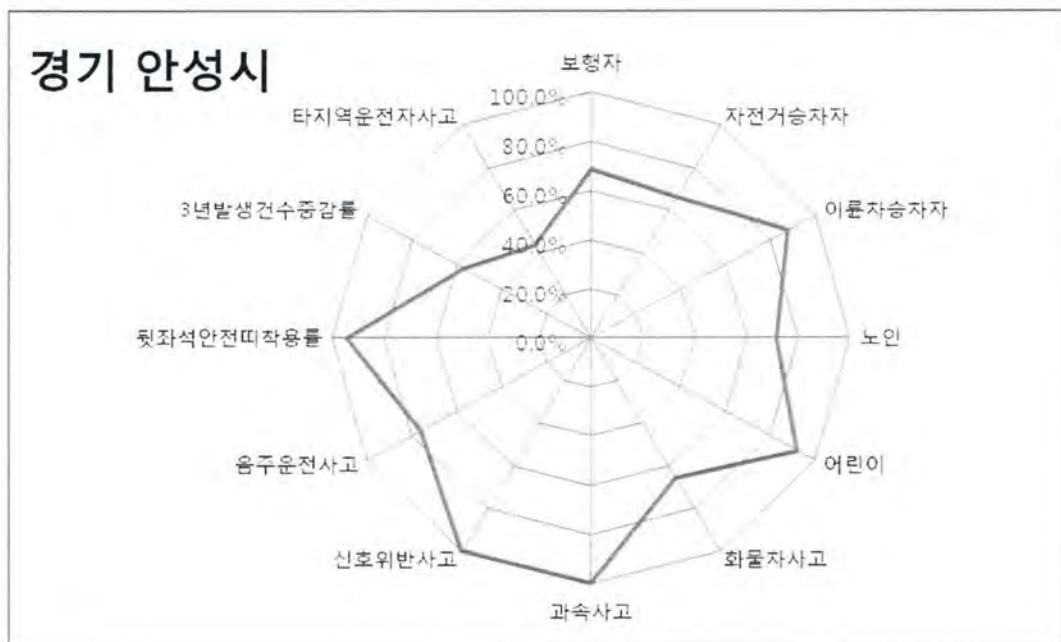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8.8	66.7	87.5	71.9	92.2	65.9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100.0	75.7	94.1	56.8	43.8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안성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4) 경기 김포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99,119	129,533	233.54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021	38	1,588
중사고	505	38	810
보행사상자	-	17	168

경기 김포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1.1%(29,951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0.5%(12,31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28%(90.6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4%(52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58.3%(14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41.7%(5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8.99	168.83	2.93	12.70	0.02	0.45	2.16	0.16
백분위(%)수준	77.5	83.6	80.8	84.9	77.4	55.3	53.8	25.4

경기 김포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16명으로 25.4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2.16건으로 53.8%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5068	-0.0968	2.4243	0.3199	69.3	-6.4
백분위(%)수준	78.7	68.7	27.0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김포시의 교통안전지수는 69.3점으로 전년의 75.6점 보다 6.4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8.7%, 희생요인 68.7%, 도로환경요인 27%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17	0	4	12	0	13	0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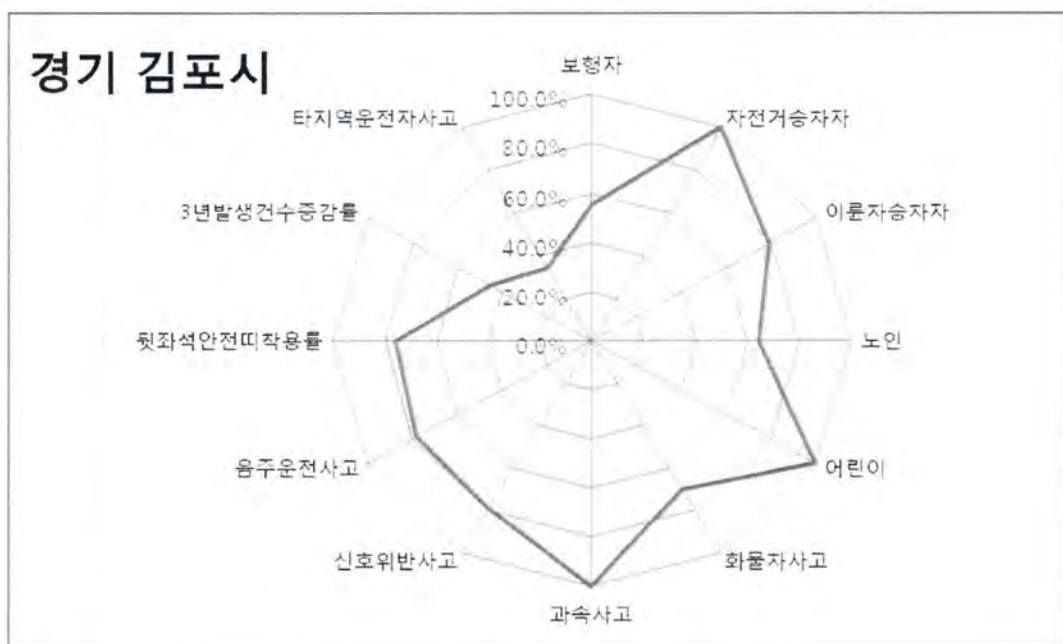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9	75.8	65.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5.3	100.0	78.9	64.5	100.0	70.4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78.9	78.1	75.8	45.2	34.2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보행자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5) 경기 동두천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99,666	38,537	197.32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468	13	720
중사고	163	13	260
보행사상자	-	4	115

경기 동두천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9%(852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2%(1,543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53.6%(68.87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3.9%(57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60%(8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상자수는 300%(3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상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2.30	163.55	3.37	13.04	0.02	0.31	0.83	0.07
백분위(%)수준	73.8	84.6	77.3	84.4	83.8	69.2	83.6	72.6

경기 동두천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31명으로 69.2%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7명으로 72.6%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4070	-0.3177	0.0981	-0.2550	78.1	-9.2
백분위(%)수준	77.0	74.5	73.9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동두천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8.1점으로 전년의 87.3점보다 9.2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77%, 희생요인 74.5%, 도로환경요인 73.9%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4	2	4	5	1	5	0	2	1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4.7	38.2	38.5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9.2	38.5	38.5	56.7	71.2	54.5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69.2	87.2	38.2	49.6	61.5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자전거사고, 이륜차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6) 경기 과천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71,378	23,554	54.97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222	4	436
중사고	91	4	237
보행사상자	-	1	33

경기 과천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3%(908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0.2%(57대) 감소했으며, 도로연장은 4.8%(2.7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5%(13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8.63	127.49	1.70	5.60	0.01	0.25	1.66	0.07
백분위(%)수준	77.9	91.5	90.8	94.9	93.6	75.0	65.1	69.3

경기 과천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66건으로 65.1%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7명으로 69.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7778	-0.8185	0.6993	-0.4869	81.6	-3.3
백분위(%)수준	83.1	87.6	61.7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과천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1.6점으로 전년의 84.9점 보다 3.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3.1%, 희생요인 87.6%, 도로환경요인 61.7%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고	과속사고	신호위반사고	음주운전사고
명	1	0	1	0	0	0	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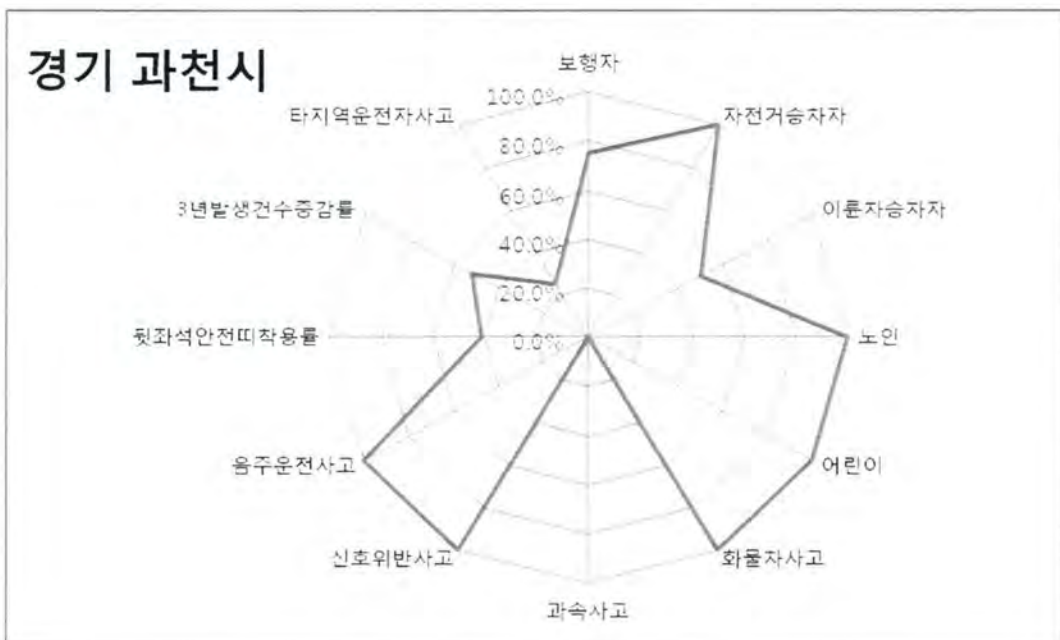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6.1	41.2	75.0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5.0	100.0	50.0	100.0	100.0	100.0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0	100.0	100.0	41.2	51.9	25.0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과천시에서는 과속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7) 경기 군포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92,201	94,504	193.06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710	10	1,039
중사고	278	10	401
보행사상자	-	5	220

경기 군포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0.2%(687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0.7%(700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4.6%(9.35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0.2%(81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6.7%(2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16.7%(1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29.42	95.14	1.06	3.42	0.01	0.50	1.44	0.05
백분위(%)수준	88.4	97.7	96.0	97.9	93.1	50.0	69.9	79.5

경기 군포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5명으로 50%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1.44건으로 69.9%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3484	-0.5735	0.2394	-0.6195	83.6	0.5
백분위(%)수준	92.4	81.2	71.0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sub>i</sub>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군포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3.6점으로 전년의 83.1점 보다 0.5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92.4%, 희생요인 81.2%, 도로환경요인 71%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5	1	1	2	0	1	0	0	2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6.7	64.3	70.0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50.0	60.0	80.0	77.5	100.0	96.2

#### 법규위반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사고변화요인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교통특성요인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100.0	66.7	64.3	31.5	30.0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군포시에서는 보행자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8) 경기 남양주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604,864	220,038	316.34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1,858	68	2,985
중사고	696	68	1,218
보행사상자	-	21	424

경기 남양주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3.6%(20,912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5.2%(10,784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6.2%(20.74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1.3%(24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38.8%(19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10.5%(2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1.63	115.07	3.09	11.24	0.02	0.31	2.20	0.21
백분위(%)수준	85.9	93.9	79.6	86.9	78.7	69.1	52.9	0.0

경기 남양주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21명으로 0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2.2건으로 52.9%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1358	-0.3119	3.2739	0.2133	70.9	-3.3
백분위(%)수준	88.9	74.3	9.8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남양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0.9점으로 전년의 74.2점보다 3.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8.9%, 희생요인 74.3%, 도로환경요인 9.8%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21	2	14	15	2	13	0	7	13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0.3	38.3	52.9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9.1	88.2	58.8	75.2	89.0	82.3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79.4	68.1	38.3	41.7	47.1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9) 경기 오산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205,245	79,360	304.32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704	16	1,150
중사고	272	16	502
보행사상자	-	4	176

경기 오산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3.2%(6,363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1%(3,102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5.4%(17.37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1%(34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3.1%(3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34.27	132.52	2.02	7.80	0.01	0.25	0.89	0.05
백분위(%)수준	82.9	90.6	88.2	91.8	88.4	75.0	82.1	79.1

경기 오산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비는 0.25명으로 75% 수준,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05명으로 79.1%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9213	-0.6821	-0.0724	-0.6206	83.6	0.7
백분위(%)수준	85.4	84.0	77.3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오산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3.6점으로 전년의 82.9점 보다 0.7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85.4%, 희생요인 84%, 도로환경요인 77.3%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승차자	이륜차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고	과속사고	신호위반사고	음주운전사고
명	4	1	4	4	0	3	1	7	4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3.2	44.4	68.8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5.0	75.0	50.0	71.9	100.0	85.1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87.5	12.5	58.3	44.4	37.0	31.3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오산시에서는 신호위반사고, 뒷좌석안전띠착용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0) 경기 의왕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56,003	55,569	176.35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415	8	741
중사고	163	8	365
보행사상자	-	3	65

경기 의왕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3.4%(5,096명) 증가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4.5%(2,376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14.1%(21.79km)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3.8%(15건)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20%(2명)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상자수는 200%(2명)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상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29.33	104.49	1.44	5.13	0.01	0.38	0.92	0.05
백분위(%)수준	88.5	96.0	92.9	95.5	91.8	62.5	81.4	82.6

경기 의왕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보행사상자비는 0.38명으로 62.5% 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0.92건으로 81.4%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1.2937	-0.6595	-0.1685	-0.7339	85.4	0.4
백분위(%)수준	91.5	83.4	79.2	-		

주 : 1) 요인합계 = 적재값(W<sub>1</sub>)×발생요인 + 적재값(W<sub>2</sub>)×희생요인 + 적재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의왕시의 교통안전지수는 85.4점으로 전년의 85점 보다 0.4점이 상승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91.5%, 희생요인 83.4%, 도로환경요인 79.2%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3	0	1	1	0	2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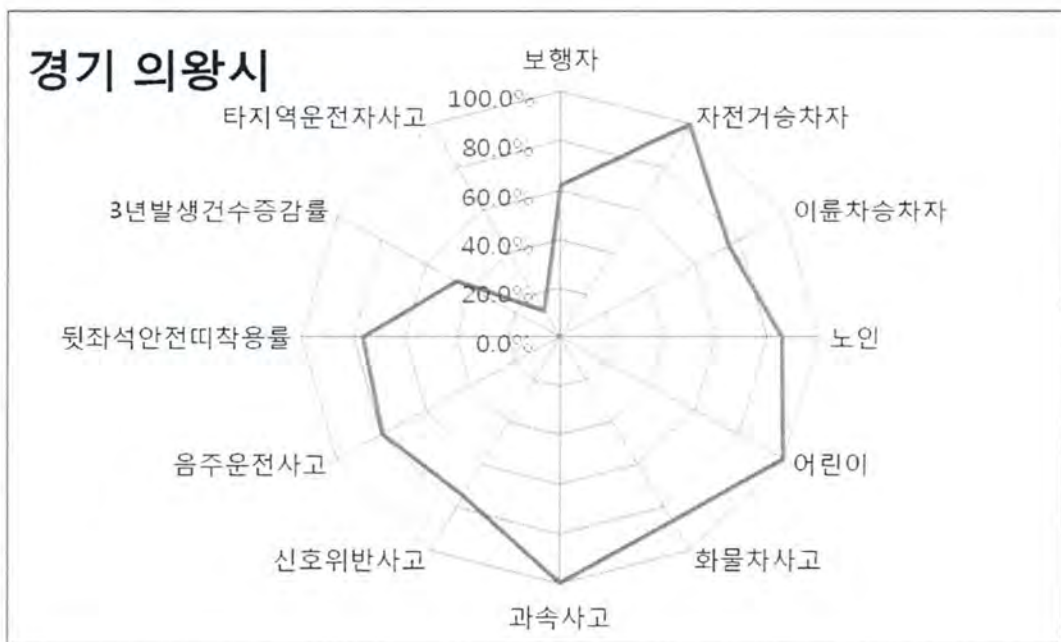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2.3	76.2	87.5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62.5	100.0	75.0	85.9	100.0	87.0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75.0	79.2	76.2	45.8	12.5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의왕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1) 경기 하남시

가. 교통안전지수

□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여건

구분	등록인구(명)	자동차등록대수(대)	도로연장(km)
교통여건	147,890	58,423	91.02

-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인피사고	617	19	1,038
중사고	290	19	522
보행사상자	-	4	109

경기 하남시의 교통여건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5%(2,280명) 감소하였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1%(643대) 증가했으며, 도로연장은 3.4%(3.2km)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5.7%(37건)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37.5%(11명)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사망자수는 20%(1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률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자동차 1만대당 중사고건수	인구 10만명당 중사고건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사망자수 /사상자수	보행사망자수 /사망자수	도로연장 1km당 중사고건수	도로연장 1km당 사망자수
발생률	49.64	196.09	3.25	12.85	0.02	0.21	3.19	0.21
백분위 <sup>1)</sup> 수준	65.4	78.4	78.3	84.7	83.5	78.9	30.9	3.0

경기 하남시의 개별 변수별 목표값 범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달성도를 살펴보면 도로연장1km당 사망자수는 0.21명으로 3수준, 도로연장1km당 중사고건수는 3.19건으로 30.9%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

구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 요인	요인합계 <sup>1)</sup>	교통안전지수 (백분위정규화값 <sup>2)</sup> )	전년대비 증감
요인평균값(Z값)	0.0896	-0.4625	3.7607	0.5833	65.3	-6.3
백분위 <sup>1)</sup> 수준	68.9	78.3	0.0	-		

주 : 1) 요인합계 = 적제값(W<sub>1</sub>)×발생요인 + 적제값(W<sub>2</sub>)×희생요인 + 적제값(W<sub>3</sub>)×도로환경요인

2) 백분위정규화값 =  $\frac{Max - x_i}{Max - Min} \times 100$ , 여기서  $x_i$ 는 요인합계점수

설정된 목표값을 기준으로 백분위정규화 한 2012년도 경기 하남시의 교통안전지수는 65.3점으로 전년의 71.5점 보다 6.3점이 하락했고, 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발생요인 68.9%, 희생요인 78.3%, 도로환경요인 0% 수준으로 나타나 도로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보조안전지수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분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이륜차 승차자	노인 (65세이상)	어린이 (14세이하)	화물차사 고	과속 사고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사고
명	4	1	3	3	0	3	0	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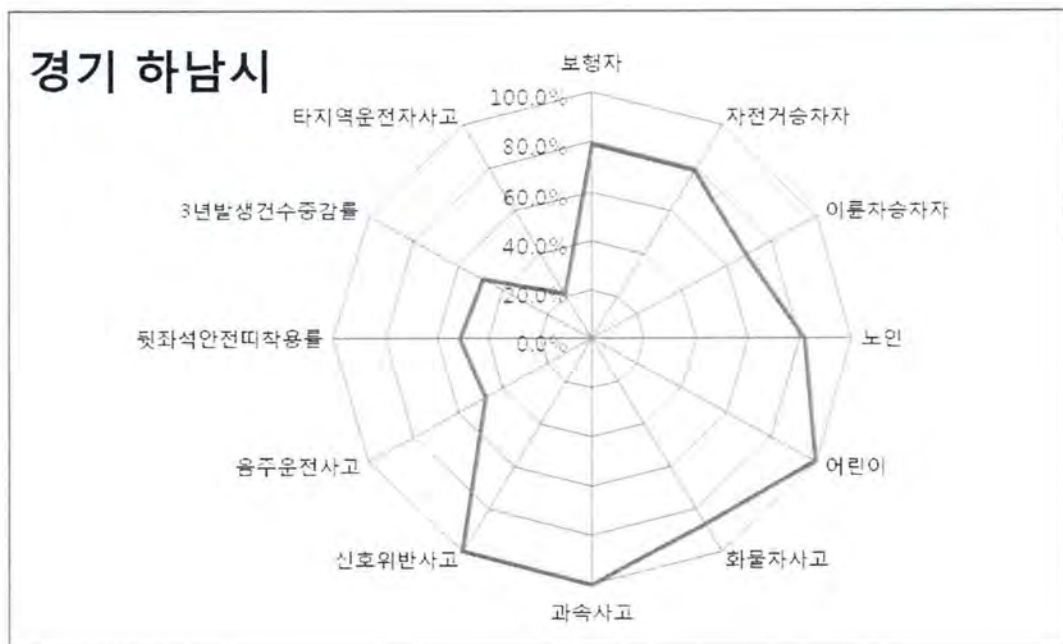
- 사고증감률 등

연평균 발생건수 증감률(3년)	뒷좌석 사상자 안전띠 착용률	타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4.0	51.2	78.9

### □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당사자요인					
보행자 사망률	자전거승차자 사망률	이륜차승차자 사망률	노인 사망률	어린이 사망률	화물차사고 사망률
78.9	78.9	68.4	82.2	100.0	87.4
법규위반요인				사고변화요인	교통특성요인
과속사고 사망률	신호위반사고 사망률	음주사고 사망률	뒷좌석사상자 안전띠착용률	최근3년간 발생건수 증감률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률
100.0	100.0	47.4	51.2	48.6	21.1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경기 하남시에서는 음주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 타지역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활안전 사고현황

### 1) 전기사고 현황

○ 2012년 경기도에서 총 2,16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249억 원이다

○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기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도 \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액 (천원)
2010	2,190	7	51	16,000,077
2011	2,138	4	62	14,366,873
2012	2,164	2	90	24,900,655
합계	6,492	13	203	55,267,605

○ 최근 3년 경기도의 31개 시·군별 전기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경기도	2,190	7	51	16,000,077
가평군	30	-	-	322,492
고양시	155	-	2	535,211
과천시	10	-	-	44,793
광명시	41	1	-	189,724
광주시	80	-	7	734,979
구리시	43	-	2	393,879
군포시	30	-	-	76,004
김포시	70	-	1	596,946
남양주시	62	-	-	870,769
동두천시	28	-	-	53,752
부천시	126	-	4	706,665
성남시	158	-	5	447,903
수원시	135	2	5	468,403
시흥시	95	1	1	1,122,178
안산시	142	-	5	430,791
안성시	60	-	1	313,392
안양시	70	-	-	192,758

양주시	57	-	1	511,052
양평군	45	-	-	277,649
여주군	42	-	-	115,768
연천군	19	-	-	131,113
오산시	33	-	1	48,542
용인시	111	1	1	528,717
의왕시	14	-	-	52,584
의정부시	34	-	2	184,431
이천시	56	-	1	569,256
파주시	98	1	-	2,166,007
평택시	97	-	2	996,768
포천시	101	1	5	1,906,766
하남시	38	-	1	188,950
화성시	110	-	4	821,835

<2011년>

경기도	2,138	4	62	14,366,873
가평군	23	-	1	85,293
고양시	174	-	5	868,916
과천시	13	-	-	75,768
광명시	42	-	6	210,318
광주시	64	-	2	505,615
구리시	34	-	3	271,538
군포시	31	-	-	94,577
김포시	76	1	4	348,990
남양주시	100	-	1	1,044,720
동두천시	24	-	-	184,712
부천시	82	-	2	356,613
성남시	122	-	1	282,689
수원시	153	2	12	819,315
시흥시	76	-	-	433,890
안산시	105	-	1	273,620
안성시	73	-	5	577,254
안양시	72	-	2	540,340
양주시	73	-	-	611,847
양평군	44	-	-	246,276
여주군	38	-	-	201,425
연천군	27	1	-	170,068

오산시	25	-	1	101,851
용인시	94	-	-	383,791
의왕시	14	-	-	11,459
의정부시	64	-	2	181,661
이천시	57	-	3	1,044,399
파주시	68	-	2	805,592
평택시	121	-	2	547,548
포천시	92	-	1	933,587
하남시	37	-	-	117,075
화성시	120	-	6	2,036,126

<2012년>

경기도	2,164	12	90	24,900,655
가평군	19	-	-	90,299
고양시	147	-	37	759,265
과천시	16	-	-	71,483
광명시	26	-	-	88,370
광주시	81	1	-	582,703
구리시	26	-	4	56,751
군포시	41	2	3	293,795
김포시	92	4	4	740,935
남양주시	99	2	7	4,907,808
동두천시	23	-	1	119,480
부천시	90	1	1	484,185
성남시	121	-	3	398,824
수원시	135	2	9	565,041
시흥시	70	-	1	640,308
안산시	110	-	1	1,561,427
안성시	47	-	-	266,332
안양시	85	-	6	145,315
양주시	69	-	1	658,947
양평군	48	-	-	288,545
여주군	41	-	-	251,047
연천군	20	-	-	77,474
오산시	34	-	-	108,013
용인시	88	-	2	825,137
의왕시	21	-	-	112,480

의정부시	60	-	3	122,887
이천시	74	-	4	998,525
과주시	76	-	-	738,735
평택시	111	-	-	801,269
포천시	104	-	1	1,042,829
하남시	42	-	1	559,280
화성시	148	-	1	6,543,166

2). 가스사고 현황

- 경기도에서 2012년 가스사고가 23건이 발생하여 7명이 사망했고 32명이 부상당했다.
-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년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2010	23	19	4	11	7	5	6	6	2	11	6	6	10	9	3	6
2011	28	21	3	7	8	6	2	3	5	9	7	7	4	4	7	5
2012	23	20	8	4	6	3	4	2	6	10	8	7	9	4	4	7

실제 발생한 경기도 사고사례  
<2010년>

no	일시	사고장소	가스명인명 피해	사용처	사고형태	사고개요
1	01.06 (수)23:18	경기의정부 시	LPG(부탄) 부상2명	기타	파열	정육점에서 취사를 위해 이동식부탄연 소기를 사용하던 중 기온강화로 불이 붙지 않자 부탄캔을 가열하다 용기가 파열된 사고임
2	01.11 (월)01:20	경기 가평군	LPG(부탄)	요식업소	파열	음식점에서 기온강화로 연탄난로옆 플 라스틱의자위에 부탄캔을 올려놓고 녹 이려다 복사열에 의한 용기과압으로 파 열된 사고임
3	01.27 (수)20:00	경기 김포시	고압가스(C o2) 부상2명	차량	파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 조수석에서 수족관 수초성장 촉진제용 이산화탄소 충전용기가 파열되어 탑승자가 부상당 한 사고임
4	03.17 (수)07:30	경기 시흥시	도시가스 부상1명	주택	폭발	피해자(중국인)가 불법체류상태의 신병 을 비판하여 가스렌지 연결호스와 가스 보일러 연결 플렉시블호스를 고의로 손 상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상태에서 담배 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
5	03.27 (토)12:14	경기 광주시	LPG(프로판 ) 부상2명	요식업소	폭발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공사 중 도시 가스배관과 LPG배관이 맞물린 상태에 서 작업자가 기밀시험 준비를 위해 말 단 밸브를 개방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 이 주방내 누군가가 밸브를 개방하여 개방된 밸브로 LPG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인화된 사고로 추정됨
6	04.04 (일)01:53	경기 오산시	고압가스 (CNG용기) 부상1명	공장	화재	현대자동차에서 회수된 CNG용기를 잔 가스퍼지를 위해 재검사장으로 이송 중 부주의로 용기밸브가 열려 누출된 가스 가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7	04.06 (화)06:15	경기 여주군	LPG(프로판 ) 부상1명	주택	폭발	가스렌지의 고무호스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절단된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인화, 폭발한 사고
8	04.05 (월)07:30	경기 안양시	LPG(프로판 ) 부상1명	주택	폭발	막음조치가 안된 배관이 있는지 모르고 새로 이사온 세입자가 보일러 사용을 위해 가스밸브를 열고 온수를 사용 후 다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인화, 폭발한 사고
9	04.13 (화)10:00	경기 수원시	도시가스	주택	화재	무자격의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온 주 택의 가스렌지를 교체하던 중 보일러측 밸브를 메인 차단밸브로 오인하고 가스 렌지 후단 퓨즈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인화,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10	04.14 (수)14:27	경기 이천시	고압가스 (모노실란)	기타	화재	실린더 캐비닛 내부의 실란가스용기를 교체하면서 체결불량상태에서 용기밸브를 열어 누출된 가스가 자연발화된 사고임
11	04.13(화) 08:30	경기 양주시	LPG(부탄)	기타	파열	컨테이너에서 조리를 위해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원인미상으로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임
12	04.29(목) 03:30	경기 여주군	도시가스	제1종보호시설	누출	차량이 여관의 도시가스 입상배관을 충돌하여 파손되면서 가스가 누출된 교통사고임
13	05.22(토) 10:10	경기 화성시	고압가스	주택	누출	오피스텔신축현장 단지내 경계지점에서 굴착작업도중 00전자로 공급되는 질소매설배관을 파손시켜 고압질소가 누출된 사고임
14	06.11(금) 14:37	경기 평택시	고압가스	차량	폭발	냉동차량의 냉동장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밀시험을 위해 산소를 장치내부에 고압으로 주입시켜 내부의 유분과 산소가 반응하여 폭발한 사고임
15	06.15(화) 17:30	경기 고양시	LPG 부상3명	기타	파열	주말농장에 있는 정자안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로 고기를 굽던 중 부탄캔을 교체하려던 중 복사열에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임
16	06.23(수) 05:56	경기 평택시	LPG(프로판)	주택	폭발	주택 지하1층에서 인터넷선을 연결하기 위해 LPG용기 및 호스를 이동시키면서 호스가 기름보일러 배기통과 맞닿아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배기통열에 의해 맞닿은 호스가 녹아 가스가 누출되어 인화, 폭발한 사고임
17	07.26(월) 13:00	경기 부천시	고압가스(CNG)	차량	누출	버스에서 CNG용기의 결함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용기를 교체한 누출사고임
18	09.17(금) 18:11	경기 가평군	LPG 부상1명	주택	폭발	주택에서 고의적으로 호스를 훼손시킨 상태로 가스를 누출시켜 미상의 점화원에 LPG가스를 폭발시킨 사고임
19	10.20(수) 07:30	경기 안양시	고압가스 부상1명	허가업소	파열	액화산소용기내 잔가스를 다른 액화산소용기로 이송하는 작업 중 원인불명의 점화원에 의해 액화산소용기에 화재가 발생하고 파열된 사고임
20	10.26(화) 14:00	경기 남양주	LPG 부상1명	기타	폭발	피해자가 기온이 내려가 LPG용기밸브를 열고 기존 설치된 가스스토브에 점화중 손상된 호스에서 누출된 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화재가 발생된 사고로 추정됨
21	11.25(목) 09:40	경기 광주시	LPG프로판	공장	화재	버너에 점화가 되지않아 용기를 흔들다 용기가 넘어지면서 측도관이 이탈, 누출된 가스가 두부제조 버너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22	12.15(수) 12:20	경기 안산시	LPG부탄 부상6명	요식업소	파열	음식점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하여 찌개를 끓이던 중 과대복사열에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임

<2011년>

no	일시	사고장소	가스명 인명피해	사용처	사고형 태	사고개요
1	01.01(토)	경기 이천시	LNG 사망1명 부상2명	주택	중독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원인미상)로 보일러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CO중독으로 1명이 사망한 사고
2	01.02(일)	경기 이천시	LPG프로판	주택	화재	업무용대형연소기로 조리중 가스가 나오지 않자 LPG용기를 교체하던중 누출된 가스가 화목보일러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03.12(토)	경기 고양시	LNG 부상25명	1종보호 시설	중독	천정내부에 설치된 알루미늄주름관 연도 노후로 지하1층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CO중독사고
4	03.17(목)	경기 파주시	LPG부탄	요식 업소	파열	지하3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기통 및 배기용 덕트 연결부등의 마감이 불량하여 CO가스가 사우나 실내로 유입되어 손님들이 중독된 사고
5	03.27(일)	경기 안양시	LPG부탄	요식 업소	파열	이동식부탄연소기위에 부탄연소기를 놓고 음식을 데우던 중 연소기 하부가 가열되어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6	04.11(월)	경기 고양시	LNG 부상1명	요식 업소	폭발	주방에 설치된 업무용대형연소기의 중간밸브와 연소기 밸브가 개방되어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
7	04.16(토)	경기 수원시	LPG프로판	요식 업소	폭발	홀에서 사용중인 가스그릴부착테이블 변경 설치공사중 유니온연결부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밸브를 개방하여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
8	05.18(수)	경기 고양시	LPG프로판	벌크 로리	누출	벌크로리 후면 이층전시스템 가스계량기 전단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다량의 액체가스가 분출된 사고
9	05.28(토)	경기 화성시	LPG프로판	아파트	화재	LPG소형저장탱크 철거과정에서 안전밸브를 철거하다가 누출된 LP가스가 저장탱크 인접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10	06.02(목)	경기 과천시	LPG부탄 부상5명	캠핑장	파열	학교 백일장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이용하여 삼겹살을 구워먹던 중 사용부주의로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11	06.17(금)	경기 여주군	LPG프로판	공장	화재	LPG저장탱크 철거과정에서 탱크하부 액토출부 배관(25A)이 찢어지면서 누출된 LP가스가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12	06.19(일)	경기 파주시	LPG프로판	요식업 소	화재	20KG LPG용기에 조정기 연결없이 호스를 이용, 직압으로 토치를 사용하다가 용기와 연결호스부위가 이탈되면서 가스가 누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13	07.05(화)	경기 포천시	LPG프로판	주택	폭발	LP가스가 누출. 체류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순간 폭발한 사고
14	07.29(금)	경기 안양시	LPG부탄	주택	화재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먹던 중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15	08.06(토)	경기 용인시	LPG프로판	요식업소	폭발	순간온수기를 철거하고 막음조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누출. 튀김기 작동시 발생하는 전기스파크에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
16	08.06(토)	경기 김포시	LPG부탄 부상3명	팬션	폭발	팬션 야외 테라스에서 바비큐그릴 숯불고기구이중 그릴 하단부에 놓여있던 부탄캔이 가열되어 폭발한 사고
17	08.17(수)	경기 시흥시	LNG 부상2명	주택	폭발	생활고에 못이겨 호스를 절단하고 퓨즈콕을 개방시켜 가스가 누출체류중 라이터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
18	09.07(수)	경기 안양시	CO2 부상2명	허가업소	산소결핍	용기 재검사기관의 작업장에 입고된 Co2용기의 잔가스를 퍼지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가스가 작업장내에 체류. 작업자가 다량 흡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사한 사고
19	09.12(월)	경기 용인시	LPG프로판	골프장	화재	골프장 식당에 설치된 기화기 내부의 기화코일등의 배관이 부식되어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0	09.22(목)	경기 광주시	LPG부탄 부상15명	1종보호시설	폭발	학교축제에 이동식부탄연소기로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닭꼬치를 굽던 중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21	10.06(목)	경기 의왕시	LNG	공급시설	누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확장을 위한 굴착공사중 포크레인기사가 단지내 지하매물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된 사고
22	10.31(월)	경기 성남시	LPG부탄	상가	파열	업소내 룸 조리대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로 음식을 조리한 후 미상의 원인으로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23	11.01(화)	경기 안양시	LNG 사망1명 부상1명	주택	Co중독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이탈되어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가 Co에 중독되어 사망함
24	11.14(월)	경기 양평군	LPG프로판	주택	폭발	도시가스 연료전환공사중 막음조치가 되지않은 LPG시설의 계량기 전단밸브를 개방하여 보일러실에 체류한 LP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
25	12.01(목)	경기 남양주	LPG 프로판	공장	화재	가스용기 교체작업중 막음조치가 미처리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다가 누출된 가스가 인화되어 발생한 화재사고
26	12.10(토)	경기 평택시	LNG	주택	화재	가스렌지 설치기사가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점화가 되지않아 호스를 배관에서 분리하고 퍼지작업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

<2012년>

no	일시	사고장소	가스명 인명피해	사용처	사고 형태	사고개요
1	01.03(화)	경기 고양시	LNG 사망3명	주택	중독	가스보일러의 배기연결구와 배기통 이 탈로 보일러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CO중독으로 일가족3명이 사망한 사고
2	01.03(화)	경기 고양시	고압가스	기타	누출	밀폐된 냉동창고내에서 냉동기 수리작 업을 하던중 냉매가스가 누출되어 작업 자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진 사고
3	01.24(화)	경기 하남시	LPG프로판	주택	폭발	부부싸움도중 주방용 호스시설의 퓨즈 콕 전단부위를 고의로 절단하여 누출된 LP가스가 라이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 한 사고
4	01.26(목)	경기 수원시	LPG프로판	기타	폭발	냉난방기 수리업체 직원이 LPG 20kg용 기에서 소형용기로 점포내에서 이층전 도중 누출된 가스가 주변화기에 의해 폭발한 사고
5	01.28(토)	경기 용인시	LPG프로판	요식업 소	폭발	피해자가 업무용대형연소기를 점화를 위해 전원을켜고 점화레버를 작동하였 으나 점화가 되지않았고 이미 누출된 가스가 재점화과정에서 폭발한 사고
6	04.17(화)	경기 화성시	LPG프로판	공장	폭발	도장 건조로의 버너작동이상으로 LP가 스가 누출, 체류되면서 폭발한 사고로 추정됨
7	05.04(금)	경기 광명시	질소 부상1명	기타	파열	분말소화기의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가압가스(질소) 충전작업을 압력조정기 없이 고압으로 실시하다 소화용기가 파 열된 사고
8	05.18(금)	경기 시흥시	LPG프로판	제1종보 호시설	누출	LPG용기와 자동절체기를 연결하는 축도 관의 노후로 인하여 축도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9	06.28(목)	경기 평택시	LNG	허가업 소	누출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저장탱크 예방 점검 결과 미량의 가스누출이 발견된 사고
10	06.28(목)	경기 안양시	LNG 부상1명	공급시 설	화재	아파트 박스형 인입관 밸브 교체공사를 위해 밸브 양쪽 배관부 2개소에 가스차 단용 에어백을 설치하고 용접작업 중 에어백이 파손되면서 가스누출 및 화재 가 발생한 사고

11	07.18(수)	경기 광주시	암모니아 사망2명 부상10명	허가업 소	중독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배관 용접작업 중 배관파열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작업자들이 중독된 사고
12	08.10(금)	경기 구리시	LPG부탄 부상1명	주택	파열	부탄캔에 토치를 연결하여점거화후 살충작업중 부탄캔이 파열되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
13	09.08(토)	경기 화성시	LNG	주택	폭발	가스보일러의 금속플렉시블호스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
14	09.17(월)	경기 화성시	LPG프로판 사망1명 부상1명	공장	폭발	LP가스를 이용, 분체조장한 판넬을 건조하는 작업중 지연점화로 인해 가스가 누출, 재점화과정에서 폭발한 사고
15	10.17(수)	경기 동두천시	LPG프로판 부상1명	주택	화재	LPG용기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스오븐렌지 전단 호스에 분기T를 설치하던 중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한 사고
16	10.19(금)	경기 고양시	LPG프로판	주택	화재	용기집합대의 2개의 용기중 1개를 분리,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주물버너에 연결하여 사용중 용기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한 사고
17	10.21(일)	경기 연천군	LPG프로판 부상1명	주택	폭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와 배관연결부 사이에서 가스가 누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
18	10.28(일)	경기 안양시	LPG프로판 부상2명	주택	화재	주방쪽 호스절단부에는 연소기가 미연결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
19	11.14(수)	경기 평택시	LPG프로판 부상1명	주택	화재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위에 냄비를 올려 놓고 떡을 찌던 중 잠시자리를 비운사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20	11.30(금)	경기 양주시	LNG	기타	누출	차량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피하려다 운전미숙으로 주위 입상관을 추돌하여 가스가 누출된 사고
21	12.15(토)	경기 화성시	산소	차량	누출	아파트옆 도로에 주차된 고압가스운반 차량에 적재된 액체산소 초저온 용기에서 밸브 결함으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22	12.24(월)	경기 동두천시	LPG부탄 부상1명	공장	파열	전선제조시 단락된 전선을 연결할 때 용접에 사용하는 부탄캔에 체결된 토치를 전기난로에 직접가열하다가 부탄캔이 파열된 사고
23	12.30(일)	경기 고양시	LNG 부상3명	주택	폭발	미상의 원인으로 도시가스가 폭발한 사고

3). 화재 사고 현황

- 2012년 전국적으로 43,24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67명이 사망했고 1,956명이 부상당했다.
- 이 중 경기도에서 10,159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61명이 사망했고 526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1,035억 원이다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도 \ 현황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액
2010	9,321	62	369	90,122,003
2011	10,019	67	399	83,971,036
2012	10,159	61	526	103,551,635
합계	29,499	190	1,294	277,644,674

- 31개 시·군별 화재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구분	계	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합계	9,321	7,352	169	583	1,217	431	62	369	90,122,003	38,449,239	51,672,764
수원시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장안구	111	82	0	19	10	11	1	10	337,085	141,233	195,852
수원시권선구	132	93	0	25	14	11	2	9	498,316	196,047	302,269
수원시팔달구	140	106	0	19	15	14	3	11	637,696	354,457	283,239
수원시영통구	99	76	0	11	12	5	0	5	270,195	119,009	151,186
성남시	0	0	0	0	0	0	0	0	0	0	0
성남시수정구	173	147	0	20	6	0	0	0	400,487	204,001	196,486
성남시중원구	179	147	0	22	10	9	1	8	660,588	277,685	382,903
성남시분당구	202	172	0	12	18	12	0	12	700,805	312,132	388,673
의정부시	175	130	3	10	32	13	0	13	716,991	308,446	408,545
안양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양시만안구	134	107	0	6	21	8	1	7	302,775	107,056	195,719
안양시동안구	172	143	2	9	18	7	0	7	299,817	125,465	174,352
부천시	0	0	0	0	0	0	0	0	0	0	0
부천시원미구	215	181	0	23	11	17	3	14	6,419,973	3,774,136	2,645,837

부천시소사구	77	61	0	9	7	5	0	5	685,757	190,166	495,591
부천시오정구	134	109	0	19	6	2	0	2	1,047,730	383,750	663,980
광명시	131	102	0	17	12	3	2	1	828,842	335,261	493,581
평택시	565	417	4	36	108	21	0	21	6,762,342	3,076,504	3,685,838
동두천시	109	94	3	7	5	5	1	4	317,979	170,595	147,384
안산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산시상록구	210	153	2	18	37	13	3	10	1,541,382	298,955	1,242,427
안산시단원구	338	256	2	35	45	19	2	17	1,730,318	776,707	953,611
고양시	0	0	0	0	0	0	0	0	0	0	0
고양시덕양구	236	197	3	8	28	6	2	4	930,060	368,740	561,320
고양시일산동구	198	156	6	12	24	8	0	8	1,480,309	791,249	689,060
고양시일산서구	110	90	2	7	11	5	0	5	629,018	206,049	422,969
과천시	56	54	0	0	2	2	0	2	109,219	61,082	48,137
구리시	130	100	0	8	22	9	0	9	1,122,626	690,497	432,129
남양주시	363	208	9	24	122	28	8	20	10,205,247	2,884,880	7,320,367
오산시	129	108	0	6	15	3	0	3	538,835	212,194	326,641
시흥시	429	387	0	11	31	15	3	12	6,780,707	1,323,945	5,456,762
군포시	178	128	0	35	15	5	1	4	1,219,260	329,798	889,462
의왕시	84	61	1	2	20	1	0	1	983,612	150,591	833,021
하남시	167	129	0	8	30	4	2	2	1,079,804	575,748	504,056
용인시	0	0	0	0	0	0	0	0	0	0	0
용인시처인구	236	191	1	8	36	12	1	11	1,418,148	711,667	706,481
용인시 기흥구	155	134	0	9	12	5	0	5	615,352	268,936	346,416
용인시 수지구	87	75	0	4	8	3	1	2	577,369	313,351	264,018
파주시	507	390	26	24	67	14	4	10	6,467,309	3,352,130	3,115,179
이천시	233	191	5	17	20	15	4	11	2,112,095	1,138,193	973,902
안성시	306	228	6	20	52	12	0	12	1,796,838	938,265	858,573
김포시	327	269	7	13	38	22	3	19	4,017,293	2,122,231	1,895,062
화성시	523	435	2	6	80	14	1	13	6,105,392	2,498,441	3,606,951
광주시	320	268	5	10	37	26	2	24	3,831,819	1,517,755	2,314,064
양주시	278	217	21	13	27	9	2	7	4,692,573	2,331,368	2,361,205
포천시	357	282	26	11	38	25	8	17	5,593,574	2,443,865	3,149,709
여주시	0	0	0	0	0	0	0	0	0	0	0
여주군	203	168	9	3	23	5	0	5	859,086	470,632	388,454
연천군	115	79	6	3	27	0	0	0	608,552	235,247	373,305
가평군	127	100	8	0	19	3	0	3	767,021	560,043	206,978
양평군	171	131	10	4	26	5	1	4	1,421,807	800,737	621,070

<2011년>

구분	계	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계	사 망	부 상	계	부 동 산	동 산
합계	10,019	7,987	195	528	1,309	466	67	399	83,971,036	38,354,036	45,617,000
수원시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장안구	124	102	0	12	10	17	2	15	397,238	213,838	183,400
수원시권선구	147	127	0	14	6	2	0	2	532,848	297,580	235,268
수원시팔달구	125	101	0	15	9	9	4	5	524,977	331,054	193,923
수원시영통구	88	71	1	9	7	5	2	3	339,843	135,389	204,454
성남시	0	0	0	0	0	0	0	0	0	0	0
성남시수정구	132	101	0	16	15	2	1	1	630,587	221,476	409,111
성남시중원구	167	123	1	24	19	2	1	1	355,788	149,989	205,799
성남시분당구	185	159	2	4	20	11	4	7	590,479	213,289	377,190
의정부시	239	180	2	41	16	19	2	17	807,325	444,128	363,197
안양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양시만안구	146	122	0	6	18	12	1	11	929,887	486,100	443,787
안양시동안구	145	117	0	6	22	8	0	8	1,031,896	518,838	513,058
부천시	0	0	0	0	0	0	0	0	0	0	0
부천시원미구	215	189	0	17	9	7	2	5	712,281	313,615	398,666
부천시소사구	84	67	0	8	9	4	1	3	226,761	107,784	118,977
부천시오정구	124	97	0	20	7	11	1	10	727,837	239,831	488,006
광명시	151	139	0	0	12	11	0	11	835,531	235,722	599,809
평택시	552	450	2	23	77	31	5	26	3,037,202	1,588,292	1,448,910
동두천시	96	80	1	10	5	2	0	2	798,958	345,232	453,726
안산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산시상록구	234	138	2	27	67	4	2	2	838,204	393,120	445,084
안산시단원구	353	246	1	29	77	13	1	12	1,894,885	1,047,022	847,863

고양시	0	0	0	0	0	0	0	0	0	0	0	0
고양시덕양구	259	212	2	12	33	15	1	14	1,715,208	531,233	1,183,975	
고양시일산동구	237	185	14	10	28	11	2	9	1,710,710	761,290	949,420	
고양시일산서구	141	106	11	7	17	10	3	7	921,806	467,408	454,398	
과천시	49	37	1	7	4	0	0	0	309,204	111,796	197,408	
구리시	166	123	0	18	25	6	0	6	1,197,185	616,428	580,757	
남양주시	554	436	10	29	79	25	0	25	8,078,086	3,273,030	4,805,056	
오산시	152	133	1	6	12	3	2	1	224,144	105,258	118,886	
시흥시	487	449	0	27	11	5	1	4	1,941,129	687,194	1,253,935	
군포시	155	141	1	4	9	3	1	2	1,889,248	175,541	1,713,707	
의왕시	83	59	2	6	16	6	1	5	466,968	104,506	362,462	
하남시	177	147	1	7	22	7	4	3	1,516,049	670,849	845,200	
용인시	0	0	0	0	0	0	0	0	0	0	0	
용인시처인구	299	244	0	6	49	9	2	7	1,715,633	768,544	947,089	
용인시기흥구	145	116	0	11	18	3	0	3	782,074	178,255	603,819	
용인시수지구	87	78	0	3	6	3	0	3	2,475,925	816,350	1,659,575	
파주시	590	416	49	28	97	33	2	31	7,242,511	3,507,575	3,734,936	
이천시	268	213	9	7	39	12	2	10	2,601,941	1,146,066	1,455,875	
안성시	339	274	8	6	51	28	1	27	4,639,197	2,820,214	1,818,983	
김포시	346	282	15	5	44	17	3	14	3,492,778	1,770,518	1,722,260	
화성시	509	380	5	11	113	45	3	42	12,313,249	5,787,551	6,525,698	
광주시	298	246	10	8	34	16	1	15	3,649,925	1,916,937	1,732,988	
양주시	356	304	9	3	40	7	2	5	2,769,850	1,186,941	1,582,909	
포천시	329	279	11	9	30	6	3	3	2,960,896	1,417,655	1,543,241	
여주시	0	0	0	0	0	0	0	0	0	0	0	
여주군	222	151	8	3	60	7	0	7	1,156,973	555,630	601,343	
연천군	139	111	4	4	20	6	2	4	876,663	481,335	395,328	
가평군	132	112	2	3	15	9	1	8	664,381	442,585	221,796	
양평군	193	144	10	7	32	4	1	3	1,446,776	771,048	675,728	

<2012년>

구분	계	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합계	10,159	8,667	65	334	1,093	587	61	526	103,551,635	43,944,321	59,607,314
수원시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장안구	107	100	0	2	5	1	0	1	247,077	118,747	128,330
수원시권선구	144	123	2	6	13	13	3	10	811,309	317,278	494,031
수원시팔달구	134	123	0	6	5	6	0	6	499,556	354,164	145,392
수원시영통구	100	87	0	4	9	13	0	13	208,684	82,612	126,072
성남시	0	0	0	0	0	0	0	0	0	0	0
성남시수정구	148	138	0	7	3	10	1	9	416,743	181,298	235,445
성남시중원구	145	126	0	12	7	5	0	5	488,734	164,626	324,108
성남시분당구	200	182	0	5	13	10	0	10	301,101	123,547	177,554
의정부시	244	200	0	26	18	32	4	28	3,752,553	1,954,032	1,798,521
안양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양시만안구	167	145	0	6	16	14	1	13	301,043	122,327	178,716
안양시동안구	148	132	0	0	16	18	1	17	354,085	150,870	203,215
부천시	0	0	0	0	0	0	0	0	0	0	0
부천시미곡구	207	181	0	19	7	7	2	5	1,689,861	838,579	851,282
부천시소사구	76	69	2	1	4	8	0	8	509,505	191,109	318,396
부천시오정구	117	97	1	11	8	5	0	5	647,766	234,253	413,513
광명시	118	98	0	5	15	5	0	5	533,169	202,491	330,678
평택시	544	472	1	19	52	15	0	15	3,495,976	1,585,287	1,910,689
동두천시	101	88	0	8	5	4	1	3	295,577	120,122	175,455
안산시	0	0	0	0	0	0	0	0	0	0	0
안산시상록구	233	186	3	14	30	8	0	8	732,604	310,226	422,378
안산시단원구	373	314	0	17	42	7	2	5	3,075,945	964,099	2,111,846
고양시	0	0	0	0	0	0	0	0	0	0	0
고양시덕양구	237	211	3	4	19	14	1	13	1,171,815	476,026	695,789

고양시일산동구	174	145	1	6	22	22	0	22	3,012,127	1,327,539	1,684,588
고양시일산서구	126	109	0	3	14	43	1	42	4,124,861	1,198,872	2,925,989
과천시	48	41	1	1	5	9	0	9	243,610	109,506	134,104
구리시	165	131	0	12	22	12	1	11	1,085,017	482,927	602,090
남양주시	544	444	3	9	88	58	4	54	11,702,423	5,567,151	6,135,272
오산시	182	159	0	11	12	12	1	11	487,460	211,262	276,198
시흥시	489	452	1	17	19	5	0	5	2,059,609	804,533	1,255,076
군포시	169	147	0	6	16	12	6	6	1,191,267	296,852	894,415
의왕시	103	80	1	6	16	3	0	3	563,191	140,103	423,088
하남시	223	189	1	10	23	4	0	4	1,920,753	1,065,254	855,499
용인시	0	0	0	0	0	0	0	0	0	0	0
용인시처인구	303	248	0	6	49	28	2	26	4,220,628	1,788,908	2,431,720
용인시기흥구	119	99	0	1	19	14	1	13	728,366	456,880	271,486
용인시수지구	81	64	0	2	15	11	0	11	342,410	151,253	191,157
파주시	441	342	5	14	80	22	2	20	7,273,772	3,949,997	3,323,775
이천시	283	268	1	7	7	17	2	15	2,823,912	1,350,780	1,473,132
안성시	348	290	2	5	51	3	0	3	2,347,597	1,278,299	1,069,298
김포시	406	368	3	10	25	18	5	13	2,651,934	1,658,524	993,410
화성시	577	510	3	3	61	20	1	19	17,331,735	4,569,333	12,762,402
광주시	328	288	4	8	28	8	4	4	2,965,828	1,491,134	1,474,694
양주시	353	278	7	5	63	21	6	15	5,975,404	2,714,142	3,261,262
포천시	430	368	7	13	42	12	4	8	5,012,728	2,184,377	2,828,351
여주시	102	83	1	0	18	3	1	2	338,965	224,137	114,828
여주군	144	116	3	0	25	2	1	1	821,619	246,168	575,451
연천군	121	98	3	2	18	12	0	12	1,466,002	369,660	1,096,342
가평군	131	115	3	4	9	12	1	11	675,093	317,125	357,968
양평군	226	163	3	1	59	9	2	7	2,652,221	1,497,912	1,154,309

### 3. 산업재해

#### 1)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2,256명이 발생(사망 1,864명, 부상 83,3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742명)하였고, 재해율은 0.59% 이었다.
- 2011년도에 비하여 사업장수는 5.01% 증가하였고, 근로자수는 8.26% 증가 하였으며, 재해자수는 1.11%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6% 포인트 감소하였다.
-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851,2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256,4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3%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54,520,730일로 전년대비 0.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도	적용 사업장수 (개소)	대상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sup>3)</sup> (%)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 : 백만원)			근로손실일수 <sup>4)</sup> (일)
			계	사망 <sup>1)</sup>	부상	신체장애자	업무상질병이환자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sup>3)</sup>	
2011	1,738,196	14,362,372	93,292	1,860	84,662	36,968	6,516	0.65	18,126,985	3,625,397	14,501,588	54,776,539
2012	1,825,296	15,548,423	92,256	1,864	83,349	37,323	6,742	0.59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증감 <sup>5)</sup> (%)	87,100 (5.01)	1,186,051 (8.26)	-1,036 (-1.11)	4 (0.22)	-1,313 (-1.55)	355 (0.96)	226 (3.47)	-0.06	1,129,450 (6.23)	225,890 (6.23)	903,560 (6.23)	-255,809 (-0.47)

※ 참고

-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text{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3) 간접손실액 : 하인리히 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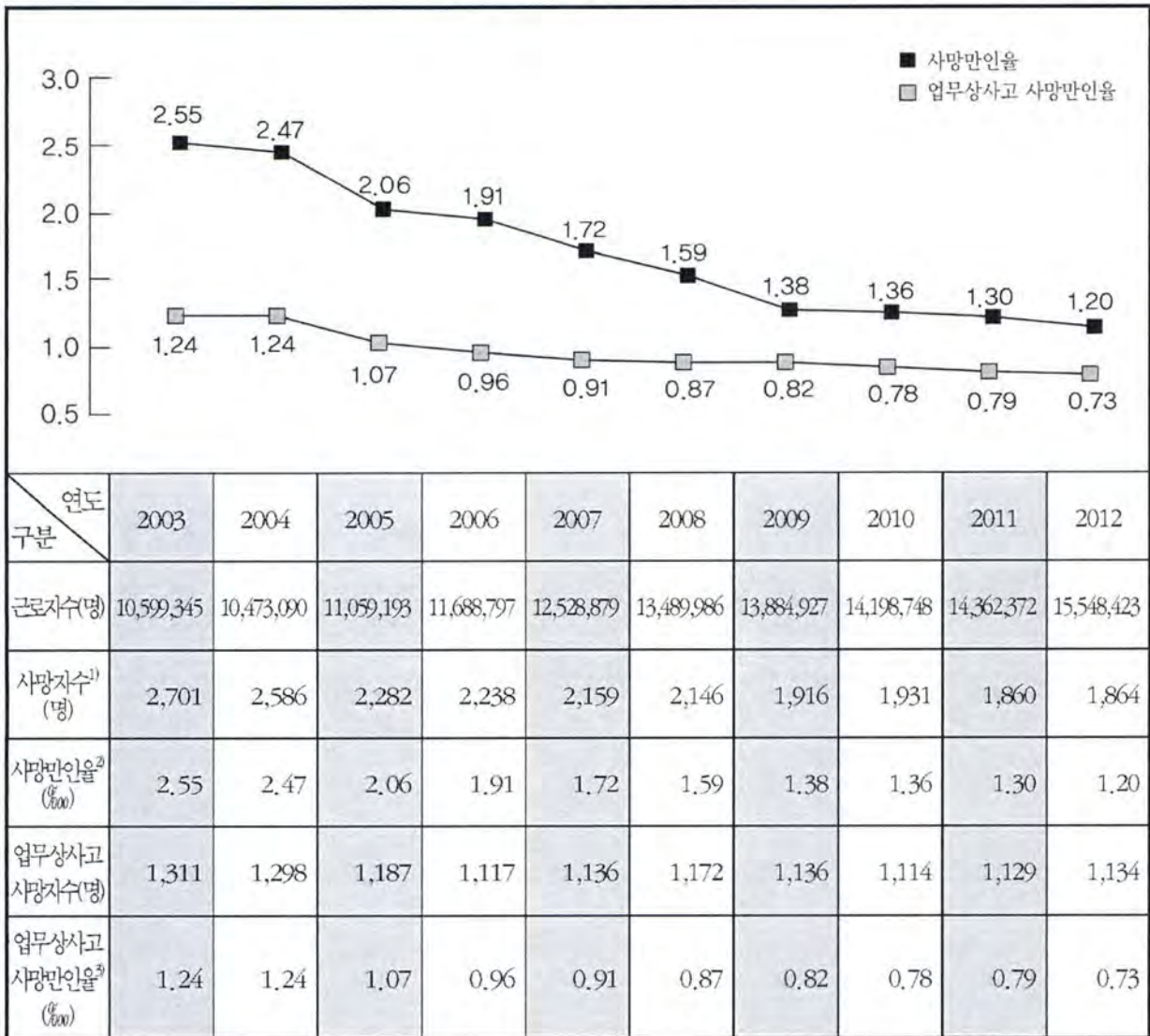
4)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애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5) \text{증감}(\%) = \frac{2012\text{년도}}{2011\text{년도}} \times 100 - 100$$

6)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천일의 56배

- 사망재해자는 1,864명이며 이 중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1,134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730명으로 나타났다.
- 사망재해 유형은 추락이 373명, 진폐 333명, 뇌·심혈관질환이 301명, 끼임 13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망만인율은 1.20‰이며 2011년도 1.30‰에 비하여 0.10‰포인트 감소하였다.
- 만인율(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의 추세는 200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근로자수(명)	10,599,345	10,473,090	11,059,193	11,688,797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14,362,372	15,548,423
사망자수 <sup>1)</sup> (명)	2,701	2,586	2,282	2,238	2,159	2,146	1,916	1,931	1,860	1,864
사망만인율 <sup>2)</sup> (‰)	2.55	2.47	2.06	1.91	1.72	1.59	1.38	1.36	1.30	1.20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1,311	1,298	1,187	1,117	1,136	1,172	1,136	1,114	1,129	1,134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sup>3)</sup> (‰)	1.24	1.24	1.07	0.96	0.91	0.87	0.82	0.78	0.79	0.73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임

$$2) \text{ 사망만인율}(\text{‰}) = \frac{\text{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3) \text{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text{‰}) = \frac{\text{업무상사고 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산업별 사망재해의 분포는 전체 사망자수 1,864명 중 제조업이 29.13%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6.61%, 기타산업이 19.47%, 광업이 17.17%, 운수·창고·통신업이 7.51%, 전기·가스·수도업이 0.11%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243.8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1.78‰, 운수·창고·통신업 1.73‰, 제조업이 1.44‰, 기타산업 0.45‰, 전기·가스·수도업 0.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사망재해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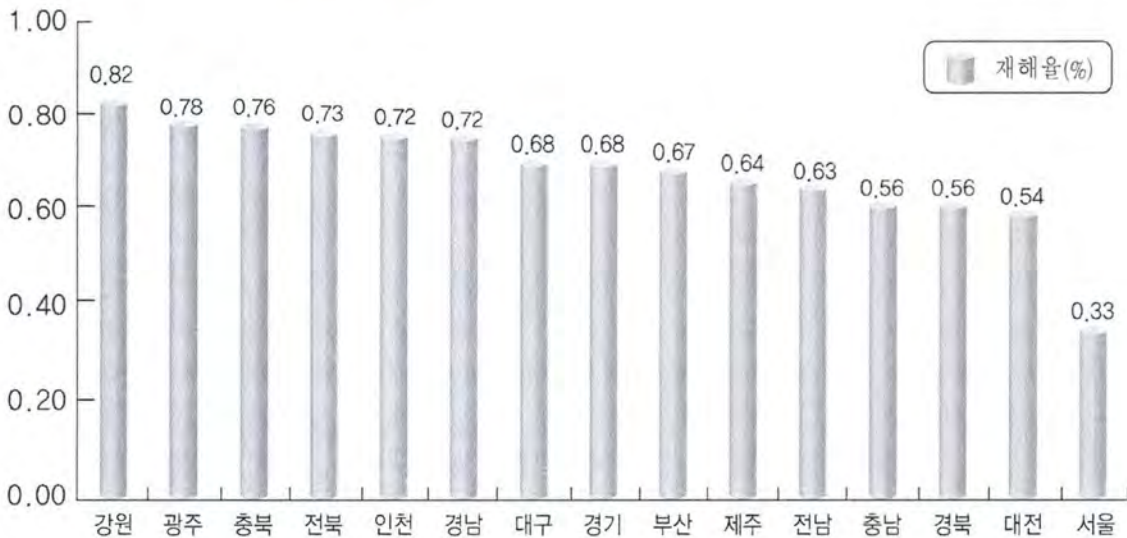
구 분	전 산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근로자수(명)	15,548,423	13,122	3,778,916	2,786,587	56,446	810,173	8,103,179	
사망자수(명)	1,864	320	543	496	2	140	363	
구 성 비(%)	100.00	17.17	29.13	26.61	0.11	7.51	19.47	
만 인 율 (‰)	2011	1.30	306.92	1.46	1.76	0.73	1.72	0.47
	2012	1.20	243.87	1.44	1.78	0.35	1.73	0.45
	증감 (%point)	-0.10	-63.05	-0.02	0.02	-0.38	0.01	-0.02

※ 기타산업은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이 포함된 것임

※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2) 16개 시도별 재해율 현황

〈지역별 재해율 비교도〉



3)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지난 2012년 12월말 기준 경기도의 사업장 수는 417,682 개소 이며 근로자 수는 3,373,300명 이다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354명이 사망했고 22,910명이 부상당해 재해율은 0.68이다
- 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서울과 경기도 등 시도원별로 집계한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망자수	사망인양율
총 계		1,825,296	15,548,423	1,864	1.20
서울 지방	소 계	436,950	3,751,700	188	0.50
	서울 청	108,233	982,909	52	0.53
	서울 강남	65,971	610,571	19	0.31
	서울 동부	61,223	549,611	27	0.49
	서울 서부	51,975	414,774	23	0.55
	서울 남부	54,967	477,783	20	0.42
	서울 북부	39,904	267,692	23	0.86
	서울 관악	54,677	448,360	24	0.54
	중부 지방	소 계	569,207	4,587,225	699
충부 청		48,900	429,546	48	1.12
인천 북부		42,778	329,752	43	1.30
경 기		85,940	804,564	72	0.89
평 택		27,846	296,919	37	1.25
부 천		43,257	290,147	24	0.83
안 양		41,273	321,541	28	0.87
안 산		51,430	379,795	35	0.92
의 정 부		56,107	376,125	55	1.46
고 양		43,585	321,309	37	1.15
성 남		68,244	582,900	66	1.13
강 원		19,199	142,750	13	0.91
강 룡		13,404	86,978	22	2.53
원 주		12,922	97,434	11	1.13
태 백		9,301	84,028	111	13.21
영 월		5,021	43,437	97	22.33

※ 사망지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지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지는 포함)

#### 4)전체 사망사고 원인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63호) 제24조에 의하여 근로 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 가. 발생형태별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총 계	955 (100.00%)	6 (0.63%)	300 (31.41%)	357 (37.38%)	0 (0.00%)	29 (3.04%)	263 (27.54%)
떨 어 짐	363 (38.01%)	4	52	182	0	6	119
넘 어 짐	19 (1.99%)	0	5	7	0	0	7
깔 림	74 (7.75%)	0	27	25	0	2	20
부 딛 힘	70 (7.33%)	1	26	20	0	7	16
맞 음	81 (8.48%)	0	32	29	0	3	17
무 너 짐	51 (5.34%)	0	7	27	0	0	17
끼 임	117 (12.25%)	1	74	16	0	6	20
절 단	1 (0.10%)	0	0	0	0	0	1

(단위 : 명)

구 분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감 전	29 (3.04%)	0	9	12	0	0	8
폭 발 파 열	32 (3.35%)	0	21	1	0	1	9
화 재	29 (3.04%)	0	17	8	0	0	4
무 리 한 동 작	(0.00%)	0	0	0	0	0	0
이상온도·기압접촉	7 (0.73%)	0	5	1	0	1	0
유 해 화 학 · 중 독 · 질 식	36 (3.77%)	0	17	7	0	2	10
빠 짐 · 익 사	25 (2.62%)	0	1	17	0	0	7
교 통 사 고	5 (0.52%)	0	1	3	0	0	1
업 무 상 질 병	11 (1.15%)	0	5	1	0	0	5
기 타	2 (0.21%)	0	1	0	0	0	1
분 류 불 능	3 (0.31%)	0	0	1	0	1	1

#### 4. 범죄 발생 현황

##### 1) 2013년 5대 범죄 발생현황

- 2013년 전국적인 5대 범죄 발생현황은 아직 최종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경기도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30,066건이 발생하여 81,426건을 검거해 62.6%의 검거율을 보였다.

#### ● 5대범죄 발생 현황 (발생/검거)

기 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3년 1월	발생	6,157	14	19	160	2,925	3,039
	검거	5,781	15	25	199	1,565	3,977
'13년 2월	발생	7,190	10	33	198	3,194	3,755
	검거	5,145	9	28	176	1,371	3,561
'13년 3월	발생	9,267	12	56	309	4,178	4,712
	검거	6,412	12	61	303	1,997	4,039
'13년 4월	발생	9,703	16	28	320	4,130	5,209
	검거	6,446	14	42	276	1,711	4,403
'13년 5월	발생	10,914	16	38	494	4,467	5,899
	검거	7,234	14	34	468	1,781	4,937
'13년 6월	발생	12,335	15	28	526	5,701	6,065
	검거	7,166	16	29	478	1,804	4,839
'13년 7월	발생	12,657	21	31	482	5,594	6,529
	검거	7,610	20	25	358	1,945	5,262
'13년 8월	발생	12,484	15	34	546	5,489	6,400
	검거	8,237	18	37	497	2,320	5,365
'13년	발생	10,462	12	29	384	4,389	5,648

9월	검거	7,100	12	28	370	2,005	4,685
'13년	발생	12,706	12	23	497	6,115	6,059
10월	검거	7,313	13	18	430	2,013	4,839
'13년	발생	11,270	18	26	364	5,173	5,689
11월	검거	6,501	14	20	292	1,655	4,520
'13년	발생	14,921	20	33	588	6,466	7,814
12월	검거	6,481	16	31	345	1,390	4,699

※ 14. 1. 17자 기준 통계자료이며, 통계산출시점에 따라 유동적임

2)2012년 범죄 발생 현황

- 2012년 경기도에서 총 387,443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295,471건을 검거하여 검거율 76.3%를 보였다
- 최근 3개년간 경기도 범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도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0	367,926	308,926	84.1	337,487
2011	377,309	296,527	78.6	311,135
2010	387,443	295,471	76.3	336,971

3)2010~2012년 범죄 유형과 검거현황

<2010년>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A)

2010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계	367,289	308,926	84.1	337,487	316,433	21,054
형 법 범 계	194,651	146,447	75.2	169,118	157,266	11,852
재 산 범 죄	112,108	72,634	64.8	79,587	74,297	5,290
절상사형배손	53,394	28,197	52.8	31,207	29,468	1,739
도물기령인괴	465	476	102.4	523	496	27
배손	39,287	33,047	84.1	36,148	33,296	2,852
인괴	5,150	4,329	84.1	4,680	4,340	340
괴	859	795	92.5	1,011	897	114
괴	12,953	5,790	44.7	6,018	5,800	218
강 력 범 죄 ( 흉 악 )	5,587	4,641	83.1	5,054	4,930	124
살인	225	216	96.0	217	207	10
강도	911	809	88.8	1,036	985	50
방간	330	262	79.4	272	262	10
간	4,121	3,354	81.4	3,530	3,478	54
강 력 범 죄 ( 폭 력 )	54,423	49,511	91.0	60,783	56,485	4,298
폭상	26,709	24,537	91.9	28,294	26,569	1,725
협공	13,814	12,912	93.5	14,730	13,798	932
약	642	579	90.2	626	588	38
취와유	1,085	772	71.2	853	808	45
체포와감	59	43	72.9	46	44	2
금	186	163	87.6	202	183	19
행위등(단체등구성·활동)	418	334	79.9	411	406	5
행위등(단체등관련범죄위반)	11,510	10,171	88.4	16,621	14,089	1,532
위 조 범 죄	5,097	3,502	68.7	3,919	3,401	518
통가증권·인지·우표서장	1,184	10	0.8	20	17	3
문인	239	163	68.2	167	164	3
인	3,625	3,287	90.7	3,689	3,179	510
인	49	42	85.7	43	41	2
공 무 원 범 죄	303	264	87.1	476	456	20
적무권유남기용회회	81	63	77.8	83	80	3
수증	60	51	85.0	92	89	3
증	129	119	92.2	246	233	13
증	33	31	93.9	56	54	1
종 속 범 죄	3,329	2,847	85.5	4,802	4,135	667
간혼기도신	369	335	90.8	436	328	107
인타박	1	4	400.0	4	4	-
도신	221	193	87.3	194	191	3
신	2,694	2,283	84.7	4,132	3,575	557
신	44	32	72.7	37	37	-
과 실 범 죄	1,310	1,001	76.4	1,065	1,025	40
과실무상과실치사상화	312	282	90.4	287	272	15
실	512	504	98.4	568	540	18
실	486	215	44.2	220	213	7
기 타 형 범 범 죄	12,494	12,047	96.4	13,432	12,537	895
명권신주비유낙아교공도위무공내용인기	2,423	2,414	99.6	2,662	2,415	247
리행사방해	744	653	87.8	744	651	93
용거침침	3,786	3,722	98.3	4,370	4,139	231
지릴	1,237	1,069	86.4	1,168	1,089	79
9	9	7	77.8	8	7	1
34	20	58.8	25	19	6	
11	9	81.8	9	7	2	
-	-	-	-	-	-	-
247	236	95.5	274	260	14	
3,128	3,082	98.5	3,254	3,124	130	
32	28	87.5	28	23	5	
365	384	105.2	412	375	37	
489	414	84.3	469	419	50	
5	5	100.0	5	5	-	
-	-	-	-	-	-	
4	4	100.0	4	4	-	
-	-	-	-	-	-	
-	-	-	-	-	-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2010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총 계	172,638	162,479	94.1	168,369	159,167	9,20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10	90.9	11	10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례법	997	988	99.1	1,181	1,077	104
개항질서법	-	-	-	-	-	-
건설기계관리법	90	87	96.7	87	87	-
건설산업기본법	67	58	86.6	86	85	1
건설산업진흥법	1,320	1,241	94.0	1,304	1,187	117
고용보험법	40	42	105.0	46	46	-
공채채취법	29	27	93.1	32	3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
공업유수면관리법	54	52	96.3	54	52	2
공중위생관리법	131	129	98.5	131	104	27
공중위생법	288	262	91.0	283	274	9
관세법	5	5	100.0	7	5	2
국가보안법	39,544	38,295	96.8	38,576	36,825	1,751
국가기술자격법	21	26	123.8	31	28	3
국가보안법	13	9	69.2	9	9	-
국민연금법	2	2	100.0	2	1	1
근로기준법	6	5	83.3	5	5	-
내수면어업법	-	-	-	-	-	-
내수면어업법	10	10	100.0	11	1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
농산물품질관리법	4	4	100.0	6	4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4	15	107.1	15	14	1
농업협동조합법	26	27	103.8	66	65	11
농지법	301	284	94.4	315	296	19
담배사업법	74	72	97.3	72	62	10
대기환경보전법	246	243	98.8	245	243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63	379	104.4	406	383	22
대외무역법	3	3	100.0	3	3	-
도로교통법	6,918	5,066	73.2	5,109	4,973	136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0,086	10,087	100.0	10,153	9,980	17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51,747	52,110	100.7	52,183	50,975	1,208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672	671	99.9	676	663	13
도로법	8,484	6,002	70.7	6,233	6,152	81
도시계획법	-	-	-	-	-	-
도시공원법	-	-	-	-	-	-
특정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1	100.0	1	1	-
디자인보호법	66	47	71.2	49	43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286	267	93.4	275	27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263	233	82.3	233	22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423	450	106.4	483	447	16
마약류분쟁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1	-	1	1	-
민사소송법	2	3	150.0	3	3	-
밀항단속법	1	1	100.0	1	1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5	56	74.7	89	77	12
배타적경제수역의국민어업등에관한법률	-	-	-	-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1	1	100.0	1	1	-
변호사법	107	102	95.3	112	111	1
병역법	2,466	2,063	84.0	2,066	2,063	3
보건의료단체등에관한특례법	61	53	86.9	60	54	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0	25	83.3	25	25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25	88	70.4	114	97	17
부동산중개업법	16	14	87.5	21	19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13	104	92.0	143	133	10
부정수표단속법	1,891	1,480	77.2	1,709	1,639	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969	951	99.2	1,013	921	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37	100.0	49	46	3
산업안전보건법	2	1	50.0	1	1	-
산업재해보상법	19	19	100.0	19	19	-
상표법	18	13	72.2	18	17	1
상표법	607	738	121.6	787	620	167
석유사업법	4	4	100.0	4	4	-
선박안전법	-	-	-	-	-	-
선박안전법	-	-	-	-	-	-
선원법	-	-	-	-	-	-
선원법	-	-	-	-	-	-
성매매법	1,682	1,610	95.7	2,473	2,111	362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계속)

2010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소방기본법위반	-	-	-	-	-	-
소음·진동규제법위반	25	26	104.0	27	26	2
수도법위반	8	7	87.5	7	7	-
수산업법위반	-	1	-	1	1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	-	-	-	-
수산자원보호법위반	2	1	50.0	1	1	-
수상안전법위반	2	2	100.0	2	2	-
수질환경정보전법위반	-	-	-	-	-	-
식품위생법위반	1,700	1,697	99.8	1,821	1,366	45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4	5	125.0	8	8	-
실용신안법위반	70	49	70.0	53	51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6	7	116.7	8	6	2
약사법위반	273	276	101.1	285	247	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624	582	93.3	626	616	10
여권법위반	5	3	60.0	3	3	-
여성전문금융업법위반	684	365	53.4	448	381	6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1	100.0	1	1	-
육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165	154	93.3	163	154	9
외국환거래법위반	112	70	62.5	157	88	69
유사수행외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6	35	134.6	50	36	14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42	241	99.6	294	264	3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1	100.0	1	1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31	30	96.8	33	30	3
의료법위반	414	389	94.0	554	428	126
자동차관리법위반	2,328	2,797	120.1	2,845	2,799	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90	187	98.4	193	188	5
저연공권법위반	10	13	130.0	15	15	-
전기차권법위반	4,168	2,815	67.6	2,868	2,644	224
전기사업법위반	17	16	94.1	16	15	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17	12	70.6	12	1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2	13	108.3	13	10	3
전염병예방법위반	20	20	100.0	20	17	3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4	1	25.0	1	1	-
전파법위반	-	-	-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4,239	4,114	97.1	4,220	3,981	239
정치자금법위반	14	12	85.7	12	12	-
조세범처벌법위반	811	680	81.4	724	690	34
조수보호및수협에관한법률위반	-	-	-	-	-	-
주민등록법위반	442	362	81.9	380	338	42
주차장법위반	25	32	128.0	39	33	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	-	-	-	-	-
중권거래법위반	3	1	33.3	1	1	-
지방방세법위반	2	2	100.0	2	1	1
지하수법위반	2	2	100.0	2	2	-
지업안정법위반	209	205	98.1	251	204	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6	18	112.5	62	59	3
철도법위반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	2,217	2,201	99.3	2,347	1,890	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82	67	81.7	92	83	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55	55	100.0	56	54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02	86	84.3	113	112	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60	60	100.0	66	59	7
출입국관리법위반	778	717	92.2	723	684	5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3	3	100.0	3	3	-
통신비밀(도주차량)법위반	11	7	63.6	7	7	-
특허법위반	3,544	3,107	87.7	3,124	3,044	80
특허법위반	63	50	79.4	58	57	1
폐기물관리법위반	163	146	89.6	151	147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1	11	100.0	12	8	4
하천법위반	41	39	95.1	40	40	-
학교보전법위반	11	13	118.2	13	10	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	-	-	-	-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	-	-	-	-
해양오염방지법위반	-	-	-	-	-	-
항로예비군설립법위반	2,834	2,308	81.4	2,313	2,312	1
화재보험법위반	637	3	0.5	3	3	-
기타	14,275	13,829	96.9	15,982	13,360	2,622

<2011년>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A)

2011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계	377,309	296,527	78.6	311,135	301,905	9,230
형 법 법 계	214,995	144,223	67.1	155,761	150,321	5,440
재 산 법 죄	125,130	68,632	54.8	74,214	71,468	2,746
전장사황배손	56,954	22,139	39.6	25,023	24,182	841
도물기명인죄	511	390	76.3	435	422	13
도물기명인죄	44,525	34,666	77.9	36,913	36,311	1,602
도물기명인죄	6,690	4,566	68.1	4,748	4,589	159
도물기명인죄	891	802	90.0	927	891	36
도물기명인죄	16,559	6,079	36.7	6,168	6,073	95
강 력 법 죄 ( 흉 악 )	6,419	4,945	77.0	5,315	5,168	147
강 력 법 죄 ( 흉 악 )	252	230	91.3	235	230	5
강 력 법 죄 ( 흉 악 )	811	710	87.5	998	878	120
강 력 법 죄 ( 흉 악 )	424	296	69.8	303	299	4
강 력 법 죄 ( 흉 악 )	4,932	3,709	75.2	3,779	3,761	18
강 력 법 죄 ( 폭 력 )	59,002	50,718	86.0	54,906	53,285	1,621
폭상협공약취와유감	31,383	27,437	87.4	28,797	28,134	663
폭상협공약취와유감	13,077	11,789	90.2	12,418	12,101	317
폭상협공약취와유감	782	651	83.2	687	666	21
폭상협공약취와유감	1,271	666	51.6	712	700	12
폭상협공약취와유감	57	45	78.9	52	52	-
폭상협공약취와유감	202	166	82.2	189	176	13
폭상협공약취와유감	742	531	71.6	631	615	16
폭상협공약취와유감	11,488	9,443	82.2	11,420	10,841	579
위 조 법 죄	5,552	3,059	55.1	3,340	3,061	279
통유가증권·인지·우표서상	1,997	41	2.1	41	41	-
통유가증권·인지·우표서상	190	136	71.6	153	144	9
통유가증권·인지·우표서상	3,307	2,819	85.2	3,082	2,817	265
통유가증권·인지·우표서상	58	63	108.6	64	59	5
공 무 원 법 죄	203	174	85.7	193	188	5
직지수증	73	61	83.6	70	66	4
직지수증	48	37	77.1	37	37	-
직지수증	61	58	96.1	67	66	1
직지수증	21	18	85.7	19	19	-
풍 속 법 죄	3,304	2,977	90.1	3,380	3,209	171
간혼기도신	389	322	82.8	364	319	45
간혼기도신	1	1	100.0	1	1	-
간혼기도신	254	204	80.3	208	208	-
간혼기도신	2,614	2,413	92.3	2,767	2,642	125
간혼기도신	46	37	80.4	40	39	1
과 실 법 죄	1,573	1,098	69.8	1,138	1,096	42
과실무상파실치사상	359	306	85.2	309	295	14
과실무상파실치사상	576	520	90.3	556	536	19
과실무상파실치사상	638	272	42.6	274	265	9
기 타 형 법 법 죄	13,812	12,620	91.4	13,275	12,846	429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3,269	2,977	91.1	3,140	3,010	130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746	640	85.9	717	689	48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4,033	3,800	94.2	4,027	3,919	108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1,506	1,174	78.0	1,216	1,178	38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11	6	54.5	6	6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54	29	53.7	30	24	6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3	3	100.0	3	3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	-	-	-	-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298	269	90.3	297	286	11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2,980	2,848	95.5	2,922	2,879	43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26	24	96.0	24	24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362	389	107.5	401	386	15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513	453	88.3	482	452	30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3	4	133.3	4	4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	-	-	-	-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6	3	50.0	3	3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1	1	100.0	1	1	-
명권신주비유나아교공도위공내음일기	3	2	66.7	2	2	-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2011년	정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진수	검거진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특 별 범 범 계	162,314	152,304	93.8	155,374	151,584	3,79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46	42	93.3	43	40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563	543	96.4	583	568	15
개 합 질 서 법 위 반	-	-	-	-	-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102	102	100.0	102	102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6	41	91.1	49	48	1
건축법위반	1,456	1,416	97.3	1,464	1,385	79
고용보충법위반	98	93	94.9	96	90	6
공채취법위반	15	14	93.3	16	16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	-	-	-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	5	5	100.0	5	5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90	189	99.5	193	177	16
공직선거법위반	14	13	92.9	13	13	-
교세고치법위반	2	1	50.0	1	1	-
국가기술자격법위반	38,723	37,686	97.1	37,779	36,922	857
국가보안법위반	10	10	100.0	10	10	-
국민연금법위반	21	13	61.9	14	13	1
근로기준법위반	2	2	100.0	2	2	-
낙서선언법위반	12	8	66.7	8	8	-
내수면어업법위반	-	-	-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3	21	91.3	21	20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	-	-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	-	-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	38	39	102.6	39	37	2
농지법위반	4	4	100.0	4	4	-
담배사업법위반	283	272	96.1	296	277	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41	43	104.9	43	41	2
대부동산등기법위반	292	287	98.3	288	283	5
대부동산의등기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927	832	89.8	843	83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4	1	25.0	1	1	-
도로교통법위반(운주운전)	7,425	4,987	67.2	5,002	4,940	62
도로교통법위반(운수측정거부)	9,441	9,517	100.8	9,527	9,481	46
도로교통법위반(운수측정거부)	61,256	61,328	100.1	61,351	60,963	398
도로교통법위반	770	771	100.1	771	767	4
도시계획법위반	239	204	85.4	208	201	7
도시공원법위반	-	-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3	3	100.0	3	3	-
디자인보호법위반	72	58	80.6	60	56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30	121	93.1	122	12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77	181	102.3	182	17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521	512	98.3	544	532	1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위반	3	-	-	-	-	-
민사소송법위반	-	-	-	-	-	-
밀항단속법위반	1	15	1,500.0	15	15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58	84	110.3	143	141	2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
법피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1	50.0	1	1	-
변호사법위반	89	79	88.8	81	80	1
병역법위반	2,109	1,763	83.8	1,763	1,761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65	58	89.2	60	56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7	18	105.9	21	20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09	85	78.0	161	131	3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6	6	100.0	6	6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3	98	95.1	120	116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861	1,610	86.5	1,696	1,591	1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위반	599	599	100.0	609	602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	52	50	96.2	64	50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1	50.0	1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4	3	75.0	3	3	-
상표법위반	11	9	81.8	10	9	1
상표법위반	354	425	120.1	450	429	21
선박안전법위반	3	2	66.7	2	2	-
선박안전법위반	-	-	-	-	-	-
선박안전법위반	-	-	-	-	-	-
선박안전법위반	-	-	-	-	-	-
선박안전법위반	1,828	1,767	96.7	2,464	2,275	189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계속)

2011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소방기본법위반	1	1	100.0	1	1	-
소음·진동규제법위반	-	-	-	-	-	-
수도법위반	12	11	91.7	12	11	1
산업법위반	1	1	100.0	1	1	-
산자원관리법위반	1	1	100.0	1	1	-
산자원보호령위반	-	-	-	-	-	-
상례저전법위반	2	2	100.0	2	2	-
질환경보전법위반	-	1	-	1	1	-
식품위생법위반	1,738	1,728	99.4	1,815	1,644	17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	10	62.5	16	10	6
실용신안법위반	23	21	91.3	22	2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2	3	150.0	3	3	-
약사법위반	437	426	97.5	438	427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506	463	91.5	482	473	9
여권법위반	7	2	28.6	2	2	-
여권문금용법위반	801	295	36.8	323	308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	-	-	-	-	-
목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340	283	83.2	290	286	4
외국환거래법위반	19	9	47.4	9	8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31	42	135.5	50	49	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	-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4	228	97.4	233	228	5
유탄행위등방지방위반	-	-	-	-	-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43	41	95.3	44	41	3
의료법위반	431	394	91.4	456	374	82
자동차관리법위반	1,841	1,866	101.4	1,911	1,873	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419	404	96.4	408	405	3
자연공원법위반	7	7	100.0	7	7	-
건축법위반	5,131	3,238	63.1	3,276	3,139	137
전기통신법위반	15	16	106.7	16	16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1	-	-	-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8	6	75.0	6	6	-
전염병예방법위반	12	12	100.0	12	12	-
전부경찰대설치법위반	2	2	100.0	2	2	-
전파법위반	-	-	-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3,630	3,345	92.1	3,377	3,306	71
정차법위반	4	3	75.0	3	3	-
조세법처벌법위반	803	617	76.8	661	644	17
조수보호및수령에관한법률위반	-	-	-	-	-	-
주차등장법위반	526	391	74.3	394	374	2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14	21	150.0	22	22	-
중권거세법위반	1	-	-	-	-	-
지하수법위반	1	1	100.0	1	1	-
직업안정법위반	216	217	100.5	243	216	27
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2	32	100.0	32	32	-
철도법위반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	2,642	2,616	99.0	2,707	2,533	17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2	25	78.1	28	25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58	58	100.0	58	57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69	44	63.8	44	44	-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15	14	93.3	14	14	-
출입국관리법위반	589	567	96.3	579	563	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2	2	100.0	2	2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1	17	81.0	19	16	3
특가법(도주차량)	3,607	3,141	87.1	3,149	3,121	28
특허법위반	65	52	80.0	57	56	1
폐기물관리법위반	239	230	96.2	230	226	4
폐공사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9	29	100.0	31	29	2
하천법위반	60	57	95.0	68	53	5
학교보건법위반	25	24	96.0	24	22	2
항만운송사업법위반	-	-	-	-	-	-
항해양모예비군설치법위반	-	-	-	-	-	-
향토예비군법위반	2,625	1,880	71.6	1,881	1,877	4
화재보험법위반	802	2	0.2	2	2	-
기타	13,901	13,494	97.1	14,578	13,581	997

<2012년>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A)

2012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계	387,443	295,471	76.3	411,771	336,971	74,800
형 범 범 계	219,999	143,210	65.1	230,413	188,531	41,882
재 산 범 죄	131,061	65,459	49.9	101,793	81,998	19,795
경찰	56,379	20,607	35.3	22,684	18,546	4,138
사형	349	348	99.7	973	854	119
상황	48,592	32,660	67.2	60,987	48,229	12,758
배손	7,826	4,702	60.1	8,033	6,493	1,540
손	928	806	86.9	1,969	1,591	378
과	14,987	6,336	42.3	7,147	6,285	862
강 력 범 죄 ( 흉 악 )	5,886	4,649	79.0	5,347	5,120	227
살강	208	196	94.2	223	187	36
강	541	458	84.7	723	674	49
강	440	292	66.4	319	271	48
강	4,697	3,703	78.8	4,082	3,988	94
강 력 범 죄 ( 폭 력 )	57,446	51,968	90.5	87,527	73,060	14,467
특상	31,842	29,058	91.3	41,974	35,536	6,438
협	11,343	10,760	94.9	16,324	13,804	2,520
감	979	831	84.9	1,048	886	162
악	1,403	860	61.3	1,288	1,111	157
체	56	46	82.1	64	43	21
체	216	186	86.1	265	212	53
특	468	376	80.3	833	775	58
특	11,139	9,851	88.4	25,751	20,693	5,058
위 조 범 죄	5,493	2,773	50.5	5,313	3,775	1,538
특	2,119	39	1.8	27	25	2
유	127	93	73.2	148	130	18
인	3,179	2,580	81.2	5,042	3,546	1,496
인	68	61	89.7	96	74	22
공 무 원 범 죄	228	182	79.8	469	416	53
직	101	74	73.3	192	167	25
직	64	53	82.8	113	100	13
수	48	45	93.8	117	111	6
증	15	10	66.7	47	38	9
공 속 범 죄	2,334	2,033	87.1	7,177	5,586	1,591
간	408	359	88.0	869	437	432
간	2	4	200.0	1	1	-
타	410	325	79.3	331	323	8
도	1,467	1,299	88.5	5,859	4,732	1,127
신	47	46	97.9	117	93	24
과 실 범 죄	1,592	1,220	76.6	1,574	1,287	287
과	402	370	92.0	431	326	105
과	579	585	97.8	819	706	113
과	611	285	46.6	324	255	69
기 타 형 범 범 죄	15,959	14,926	93.5	21,213	17,289	3,924
명	3,886	3,556	91.5	5,092	3,888	1,204
권	676	707	80.7	1,462	1,045	417
신	4,919	4,786	97.3	6,831	5,823	1,008
주	1,819	1,435	78.9	1,746	1,457	289
비	13	13	100.0	22	18	4
유	36	30	83.3	44	16	28
낙	9	8	88.9	22	10	12
아	-	-	-	-	-	-
고	309	290	93.9	386	332	54
공	3,013	3,124	103.7	3,800	3,370	430
도	36	33	91.7	178	146	32
과	452	441	97.6	746	566	180
무	579	491	84.8	873	607	266
공	9	9	100.0	8	8	-
내	-	-	-	-	-	-
용	2	3	150.0	3	3	-
수	-	-	-	-	-	-
의	-	-	-	-	-	-
기	1	-	-	-	-	-

##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2012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b>특 별 범 범 계</b>	167,444	152,261	90.9	181,358	148,440	32,91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42	39	92.9	29	26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493	489	99.2	842	642	200
개항설계서법	-	-	-	-	-	-
건설기계관리법	98	99	101.0	109	105	4
건설산업기본법	70	81	115.7	174	156	18
건설산업촉진법	1,469	1,410	96.0	1,858	1,331	527
고용보채협회법	139	128	92.1	192	134	58
공매법	16	16	100.0	19	14	5
공매처및공정설립에관한법률	-	-	-	-	-	-
공유수면관리법	2	2	100.0	3	2	1
공중위생관리법	182	179	98.4	223	100	123
공직선거법	278	231	83.7	317	276	41
관세법	-	-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9,487	38,134	96.6	39,671	32,400	7,271
국가기술자격법	10	7	70.0	14	12	2
국가보안법	9	8	88.9	8	4	4
국민연금법	2	1	50.0	1	1	-
도로교통법	4	2	50.0	6	6	-
내수면어선업법	-	-	-	-	-	-
내수면어선업법	5	5	100.0	7	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1	100.0	1	1	-
농산물품질관리법	1	-	-	-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9	10	111.1	11	8	3
농업협동조합법	6	6	100.0	10	10	-
농업협동조합법	323	308	95.4	529	435	94
담배사업법	37	36	97.3	43	28	15
대기환경보전법	313	298	95.2	327	306	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67	1,393	101.9	2,103	1,778	325
대의무법	14	5	35.7	25	17	8
도로교통법	11,487	7,133	62.1	7,796	6,771	1,02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6,386	6,462	101.2	7,073	6,615	45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54,122	53,660	99.1	54,525	48,955	5,570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618	611	99.2	599	567	32
도로교통법	170	143	84.1	177	166	11
도시계획법	-	-	-	1	-	1
도시공인법	-	-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1	100.0	1	1	-
다자인보호법	106	96	90.6	168	134	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109	99	90.8	140	130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139	137	98.6	144	60	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679	590	86.9	826	668	15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	1	-	3	2	1
민사소송법	3	3	100.0	3	3	-
밀항단속법	1	6	600.0	6	3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1	24	77.4	105	66	39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에관한법률	-	-	-	-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4	4	100.0	27	25	2
번호사법	74	63	85.1	119	106	13
방역법	2,256	1,856	82.3	2,438	2,404	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8	64	94.1	104	57	4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0	24	80.0	54	42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44	97	67.4	254	179	75
부동산중개업법	5	7	140.0	7	5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41	124	87.9	305	265	40
부정수표단속법	1,505	1,148	76.3	1,044	871	1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463	452	97.6	564	467	9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45	40	88.9	49	48	1
산업안전보건법	3	2	66.7	4	4	-
산업재해보상법	2	4	200.0	6	5	1
상표법	7	6	85.7	25	20	5
상표법	336	309	92.0	515	317	198
석유사업법	4	4	100.0	5	5	-
선박법	-	-	-	-	-	-
선박법	-	-	-	-	-	-
선원법	-	-	-	-	-	-
선원법	1,118	1,130	101.1	4,202	2,536	1,666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 (경찰 1-3-28-B 계속)

2012년	경 기 지 방 경 찰 청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 거 인 원		
				계	남	여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	1	-	2	1	1
수출입관리법위반	18	13	72.2	16	15	1
수출입관리법위반	1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	1	100.0	2	1	1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	1	100.0	2	2	-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534	1,505	98.1	1,928	642	1,286
수출입관리법위반	6	7	116.7	10	9	1
수출입관리법위반	43	32	74.4	60	48	12
수출입관리법위반	1,727	1,574	91.1	1,891	1,795	96
수출입관리법위반	22	21	95.5	24	21	3
수출입관리법위반	319	308	96.6	482	335	147
수출입관리법위반	476	428	89.9	539	500	39
수출입관리법위반	5	9	180.0	16	8	8
수출입관리법위반	1,154	425	36.8	641	484	157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85	141	76.2	173	151	22
수출입관리법위반	31	17	54.8	46	37	9
수출입관리법위반	12	23	191.7	78	55	23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230	223	97.0	352	253	69
수출입관리법위반	-	2	-	5	2	3
수출입관리법위반	42	43	102.4	52	43	9
수출입관리법위반	415	386	93.5	669	302	367
수출입관리법위반	1,480	1,376	93.0	1,732	1,551	181
수출입관리법위반	308	293	95.1	391	354	37
수출입관리법위반	5	5	100.0	10	5	5
수출입관리법위반	6,543	3,399	51.9	4,968	3,720	1,248
수출입관리법위반	22	21	95.5	22	20	2
수출입관리법위반	1	2	200.0	3	3	-
수출입관리법위반	12	9	75.0	16	14	2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3,534	2,764	78.2	3,561	2,860	701
수출입관리법위반	10	11	110.0	43	35	8
수출입관리법위반	973	724	74.4	1,536	1,364	172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660	380	57.6	681	411	270
수출입관리법위반	14	22	157.1	43	27	16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3	2	66.7	7	5	2
수출입관리법위반	2	3	150.0	1	1	-
수출입관리법위반	2	2	100.0	4	4	-
수출입관리법위반	156	150	96.2	288	248	40
수출입관리법위반	32	27	84.4	112	97	15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2,362	2,323	98.3	2,896	1,439	1,457
수출입관리법위반	34	31	91.2	38	29	9
수출입관리법위반	50	56	112.0	74	71	3
수출입관리법위반	2	2	100.0	1	1	-
수출입관리법위반	481	441	91.7	500	350	120
수출입관리법위반	1	2	200.0	-	-	-
수출입관리법위반	17	14	82.4	25	15	10
수출입관리법위반	3,476	2,951	84.9	3,057	2,734	323
수출입관리법위반	75	63	84.0	110	101	9
수출입관리법위반	234	215	91.9	313	288	25
수출입관리법위반	340	338	99.4	462	339	123
수출입관리법위반	77	76	98.7	72	54	18
수출입관리법위반	14	16	114.3	17	12	5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	-	-	-	-	-
수출입관리법위반	3,404	2,380	69.9	3,544	3,543	1
수출입관리법위반	312	1	0.3	1	1	-
수출입관리법위반	12,157	11,812	97.2	22,031	14,694	7,347

## 5. 승강기 사고 현황

###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기준 : 2013.12.31.)

지난 2013년 전국적으로 승강기 사고가 88건이 발생하여 \_명이 사망했고 \_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월별로 보면 7월~9월, 11~12월이 각 2건씩 발생했고 그 외는 0~1건씩 각각 발생했다.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	14	1	1	0	0	0	1	2	2	2	1	2	2
전국	88	8	10	4	9	7	8	7	8	5	4	5	13

※ 2014.01.16.까지 접수된 2013년도 사고 자료이며, 추후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5(사고 및 고장 보고)

※ 2013년 2월 23일 이후의 이용자과실 사고는 승안법 일부 개정으로 안전행정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중대사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제3장. 선진국의 안전문화운동 사례 고찰

### 1. 일본

#### 1) 추진체계

- 총리실 산하 재단법인인 전국 안전협의회에서 안전문화 업무 전반을 총괄함
-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연합기구인 전국 안전협의회는 각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제가 마련되어 교통안전·산업안전·화재·학교안전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

#### 2) 안전문화운동 사례

- ① 전국안전주간: 산업계의 자주적인 노동재해방지 활동과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929년 7월1일 ~ 7일까지를 안전주간, 6월1일 ~ 30일을 안전주간 준비기간으로 설정함
- ② 전국노동위생주간: 근로자의 건강 확보, 증진 도모 및 쾌적한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1일 ~ 7일까지를 위생주간으로 하고 7월1일 ~ 30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설정함
- ③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1971년부터 후생노동성 후원하에 12월15일 ~ 1월15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현장에서 무재해 운동을 적극 전개

#### 3) 시사점

첫째, 1964년 노동재해방지단체법 근거하여 노동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주 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이 이루어짐

둘째,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정립되어 있고 민간이 안전문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한 소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안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집행하고 있음

셋째, 전국안전주간 행사, 전국노동위생주간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행사요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홍보하고, 행사기간을 본기간과 준비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장에서 준비기간 동안 수행해야하는 활동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넷째, 안전운동의 주축이 되는 민간 안전관련 단체들이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회원 기업의 회비 등 원칙적으로 자체예산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

### 2. 독일

#### 1) 추진체계

- 독일 안전문화운동의 주요 주체는 독일 재해보험연맹, 정부 해당부처,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구성되나 독일 재해보험연맹이 주도적 역할을 함
- 1965년 독일 재해보험연맹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서 시작됨
- 독일의 재해보험조합은 강제보험인 재해보험 수행기관으로 산업안전사고와 직업병 방지를 주임무로 하며

고용자단체, 노동조합, 적십자사, 종교조직 등 안전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

## 2) 안전문화운동 사례

- ① 60년대 후반부터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을 몰아내자”는 안전문화운동의 슬로건을 내걸고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
- ② 특정 테마별로 시기를 나누어 작업장 안전, 교통안전, 가정안전, 여가 및 놀이안전 등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함. 특히 아동, 청소년, 근로자, 노인, 외국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문화운동을 전개함
- ③ 산재보험조합 본부가 독일내 106개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2007년 1월 ~ 2008년 12월까지 직업성 피부 질환 예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 이 때 슬로건은 “당신의 피부, 삶에서 가장 중요한 2㎡입니다” 임

## 3) 시사점

첫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높은 안전문화인식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임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문화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임

둘째,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연관단체의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중요함

공공재해보험기관이 매스미디어를 포함, 동원 가능한 대국민 소통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홍보가 결국 사회적인 이슈부각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매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함

셋째,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임

이는 안전관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 구축과도 맥락을 같이 함. 독일재해보험연맹은 '예방의 질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교육 참가자의 92.9%가 안전지식과 의식이 향상되고 안전을 유지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또한 안전교육담당자의 자질이 뛰어날수록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와 유해요인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음

넷째, 정부 포함 사회 주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사회 각 부문 주체들의 참여가 일회적이고 또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기적인 조정, 합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3. 미국

### 1) 추진체계

- 미국내 안전문화는 산업안전청이 주도하며 주정부와 해당 안전관련 기업, 안전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각종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 2) 안전문화운동 사례

- ① 풀뿌리 안전문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의 안전문화 자문단서 풀뿌리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최초 개발
  - 현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각각의 생각을 문화 개념으로 승화시켜 작업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예방함
- ② 원자력 안전문화: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서 안전관련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구성원의 개인 행태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제반 의사 결정 구도 등이 원자력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계속 증진해 감

- ③ 존슨 앤 존슨사의 안전문화: 존슨 앤 존슨사의 회사 사명과 철학에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놓고 안전이 대폭 강화된 작업 공정 안전 지침서를 개발해 직원들의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3) 시사점

- 첫째, 미국의 경우처럼 안전제일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체 감독 및 평가를 안전문화 분야에도 적용이 필요하며, 위험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안전문화 평가를 위한 요약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함
- 둘째,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학령별, 계층별 교육훈련제도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토록 노력해야 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교육훈련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국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안전문화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안전의식 보급에 기여한 시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다양한 포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력기관 간 이행 파트너십 협정 체결과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넷째,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안전문화 관련 민관의 협력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협회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안전문화 활동에 협력토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각 분야별 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안전문화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문화 평가 및 감시활동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4. 영국

### 1) 추진체계

- 영국의 안전청에서 안전문화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연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연구문헌을 고찰한 후 다음 4가지 결과물을 제시함

- 첫째, '화' 조직 내에서 조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임.  
'안전문화'는 조직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안전성과에 대해 조직원의 태도와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둘째,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이 되는 영향력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관리계층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즉 관리자들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안전 활동을 하며 감독자들은 근로자와의 공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셋째, 하부 문화는 일관된 안전문화 정착을 방해하며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작업조건을 경험할 때 발생하기 쉬움  
또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을 보는 시각도 다르게 됨. 일반적으로 하부 문화를 부정적인 요소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작업그룹별로 그들이 경험하는 서로 다른 잠재위험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함
- 넷째, 생산목표 달성과 집단별 성과에 대해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너스는 안전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생산목표 달성에 대해 제공되는 보너스는 작업속도를 증가시켜 불안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이를 보고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며 집단별 성과에 대해 제공되는 보너스는 동료들로 하여금 보너스를 잃지 않기 위해 사고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미치게 됨

### 2) 안전문화운동 사례

① 안전문화 측정도구 개발에 가장 활발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기관은 영국의 안전청으로서 '90년대 중반부터 학계 및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안전문화 측정 도구들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음. 이를테면 HSCST는 영국 HSE에서 1972년 12월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문화 특정 도구로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 도구이며 2001년 1월 현재 500여개의 업체에서 사용중임

② HSCST는 작성자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평가항목에 71개의 질문사항이 있으며 각 항목 당 수준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하는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함

- ◆ 조직 차원의 몰입수준 및 의사소통
- ◆ 현장 관리자의 몰입
- ◆ 감독자의 역할
- ◆ 개개인의 역할
- ◆ 동료근로자의 영향
- ◆ 전 직원의 능력
- ◆ 위험감수행위 및 영향요인
- ◆ 안전한 행동에 대한 장애요소
- ◆ 작업허가 체계 사고 및 아차사고의 보고

③ 영국의 Loughborough 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험관리센터에서 해양원유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software로서 43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프로그램의 표준화한 9개 요소를 내부 신뢰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 관리자의 몰입수준
- ◆ 안전의 우선순위
- ◆ 의사소통
- ◆ 안전규정
- ◆ 지원환경
- ◆ 개입
- ◆ 개인적인 우선순위와 안전욕구
- ◆ 리스크에 대한 개인차원의 인식
- ◆ 작업환경

### 3) 시사점

첫째, 영국의 안전청 등에서 활발히 개발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의 안전문화 평가프로그램이나 설문지들의 핵심은 조직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몰입이나 지원수준, 상호신뢰 분위기, 책임의식, 의사소통 등임

즉,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측정하여 이를 통한 안전문화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둘째, 영국의 안전문화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공유가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며 조직의 건강과 안전성과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믿음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셋째, 영국에서는 조직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4C를 Competence, Control, Co-operation, Communication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안전문화 증진에 있어서 강조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표 8-2> 해외 안전문화 추진 강요요소

- 참여 (Participation)	- 주기적 감사 (Audit)
- 구성원의 위험과 관련된 소통 (Risk Communication)	- 기관 협력 (Co-operation)
- 조직과 개인 간의 신뢰 (Trust)	- 사고의 보고 (Reporting of Near-miss Incidents and Accidents)

5. 개별 우수사례 소개

□ 우수사례 1. 일본의 앓차사고 관리 프로그램

- 일본 내 각부에서 공모한 「시민 참여 교통사고 반감 프로젝트」에서 1등한 카마가야시의 모범사례로 운전자와 보행자 대상 실제 사고경험 사례와 사고 날 뻔한 사례를 설문과 제보를 통해 수집, 유형화한 후 적극 홍보하여 사고 날 뻔한 상황도 만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86.5% 감소

□ 우수사례 2. 프랑스의 라벨비 제도

- 청소년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후 우수 아이디어를 청소년과 함께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24% 사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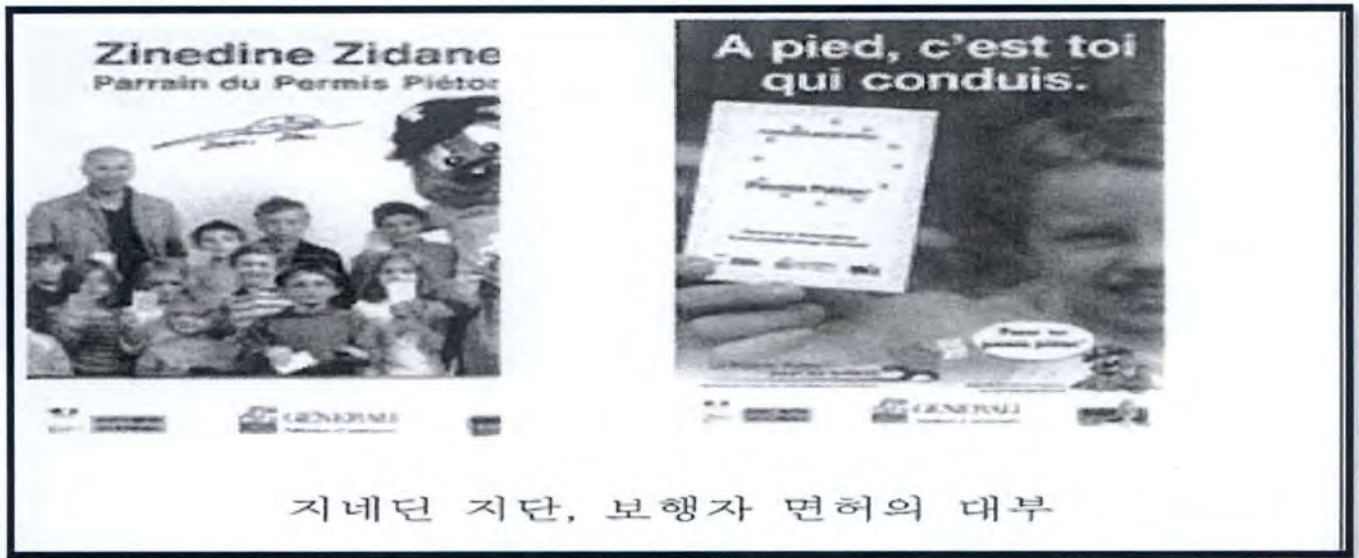
□ 우수사례 3. 프랑스의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와 보행자 면허증 제도

①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

○ 사업개요 : 2014년 1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on-off line상 교육을 실시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 교육 인증서를 제공한 후 초등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유도하여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함

② 보행자 면허증 제도

-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제반 보행 안전 교육 실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 시 보행자 면허증을 줌
-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 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보행자 면허증을 취득토록 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예방함



□ 우수사례 4. 뉴질랜드의 스쿨패트롤

①스쿨 패트롤에게 단속권 부여

-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7만여 명의 패트롤을 선발, 등 하교시 과속, 난폭 차량규제
- 실제 도로교통법 상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어린이가 최고입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 및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 1위는 어린이, 2위는 여성과 노인, 3위는 강아지, 4위가 남성입니다.


- Safe Kids Newzealands 사무총장 -

□ 우수사례 5. 미국의 Infant Car Seat와 Sleeping Child Check

- 미국에서 신생아 출생 시 차내 Infant Car Seat가 없으면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지 않도록 법적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내 방치된 유아의 질식사 사고 방지를 위해 Sleeping Child Check을 의무적으로 설치
- 미국, 캐나다의 경우 차량 운행을 마친 운전자가 차량 내부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근원적으로 유아 질식사 사고 예방

□ 우수사례 6. 독일의 영정 활용 캠페인

### 2. 교통안전 캠페인- (1)




**“Runter Vom Gas!”**

➡ “속도를 줄여라!”

· 과속하면 포스터처럼 가족들  
신의 영정을 들게 될 거다.  
라는 광고의 메시지

### 2. 교통안전 캠페인- (2)



안전벨트의 위치에 따라 영정사진과 인겐운전  
사진이 바뀌는 것을 대비해 보여줌

➡ **“안전벨트는 생명을 구합니다.”**

VERKEHRSS  
WACHT

□ 우수사례 7. 일본의 교통안전 가족회의

①교통안전 가족회의 개최 운동 전개

-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후 어머니가 주재 회의 실시
- 회의 소재는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로 진행
- “한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또 발생, 내 자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실시
- 예) 차 밑 물건 꺼내러 들어갔다 후진하는 차에 치어 사망
  - 실제 광명시의 초등학교 앞 발생, 1학년 2명 남아 사망
  - 일본의 어린이는 운전자에게 “꺼내 주세요” 하도록 교육
- 2009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16명으로 1970년 대비 95%나 감소

□ 우수사례 8. 스웨덴의 3대 교육 방침

①가정의 3대 교통안전 교육 방침

첫째 : 부모님 위주의 어린이 조기교육

- 어린이 안전교육은 부모님이 숙지 후 3세부터 꾸준히 교육

둘째 : 실제 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

-사고사례를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집중 실시

셋째 :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

-「남의 자녀가 곧 내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적극 돌보아 줌

□ 우수사례 9. 영국의 안전한 횡단장소 6원칙

-어린이 사고 감소의 일등공신 “Green Cross Code”

첫째, 먼저 안전한 횡단장소를 찾은 후 그곳에 멈춘다.

둘째, 차도에 내려서지 말고 보도 위 연석선에 선다.

셋째, 주위를 눈과 귀로 잘 살핀다.

넷째, 자동차가 다가오면 먼저 보낸 후 주위를 살핀다.

다섯째, 다가오는 자동차가 없으면 똑바로 횡단한다.

여섯째, 횡단 중에도 주위를 눈과 귀로 잘 살핀다

□ 우수사례 10. 독일의 자동차 운전학교

①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학교 입교

-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찰관 입회 하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시험 실시

-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약 2,000 여평의 부지 위에 자전거 운전면허 체험교육장을 마련해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 실시

- 17세가 되면 운전면허 따기 전 단계로 운전학교에 입교

·교통사고의 심각성, 보행자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의 중요성,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연간 40시간 씩 안전교육을 받고 있음

□ 우수사례 11. 미국의 MADD 와 Safe Kids Campaign

①MADD

- 1980년 캘리포니아주 거주 ‘캔디 라이트너’가 13살 딸과 운전 중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딸 사망

- ‘캔디 라이트너’가 이때부터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결성 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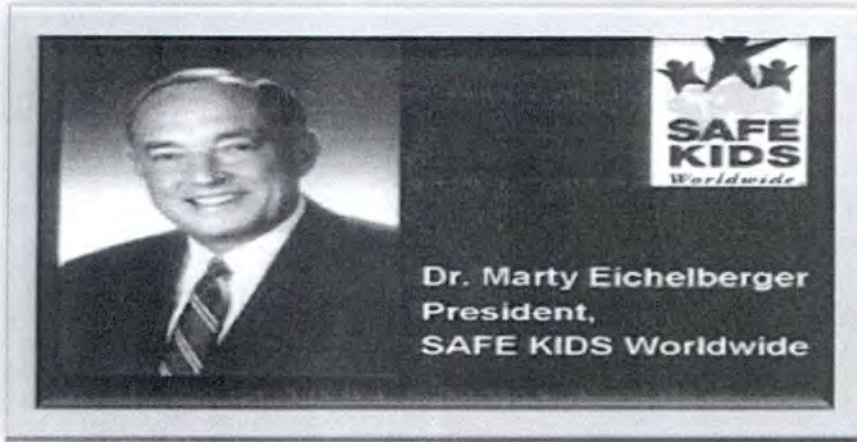
- 현재 미국 전역에 500여개 지부가 설립되어 음주운전사고 예방에 앞장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 하향

·음주운전 가중 처벌 입법화 운동

·지정 운전자 지명 캠페인 등 전개

② Safe Kids Campaign



- 1988 소아 정형외과 의사인 '마티 아이켈버거'등 의사가 주축이 되어 「Safe Kids Campaign」을 결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워싱턴 DC에 본부가, 미국 각주에 380여 개 지부, 17개국에 해외지부를 두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우수사례 12. 호주의 Walking School Bus

① Walking School Bus 실시

- 1992년 빅토리아 주정부 산하 건강증진재단인 빅 헬스에서 최초실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 사고예방에 기여
- 당초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하여 실시
-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에도 기여

② 스쿨존임을 알리는 용의 이빨



□ 우수사례 13. 캐나다의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 제도

①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 제도 도입

- 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주택 세에서 충당
- 스쿨버스 운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는 심신 건강하고 전과가 없고, 추월 경쟁하다 적발된 경력, 인명


- 사고 경력, 교통사고 현장을 비양심적으로 그냥 지나쳐 면허 정지를 받았던 사람은 응시조차 금지
- 자격 취득 후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8점을 넘으면 자격 즉각 취소
- ②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 도로교통법에 스쿨버스의 경우 6개월마다, 오일 교환은 3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안전 점검토로 규정

□ 우수사례 14. 스페인의 포스터와 뮤직비디오 단속 사례

①헬멧 안 쓴 영화 포스터에 벌금 부과

## 안전의식 - 보호장구

- 헬멧 벗으면 안돼!
- 포스터에도 벌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영화사에게  
벌금 3만유로(약 4600만원)  
부과!!

②뮤직 비디오도 처벌 대상

## 안전의식 - 보호장구

- 뮤직비디오도 예외 아냐!



- 팝스타 샤키라, 뮤직 비디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르셀로나를 질주하다가 헬멧을 벗어버렸다는 이유로 벌금 400유로(약 61만원) 부과.

③교통 법규 위반 256억 원 부과

- 스위스 최대 부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256억 원을 부과함

- 우수사례 15. 프랑스의 교통사고와 전쟁
  - ① 대통령이 직접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



▲ 자크 시라크 (Jacques Chirac)  
 - 1932년 11월 29일 : 출생  
 - 1995. 05 - 2007. 05 : 프랑스 대통령 (12년간)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 2002년 7월 14일, 혁명 기념일 담화문을 발표함
- 도로 교통안전정책은 대통령 5년 임기 중 달성해야 할 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함.

-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2% 감소
  - 2001년 8,160명 사망에서 2006년 4,709명으로 감소

## 제4장. 경기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 1.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

#### 1) 안전문화운동 도민 참여 방안

- 1단계 : 안전사고의 심각성 홍보 및 위기감 조성 단계
  - 실제 3만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실상을 제대로 알림
  - “나 자신, 내 가족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조성
- 2단계 : 위험해소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공하는 단계
  -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천처방 마련
  - 실천처방을 교육, 홍보, 실천할 수 있는 의식개혁 엘리트군을 지자체별 100명 이상씩 양성
- 3단계 :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하는 작은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을 최우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
  -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처방의 중요성과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하는 실천운동 전개
  - 사회적으로 “우리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 지역주민이 나서서 예방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종 안전문화운동 전개

#### 2) 안전문화운동 성공 3대 요건

첫째, 구체적 실천 가능한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려준은 물론 이런 심각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한 실천처방을 알려 지역 주민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 주도록 할 것

둘째, 파급성을 띄어야 한다.

- 실천처방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준은 물론 가족, 이웃 주민으로 확대하는 파급성을 떨 것

셋째, 연속성을 띄어야 한다.

-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이 전개돼 생활 속에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 제도화 할 것

#### 3) 활동방향(지자체 안전사고 줄이기 사업에 도민들을 적극 동참)

- 첫째, 우리 지역의 민.관.기업.언론 등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 단체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둘째, 대표적 기관, 단체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역할

- 을 분담하는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함
- 셋째, 상기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사고 Zero운동 실행팀들이 각각 맡은 맞춤형 활동 매뉴얼에 맞춰 활동을 전개함

## 2. 도민의 안전문화운동 10대 실천수칙

### 1칙. 무단횡단 안하고 횡단보도 우측 통행하기

- 무단횡단은 행동능력,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모방능력만 뛰어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행위임
- 자녀를 데리고 하는 무단횡단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행위임
- 횡단보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안전거리가 확보돼 보다 안전함

### 2칙. 전좌석 안전띠 매고 정지선 준수하기

- 차량 탑승시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는 것을 생활화함
- 충돌사고시 사상 위험이 가장 높은 조수석에 가급적 앉지 않음
- 보행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준수함

### 3칙. “손으로 먼저 가라” 고 내가 먼저 양보하기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먼저 가려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
- 보행자에게 손을 들면 운전자는 먼저 가라고 수신호를 함
- 운전중에도 다른 운전자에게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함

### 4칙. 눈으로 직접 비상구 확인하기

- 지하 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의 비상구가 열쇠로 잠겨 있거나 계단에 주류가 쌓여 있는 등 비상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실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 등 대형 참사 발생
- 다중 이용 업소 방문시 “비상구 어디 있어요” 하며 물어보고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함

### 5칙. 1가정 1안전요원 확보하기

- 가정에서 최소한 1명은 응급환자 발생시 심장압박법, 인공호흡법 등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음
- 가정에서 가스 누출시 정확한 환기 방법을 습득함
  - 가정용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감으로 바닥이 아닌 윗부분을 쓸어내야함
- 가정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 점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 6칙. 사고 취약 지점, 우범지역 신고하기

- 우리 주변 각종 안전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 적극 신고함

- 해빙기의 축대, 횡단보도 앞 노상주차장, 버스정류장...

- 우리 주변에 어둡고 방치된 폐가 등 우범지점을 찾아 신고함

#### 7칙. 범죄 없는 마을 위한 순찰, 돌봄, 동행 활동 참여하기

- 일정 시간에 범죄 발생 우려 지역 등을 순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함
- 맞벌이 부부 등 홀로 방치 될 수 밖에 없는 어린이들 적극 돌보아주는 활동을 전개함
-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 어린이들과 함께 귀가해주는 동행 활동을 전개함

#### 8칙. 불량식품 추방 위한 시민 감시활동 참여하기

- 불량식품의 위험성, 종류 등 지식을 습득한 후 가족에게 위험성을 교육함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추방운동에 앞장섬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불량식품 시민 감시단」 활동에 동참함

#### 9칙. 작업 전후 안전 점검 습관화하기

- 안전점검은 설비의 불안전 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함을 발견, 안전대책을 세우는 활동임
-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에 안전점검을 습관화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등 스스로 안심일터 만들기에 적극 동참함

#### 10칙. 작업상 안전보호구 착용하기

- 안전보호구란 안전사고나 건강장애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임
- 건설공사 등 산업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작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섬

### 3. 우리가족의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 1칙.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으로 건너십시오.

-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보행자의 왼쪽에서 접근하므로 오른쪽으로 간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보다 안전합니다.

#### 2칙. 헤드레스트(머리받침대)를 올려주세요.

-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위 상해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머리 받침대를 최대한 뒷머리에 근접시키고 머리상단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 3칙.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손으로 양보표시를 해주세요.

-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하고, 보행자는 손을 들어 “제가 먼저 갈게요”하는 것을 운전자와 보행자 간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야 합니다.

#### 4칙. 자녀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가지 습관을 길러주세요.

-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
- 둘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 셋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5칙.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행위입니다.

-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모방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이 바로 주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 하는 것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칙. 우리 자녀는 엄마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 자동차 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합니다. 자녀를 엄마가 조수석에 안고 타는 경우 사고 시 엄마가 받는 충격이 7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는 엄마의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어린이는 반드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힌 후 어린이 보호장구를 장착해서 교통사고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7칙. 전좌석 안전띠 매기를 실천해주세요.

-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솔선수범하고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교통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칙.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려주세요. ([www.go119.org](http://www.go119.org))

- 안전운전 자가진단표에 나와 있는 10가지 점검항목에 스스로 나 자신의 운전행태, 운전습관을 비교하여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가 몇 점인지 평가한 다음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리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9칙. 하루에 10번씩 양보하세요.

-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과속·난폭·부주의 운전이 문제가 됩니다. 운전자가 '내가 먼저 양보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심적 여유도 생기며 보는 시야도 넓어져 그만큼 사고위험이 줄어듭니다. 모든 운전자들께서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에 10번씩만 양보해 주십시오.

10칙.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세요.

- 교통안전 가족회의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실제 발생한 어린이 사고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가정의 교육 방법이다.

## 제5장. 안전문화운동 실천 과제

### 1. 사회안전

1.1 슬로건 : 안심사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1.2 실천과제별 교육내용

과제1.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1) 과제 개요

○ 우리 마을을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연계하여 어두운 우범 지점을 찾아 보다 맑게 하고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받는 안정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감

2) 과제 선정 사유

○ 요즈음 수원 오원촌 사건, 부산 김길태 사건 등 흉폭한 사회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 이러한 각종 범죄는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적 예방에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서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고하고 서로 돌보아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범죄는 근원적으로 예방해 갈 수 있음

○ 지역주민 모두가 무관심과 부주의하면 범죄 피해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동네, 더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범죄 없는 안심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로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 2013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확정된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계획을 보면, 국민안전 추진전략의 23개 국정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9개 과제는 <표 1>과 같다(국무조정실, 2013. 5. 28.)

<표 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국민안전 추진전략의 범죄로부터 안전 관련 과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협업부처
국민안전 추진전략 중 범죄로부터 안전 9개 과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문체부, 교육부 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부	안행부, 경찰청, 법무부 등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식품의약품안전 처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여가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무부	-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법무부	교육부
	민생치안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경찰청	안행부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방안, 2013. 5. 28.

### 3) 최근 발생한 범죄 사례

- 수원 오원춘사건
  - 2012년 4월 1일 발생. 일명 수원 토막 살인사건
  - 퇴근하는 여성 회사를 집으로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
- 부산 김길태사건
  - 2010년 2월 24일 발생
  - 집안에 있던 여자 중학생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
- 강호순 사건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저지른 여성 7명을 연쇄 납치 살인 사건
- 안양 혜진·예슬이 사건
  - 2007년 12월 25일 발생
  -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2명을 납치하여 성폭력하고 살해한 사건

### 4) 선진국의 범죄예방 사례

- ① 영국의 안전도시 운동 전개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협력체 구성기관과 단체의 업무범위와 수범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내무성을 중심으로 범정부협력체 (Cross - Government Respect Agenda)를 구성하고, 전국지역안전계획 (National Safety Plan)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또한, 범죄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 영국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 주도하에 지역주민, 자치단체, 경찰 등의 여러 기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써 '안전도시 운동 (Safer Ci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 환경.보건.교육 등 범죄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실천방안 모색의 결실로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이 제정됨

주요 내용은 경찰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타 기관들과 함께 범죄안전파트너십(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을 의무적으로 구성, 3년 주기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과 기초 자치단체를 지역안전협력체를 주도할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ies)으로 규정함.

영국은 동법 시행으로 지역안전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협력체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됨.

이 외에도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협력체 구성기관과 단체의 업무범위와 수범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내무성을 중심으로 범정부협력체 (Cross-Government Respect Agenda)를 구성하고, 전국지역안전계획 (National Safety Plan)을 수립 시행함.

또한, 범죄율이 높은 도시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8년 영국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 주도하에 지역주민, 자치단체, 경찰 등의 여러 기관, 민간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써 '안전도시 운동 (Safer City Program)'을 실시함

## ② 미국의 CPTED 조례 제정

미국에서는 수십년간 경찰활동의 역할 모델이 변화하였는데 이를 위한 학자들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조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기관간 및 민.관 협력치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시행 되고 있음.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치안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침입절도 및 강도를 줄이기 위해 워싱턴 SeaTec City와, 애리조나 템페(Tempe City)시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템페 시에서는 1997년 부터 건축.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에 CPTED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토지 및 공간사용을 규제하고, 그 집행에 있어 매우 다기능적이고 다기관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함 또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미국 전역에 활성화 된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트(Spotlight Project)'는 지역공동체의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집중 보호관찰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통제를 개선시킨 사례임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메릴랜드주는 1997년부터 3년간 1,0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 범죄다발지역에도 적용시킴으로써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범죄, 폭력, 마약, 두려움이 만연한 거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 주, 카운티 기관들의 새로운 파트너십 축구로 이어지고 있음

## ③ 프랑스의 지역치안협약(Contrat local de sécurité, 1997)

프랑스에서는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치안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각각 담당해야 할

분야를 설정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지역안전협약(Contrat local de sécurité)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1997년 10월 24-25일 빌팡트(Villpinte)에서 개최된 “자유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시(Des villes sûres pour des citoyens libres)”라는 정부 포럼에서 중앙정부는 지역치안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치안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함.

이런 배경하에 빌팡트 포럼에서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지역 치안정책의 새로운 제도로써 도입할 것을 천명한 것이 바로 ‘지역치안협약’임

<표> 프랑스 지역치안협약(Contrat local de sécurité)의 세부 내용

1	주요 실행계획 수립	a)범죄예방
		b)경찰(군경찰 포함)의 참여 방식
2	지역치안주체의 참여에 의한 계획 추진	a)참여 주체들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 구축
		b)일자리창출을 통한 치안협약 실행의 인적 수단 보완
		c)공공기관과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통한 주민들의 치안협약 전 과정에의 참여
		d)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원활한 협조와 통합적인 정책 추진
3	지역 사법기능의 역할	a)지역적 상황에 맞는 검찰의 형사정책 추진과 검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
		b)사법조직의 지역 분산을 통한 “가까운 정의”의 실현

④ 독일의 범죄 예방 위원회 운동

독일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는 1990년부터 주정부 내각의 의결을 통해 범죄감소와 이를 통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안전상태, 주관적인 안전감의 개선을 목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이 역시 경찰, 법무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들과 비공식 조직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범죄요인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추구하고자 한 것임.

⑤ 일본의 안전마을 추진 협의회 운영

일본 가나자와현에서는 2002년 ‘범죄없는 안전.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 사업자, 주민대표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오사카부 안전마을 추진회의’를 설립하고 각 경찰서 단위별로 ‘안전마을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5) 한국의 CPTED 운영사례

①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 서울의 달동네로 알려지며 안전에 취약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곳이었으나 ‘소금길’산책코스를 만들며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범죄예방효과를 거둠
- ‘소금길’산책코스의 페인팅으로 그림과 무늬를 입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 알림벨을 통한 위급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
- 산책코스에 포토존과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증가를 유도했음
- CPTED 적용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9.1%하락, 가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 13.6%하락, 동네에 대한 애착 13.8%증가, 만족도 83.3%, 범죄예방효과 73.6%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② 서울시 강서구 공진중학교

- 학교 내의 벽에 그림을 통한 밝은 분위기와 사각지대를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참여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예방효과를 거둠  
(외벽과 내벽의 페인트칠과, 사각지대의 CCTV설치와 스포츠·놀이 공간으로의 탈바꿈)
- 본관의 어두운 공간에 샌드백을 설치하여 쉬는시간이나 방과 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함께 대화의 공간으로 변화시킴
- 학교에 CPTED를 적용한 결과 학교 내 무질서 인식을 7.4%와 범죄 두려움 3.7%가 떨어짐. 반면 학교 시설물에 대한 호감도는 27.8% 상승함



6) 안심마을 만들기 지역주민 실천수칙

첫째, 최소한 월 1~2회 이상씩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순찰 서비스를 적극 수행함.

- 우리 동네의 우범 지역을 찾아 제보하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적극 신고하는 등 우리 동네의 범죄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순찰 활동을 수행함.

둘째,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최소한 주 1회씩은 돌봄 서비스 역할을 적극 수행함.

-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부족하여 홀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이 유괴·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런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돌봄서비스 역할을 수행함.

셋째, 늦은 시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동행 서비스를 최소한 1회씩 제공함.

- 우리 마을 내 동행서비스 제공 센터를 개설하여 부득이 여성과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시 동행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

넷째, 나 자신부터 범죄 안전의 심각성과 범죄사고 예방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 달하는 교육서비스를 적극 제공함.

- 우리 마을의 모든 지역 주민, 특히 “어린이, 여성 등은 우리 가족들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범죄 예방수칙과 범죄 발생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기 내용을 적극 알려 줌

다섯째, 상기 내용을 실천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범죄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위한 지역 치안 네트워크 구축추진 방향을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섬.

## Tip. 깨어진 유리창 이론

### ① 개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있으며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 (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임

### ② 실험의 시작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매우 흥미 있는 실험을 함.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 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둬.

다만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 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는데, 약간의 차이 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닛을 열어 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 지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나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던 것임.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 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계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Broken Window'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 짐.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 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됨.

### ③ 뉴욕에서의 활용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매우 위험함.

렛거스 대학의 범죄심리학박사였던 조지 L. 켈링 교수는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히 지우는 것을 제안함.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당시 교통국의 데이빗 건(David Gunn)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히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움.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함.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이나, 이후 계속 줄어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75%나 줄어들었음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함.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히 계속하였음.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함.

## 과제2. 클린 인터넷(폭력·음란물·중독 NO)

### 1) 과제개요

인터넷상에서 부문별하게 폭력, 음란물 등이 난무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정서 발달상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어린이·중·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법과 폐해등을 충분히 알려 인터넷상 폭력, 음란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클린인터넷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

아울러 부모님에게도 교육을 통해 인터넷 중독, 폭력의 위험성과 구체적 예방법을 알려주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적극 관리하도록 하여 인터넷 폐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함.

### 2) 과제선정 사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사이트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새로운 음란물과 성인정보가 폭증하고 있으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유해정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청소년, 어린이는 가치관이나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단계로 무방비로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부작용등을 충분히 습득한 후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인터넷상 폭력, 음란물, 중독 등에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음.

### 3) 각종 피해 사례

#### ① 스마트폰 중독 피해

#####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매우 심각함

스마트폰 중독이란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강박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집착,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

#####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1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12년 만 10세에서 49세까지의 청소년과 성인 등 총 10,68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률을 약 11%로 전년 대비('11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약 18%로 전년('11년 11%)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인(약 9%)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스마트폰 중독시 주의력·집중력 결핍, 심각한 부작용 유발

전국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48.8%, 중학생은 85.1%, 고등학생은 83.7%로 어린이와 청소년 10명중 약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여 이동할 때, 수업시간에, 수면 전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중력이 결핍되어 성적이 떨어지고, 게임 등 가상환경에 몰입할 경우 실제 대화 기술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져 외톨이가 되는 등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 음란물 중독시 피해는 보다 더 심각함

한창 예민한 시기인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시절 음란물에 중독되면 그 몰입도가 보다 심각해 중독 증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함.

급기야 학교 성적 저하, 무단 결석,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음.

#### ② 사이버 폭력 피해

##### ○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 사이버폭력의 실태의 심각함

10대 청소년의 76%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었고, 75.8%는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1개월 (5.5%)부터 6개월 이상(0.6%)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사이버폭력이 자살충동까지 유발함

사이버상의 폭력은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스마트폰 채팅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4) 클린 인터넷을 위한 부모님의 실천수칙

##### ① 스마트폰 중독 및 음란물 예방 실천수칙

첫째, 부모가 먼저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무조건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합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보완관인 “자녀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

자녀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란 부모님 스마트폰에서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 및 접속한 인터넷 목록 조회가 가능토록한 서비스를 말하며 앱과 인터넷 사이트 이용시간 제한 설정 및 요일별 이용시간관리는 물론 자녀가 설치한 앱과 인터넷 사이트의 선택적 차단 및 해지도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법을 습득하여 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인터넷 중독 예방법을 당장 실천한다.

다섯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 ② 사이버 폭력 예방 실천 수칙

첫째,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한다.

둘째, 사이버 폭력 예방법을 습득한 후 자녀에게 알려준다.

셋째, 사이버 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관을 알고 적극 활용한다.

## 5)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처벌규정

### ○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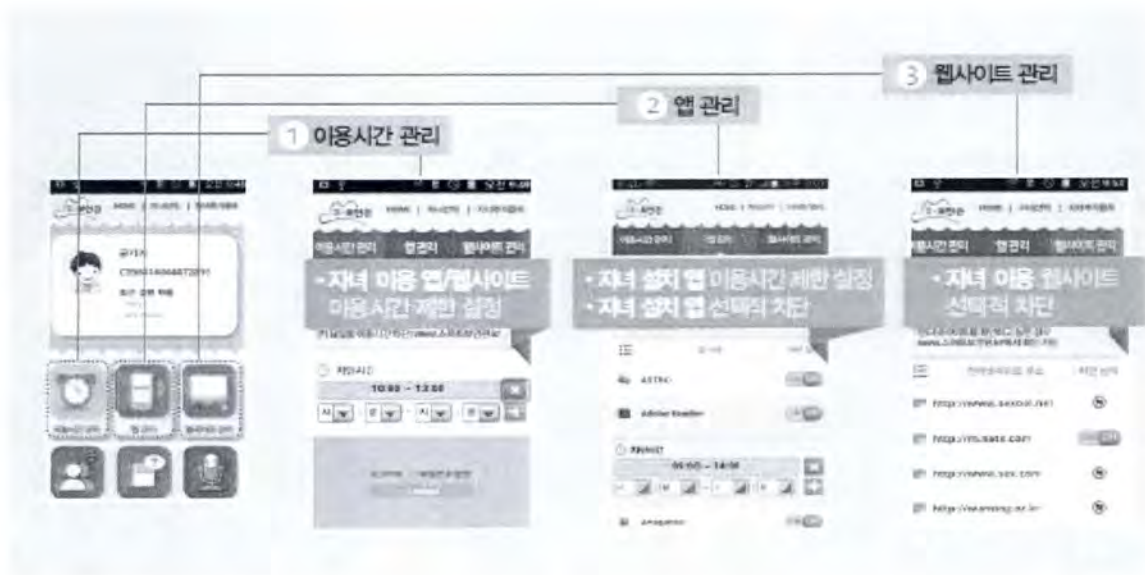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 음란물 유포 :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아동 음란물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유포 :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 록 대상이 되며, 셀카 음란물(자신의 특정부위, 자위행위)등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찍어 문자, SNS 채팅창 등을 통해 유포 또는 거래시 형사처벌

※ Tip1.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방법



○ 이용시간 관리

자녀가 설치한 앱과 인터넷사이트의 이용 제한시간 설정 가능

<이용시간 제한 설정 사례>

이용제한 시간을 09:00~16:00, 22:00~06:00로 설정할 경우 해당시간 내에는 앱/웹(인터넷)사이트 이용 불가

○ 앱관리

자녀가 설치한 앱 목록 조회 및 부모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해지 가 가능하며, 앱별로 선택하여 이용시간 제한 설정 가능

<앱별 이용시간 제한 설정 예>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하려면 카카오톡 선택 후 이용제한 시간을 09:00~16:00, 22:00~06:00로 설정할 경우 해당시간 내에는 카카오톡 이용 불가

○ 웹사이트 관리

자녀가 접속한 웹(인터넷)사이트 목록 조회 및 부모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단 또는 해지 가능

※ Tip2.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법

-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 인터넷을 하느라 밤늦게 잠을 자고 식사를 거르는 거른다.
- 현실의 친구보다 인터넷 상의 친구를 더 좋아한다.
-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켜다.
-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인터넷 상의 게임 등을 생각한다.
- 스트레스를 인터넷을 하면서 푼다.
-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 반항하며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위 항목 중 3개 이상이면 인터넷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함.

※ Tip3. 인터넷 중독 예방법

- 컴퓨터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장소에 설치한다.
- 강압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다른 활동을 유도하여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간다.
- 음란물 차단 시스템 등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인터넷 중독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들에게 인터넷 말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Tip4. 예방 및 상담기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 기관

예방 및 상담 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미래부, 전국 12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용인, 경기 의정부,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제주	www.iapc.or.kr	대표 전화 1599 - 0075
아이윌 센터(서울시 4개소)	명지	www.mjiwill.or.kr
	보라매	www.brmiwill.or.kr
	창동	www.cdiwill.or.kr
	광진	www.gjiwill.or.kr
위센터(교육부) (학생 위기상담 종합 지원 서비스)	www.wee.or.kr	대표 전화 1588 - 7199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전화(여가부)	www.cyber1388.kr 1388.kyci.or.kr	국번 없이 1388

※ Tip5. 사이버 폭력 예방법

-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자녀와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한다.
-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혹은 알지 못하도록)관리한다.
-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해 놓는다.
-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모바일 가디언 : <http://www.mguardian.co.kr>)를 설치한다.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다.
-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 기관을 알아 둔다.
-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 Tip6. 사이버 폭력 예방 돕는 기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학교폭력 One-Stop 자원 시스템

예방 및 상담 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위센터 (학생 위기상담 종합 자원 서비스)	www.wee.or.kr	대표 전화 1588-7199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국번없이 1388
경찰청 신고민원포탈	cyber112.police.go.kr	국번없이 117

민원 및 상담기관

예방 및 상담 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ww.iapc.or.kr	1599-0075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www.mogef.go.kr	국번없이 1366
청소년전화	1388.kyci.or.kr	국번없이 1388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1577-0199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www.jikim.net/sos	1588-9128

신고방법-알아두면 좋아요.

가까운 경찰서 방문신고

- 직접 방문하는 경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양식/작성방법 : <http://cyber112.police.go.kr>)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해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접수 당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피해경위 등을 6차 원칙에 따라 정리해 가지고 가면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사이버폭력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 후 대부분의 수사과정에서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편한 시간을 정하여 출석,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과제3. 불량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 1) 과제개요

-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사회약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등 29개 정부 기관이 힘을 합쳐 범정부 추진단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민간단체 역시 2013년 5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불량식품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검찰도 불량식품 합동 단속반을 설치하고 지자체도 불량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 전망위적으로 불량식품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불량식품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먹을거리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

#### 2) 과제 선정 이유

- 국민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그동안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처벌보다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이득이 훨씬 큰 구조로 되어 있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11년 기준 36.5%인데 비해 우리는 0.8%에 그치고 있으며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건수 역시 2010년 11,892건에서 2011년 10,217건, 2012년 9,884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문방구에 검증이 안된 불량식품이 널려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이미 불량식품 문제가 위험수위의 한계를 넘어섬.

#### 3) 불량식품 피해 사례

##### 사례1.

특정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불량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복용한 소비자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L씨(50·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 모처에서 생산한 불량식품을 고혈압 등 치료에 효능이 있는 치료제로 속여 양평군에 소재한 A연구소 등에 50여 박스(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씨는 A연구소 등을 통해 불량 식품을 구입한 피해자 K씨(58)에게 부정맥 등의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1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불량 식품은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 4)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실천수칙

첫째, 불량식품의 종류, 위험성, 근절방안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둘째, 가정에서 자녀 등 가족에게 불량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셋째,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불량 식품 시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동참.

넷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추방운동에 적극 앞장섬.

다섯째,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불량식품 안사먹고, 안만들기 운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운동에 동참을 유도함.

## 5) 불량식품 제조시 처벌 규정

-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자에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영업주는 정당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함.
- ② 또한 불량 식품 등을 압류, 폐기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에 위해발생시 영업자는 반드시 위해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함.
- ③ 영업주가 상기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자체를 폐쇄 시킬 수 있음
- ④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 등 식품위생에 위해 발생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가 할 수 있음.
- 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지자체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별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음.

## 2. 생활안전

2.1 슬로건 : 안전을 생활화하는 안심생활을 스스로 실천해요!

2.2 실천과제별 교육내용

과제1. 가정내 안전요원 확보하기

1) 과제개요

가정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고유형과 사고예방법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하는 심폐소생술법 등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즉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함

2) 과제 선정 사유

-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안전사고의 6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할 정도로 가정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
- 영유아의 경우 질식, 중독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의 부주의등에 기인하며 가정에서 응급 상황 발

생시 인공호흡법, 심장압박법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도 성인 남성 중 2~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무지함.

- 이런 무지함과 부주의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가정에서 각종 응급상황시 대처능력과 심폐소생술법, 가스환기시 대처방법 등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확보할 경우 상당 부분의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 가능.

### 3) 가정 안전 사고 사례

#### 사례1

초등학생 김철수 군은 방과 후 귀가 길에 친구들이 길거리 가게에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먹는 모습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색깔이 예쁜 젤리 모양의 과자를 사먹고 있어 같이 먹고 싶어 보인도 맘에 드는 빨간 색 젤리를 샀다.

귀가 길에 맛있는 젤리를 계속 빨아 먹으며 즐겁게 집으로 갔고, 집에서 사온 젤리를 급하게 하나 더 먹었다. 이후 급하게 삼키다 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어 뱉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발을 주물러주고, 등도 쳐 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

드디어 김철수 군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였고, 울기만 할뿐 다른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했다.

119가 도착하여 보니 호흡, 맥박,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진료를 계속하였고 의료진의 전문 심폐소생술 도중 목구멍을 하나 가득 채우고 있는 젤리 덩어리가 발견되어 기구로 제거하였다.

김철수 군은 매우 의식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 사례2

오후 부산 동구 수정동 박모(69세·여) 씨 집에서 박 씨의 외손자 손모(7세·초등 1년) 군이 냉동실에 있던 망고맛 미니컵 젤리를 먹던 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손 군이 딱딱하게 얼어 있던 젤리를 급하게 넘기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손 군이 먹은 젤리는 수입산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곤약 성분의 수입산 젤리는 입 안에서 잘 녹지 않고 미끄러워 어린이들의 질식사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례3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자녀가 하교 후 땅콩, 호두 등 견과류를 먹다가 목에 무엇이 걸렸는지 얼굴

이 빨개지고 손으로 목을 감싸 안으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급하게 견과류를 먹다가 기도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어머니는 즉시 어린이를 세운 후 위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를 주먹으로 대고 복부 밀어올리기인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몇 회를 계속 반복하여 실시한 결과 어린 자녀의 입에서 먹던 땅콩이 토해져 무사히 질식 위험을 넘길 수 있었다.

이 어머니는 “만일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쩌나”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녀에게 음식을 안전하게 천천히 먹는 방법과 특히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아예 주지 않으며 부득이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을 철저히 안전교육 했다.

아울러 상기 사고 사례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의 중요성과 시시방법을 적극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4) 가정 안전 교육 내용

##### ① 심폐소생술 능력

##### ㉠ 성인 기본 심폐소생술

심폐정지 시 누구나 배워서 시행해야할 기본적인 대처법을 기본인명소생술이라고 하며, 이 중 핵심적인 기도, 호흡, 순환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기본심폐소생술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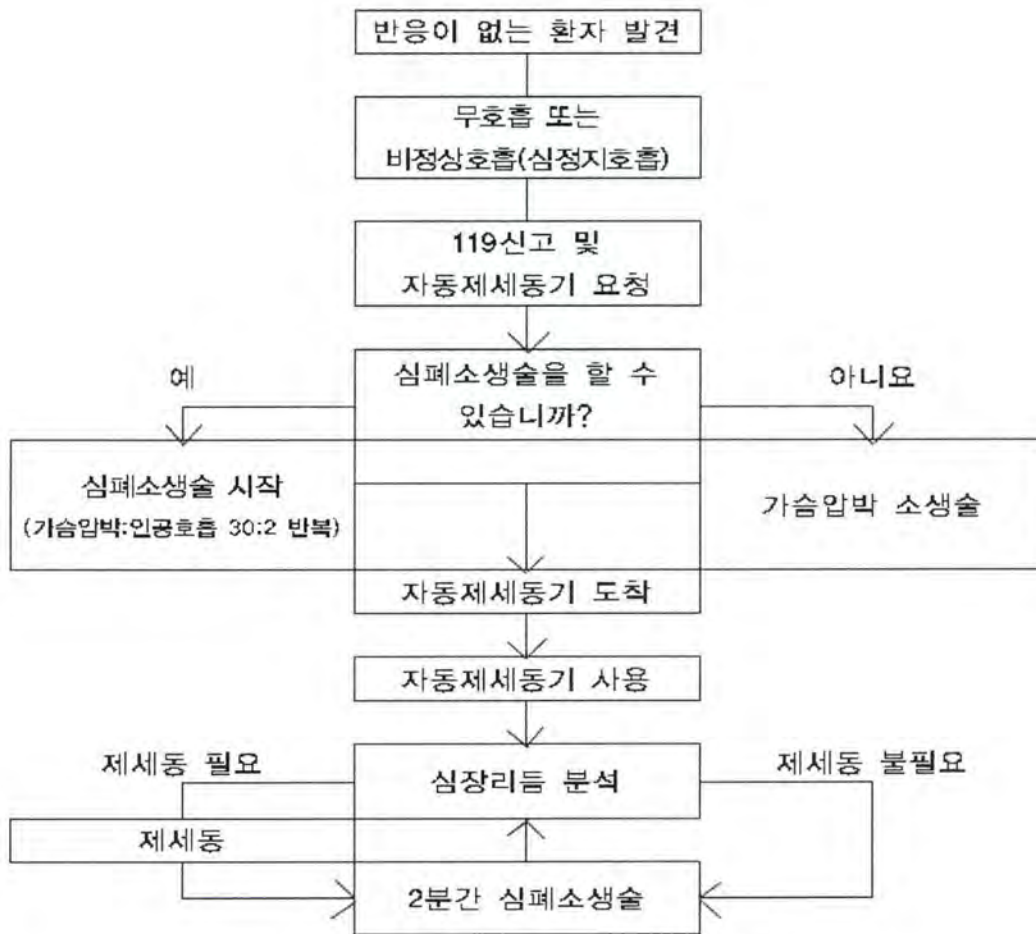


그림 10-4. 일반 시민에 의한 기본소생술 흐름

#### ㉠ 심폐소생술 순서 및 실시방법

##### ㉡ 반응확인 및 신고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봄. 이 때 환자가 반응은 있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상담원의 지시를 따름.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심정지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함.

##### ㉢ 가슴압박

- 압박 위치 : 가슴뼈 하부 1/2
- 손의 위치 : 양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이 환자 가슴에 닿지 않도록
- 자세 : 환자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 위에 위치시키고, 처치자는 다리를 어깨넓이로 하여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가함.
- 압박술 : 속도-100~120회/분, 깊이 4-5cm



그림. 흉부압박

#### ㉔ 기도확보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을 때 기도폐쇄의 원인은 혀가 중력에 의하여 아래로 처지고 목구멍의 근육도 이완된 상태에서 혀가 숨쉬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막혀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므로, 적절한 자세교정을 하여 막힌 숨길을 열어주어야 함.

#### ㉕ 일반적인 기도 확보법 : 두부후굴 하악거상법 = 머리젓히고 턱 들기

구체적인 방법은 이마에 한 손을 대고 이마를 뒤로 젓히며,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올려 턱의 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유지.

#### ▷ 인공호흡

일반적으로 인공호흡은 구강대 구강법을 시행함.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호흡이 없으면 무조건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하는데 이를 구조호흡이라고 함.

#### ▷ 구강대 구강법

-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는다.
- 숨을 적당히 들이쉬고 후 환자의 입 주위를 자신의 입으로 덮는다.
-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일정하게 불어넣는다.  
(약 1초에 걸쳐 1회 500-600ml 불어 넣음)
- 입과 코를 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 호흡 1회당 약 5초, 분당 10-12회 실시

㉔ 기본 소생술 요점정리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		
가슴압박 속도	100~120회/분		
가슴압박 깊이	5~6cm	가슴깊이의 1/3(5cm)	가슴깊이의 1/3(4cm)
가슴 이완	가슴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 시는 10초 이내)		
기도유지	머리젓히고 턱들기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30:2	30:2 (1인 구조자) 15:2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시행(인공호흡 생략)		

표 10-1. 기본 소생술의 요점 정리

㉕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기계에 의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전기적 제세동임.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함. 자동제세동기는 의료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러므로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상시적으로 비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세동기를 환자에게 사용해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률로 규정함.

㉖ 하임리히법

기도란 사람이 호흡을 할 때에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통로를 가리킴. 기도가 막히면 혈액으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4분 이내에 의식을 잃으며, 4-6분이 경과되면 뇌가 손상되고, 10분이 경과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㉗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다음은 기도가 폐쇄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함.

(1) 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

- ① 소아나 노인: 이물질(사탕, 고기, 땅콩 등)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
- ② 외상/사고: 입안이 손상되어 부러진 치아나 출혈 등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 ③ 의식이 없는 경우: 혀가 뒤로 말리는 바람에, 또는 구토물에 의해 막히는 경우

㉠ 기도가 폐쇄시의 증상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감아쥐는 행동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됨. 또한 기도가 일부분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침을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매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을 나타냄.

㉡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기도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 하는데 방법은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의 배꼽에서 명치 사이의 복부를 두 손으로 밀어올려서 이물을 제거하고 이물 제거를 확인함. 호흡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기침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함.



그림. 하임리히법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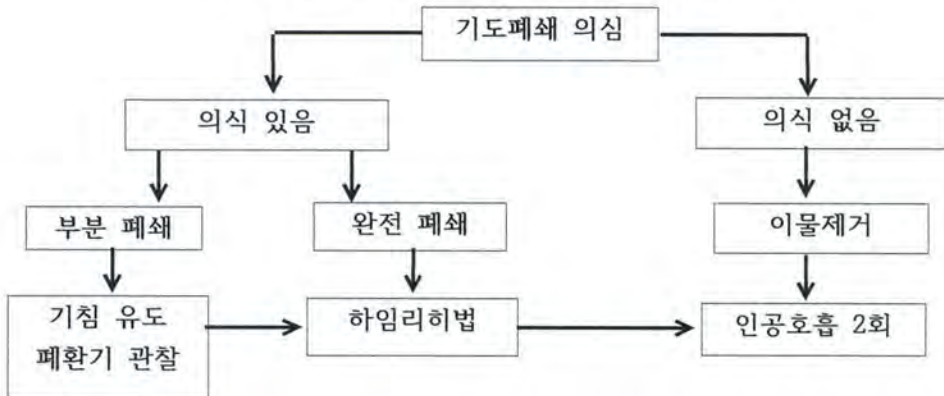


그림. 기도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순서

③ 긴급 상황별 응급조치법

▷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인 자리는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독에 의한 붓기를 가라앉히고, 아픔이 가시는 데 도움이 됨. 꿀벌은 침이 박혔나 살펴 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는데 침 제거는 바늘로 살살 긁어 주어 시행함.

여러 곳을 쓰인 후 온 몸이 붓고 가렵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음.  
 주의할 점으로서 벌침이 박힌 자리는 핀셋이나 손톱으로 제거하다 보면 벌침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늘이나 칼로 긁어주는 것이 좋으며 없으면 신용카드 등으로도 긁어서 제거할 수 있음.  
 또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전신 발작 및 부종 등의 증상은 전신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함.

#### ▷ 뱀에 물렸을 때

환자는 안정시키고, 물린 부위를 물로 씻어내며 깨끗한 넓은 천 같은 것으로 물린 부위의 위, 아래쪽에 적당한 압력으로 묶음.

이 때 너무 팍 묶어 전혀 피가 통하지 않게 하면 안 되고 정맥피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동맥피는 어느 정도 흐를 수 있는 적당한 압력이 좋음.

물린 부위 주위를 움직이지 않게 부목으로 고정시킨 후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함.

뱀에 물렸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뱀에 물린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입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구조자의 몸에도 독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 된장 등 다른 물질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자극하고 더럽히는 결과가 되기 쉽다.
- 칼로 상처를 절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환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꾸 움직이면 독이 몸으로 더 퍼질 수 있다.

#### ▷ 상처가 났을 경우

- 찰과상: 조금 베었을 때나 약간 다친 경우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음.
- 깊은 상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  
 단, 피가 많이 날 때에는 소독된 거즈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병원에 가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물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금함.
- 가시가 박혔을 때: 사용하는 족집게는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불에 달구어 식혀서 사용하도록 하고 족집게 등으로도 잘 안 빠지는 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함.

#### ▷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경우

- '뜨거운 밥을 한 덩이 삼킨다.'는 민간요법은 사용하지 않음. 자칫 밥덩이에 눌러 가시가 더 깊이 박힐 수 있음.
- 입을 크게 벌리고 거울에 가시가 보이면 핀셋으로 집어 꺼냄.

- 가시가 보이지 않는다면 날달걀을 마시거나 식초물로 양치질을 여러번 함. 가시가 부드러워져 식도를 타고 내려 갈 수 있음.

- 그래도 가시가 빠지지 않으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

#### ▷ 유리가 살갓에 박힌 경우

- 유리조각이나 가시가 박혔을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

- 우선 상처 주위를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닦음.

- 끝이 보이면 핀셋을 소독하여 뽑아냄.

- 박힌 조각을 빼낸 후에는 박혔던 자리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1회용 반창고를 붙임.

- 끝이 보이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함.

#### ▷ 멍이 든 경우

- 얼음을 깨뜨려 비닐 주머니에 담고 얇은 천으로 감싸 습포를 만듦.

- 습포로 멍이 든 부위를 덮는다. 습포가 너무 차서 제대로 덮을 수가 없으면 더 두꺼운 천에 씌.

-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복용함.

#### ▷ 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

- 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림.

-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킴.

- 가스밸브를 잠금.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여 편안하게 누인 후 상태를 관찰함.

#### ▷ 동물에게 물린 경우

- 흐르는 물로 물린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름.

- 상처가 가벼워도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인 경우 반드시 그날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음.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상처가 가벼워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음.

#### ▷ 온몸에서 갑자기 열이 날 경우

- 옷을 벗긴 다음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가슴, 등, 머리, 목, 팔다리를 닦아줌.

- 열이 내리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서서히 차가운 물로 바꿔가며 전신을 닦음.

- 침이나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경련으로 혀를 깨물 염려가 있을 때는 거즈나 손수건을 말아서 입에 물리고 병원으로 옮김.
- 소아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킬 경우 부모가 침착하게 대응하며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므로 아이를 안고 흔들는 것은 좋지 않음.
-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가능한 한 오래 참음.

#### ▷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진 경우

- 머리와 가슴 쪽에 손상을 입었다면 쇼크 증세가 있는지 확인.
- 쇼크 증세가 왔을 때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해짐.
- 쇼크 증세가 없다면 상체를 일으켜 앉힘.
- 출혈 부위가 있다면 압박 진행.
- 쇼크 증세가 나타날 경우 다리를 상체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척추를 고정시킨 채로 옆으로 눕힘.
- 환자가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면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발견 당시의 자세로 고정시킴.

#### ▷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

- 환자의 코와 입에 귀를 대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확인.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
-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구조대에 연락을 취함.
- 구조대가 도착하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연령이 많을 경우 척추가 손상되거나 골반 골절이 오는 등 추가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심히 관찰.

#### ▷ 감전사고의 경우

- 감전된 어린이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됨.
- 우선 플러그, 퓨즈 상자에서 전기를 단절시킴.
- 전기차단이 어려우면 막대를 이용하여 전기로부터 어린이를 떼어 놓음.
-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 후에도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린이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힘.

####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

-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어린이의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면서 젖혀 눈꺼풀 안쪽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 이물질이 함께 씻겨 나오도록 함.
-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대고 눈을 깜박거리려 씻어냄.
- 눈을 씻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어른들에게 눈꺼풀을 젖혀서 물에 적신 면봉이나 거즈로 닦아 내거나 빨아들이게 함.
- 화학물질의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 주고 화학물질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바로 응급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

#### ▷ 머리를 다친 경우

-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함.
- 머리에는 베개나 담요를 말아 괴어 주고 구토물이나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눕힘.
-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줌.
- 혹이 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하고 꼭 쉬게 함.
-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귀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함.

#### ▷ 뼈가 부러진 경우

- 다리 골절
  - 아이를 부드럽게 누이고 다리를 무릎과 발목을 받쳐줌.
  - 다친 다리에 패드를 대어 고정
- 쇄골 골절
  - 아이를 부드럽게 앉히고 다친 쪽의 팔을 가슴부위에 걸쳐놓음. 다치지 않은 손으로는 다친 쪽의 팔을 받치게 함.
  - 아이의 팔을 팔 걸대로 받쳐줌.
  - 팔을 넓은 폭 붕대로 고정.

#### ▷ 발목을 삐었을 경우

- 먼저 상처를 확인하고 피가 흐르면 세게 눌러서 피를 멎게 함.
- 발목을 약간 높게 올리고 쉬게 함.
- 뺨 부위를 찬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얼음물에 20~30분간 담금.
- 심한 경우는 발목에 딱딱한 것을 받쳐 주고 탄력붕대로 감아줘야 함.

▷ 이물질을 삼켰을 경우

- 유독물질을 마셨을 경우는 물이나 우유를 먹여서 함께 토하게 함.
- 빙초산이나 강한 세척제를 마셨을 경우는 토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인 후에 병원에 감.
- 가솔린이나 기름 종류를 마셨을 때에는 토하면 위험하므로 토하지 말게 하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함.

▷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 밝은 빛의 손전등을 귀에 비춰 벌레가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게 함.
- 죽은 벌레나 작은 물체가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베이비오일을 한 두 방울 귀에 떨어뜨린 후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오일에 묻어 밖으로 나옴
- 귀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간 경우는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냄.
- 귀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간 경우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다보면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음.

▷ 코피가 나는 경우

- 머리를 앞으로 숙여 코피가 목 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코를 풀지 않도록 함.
- 양쪽 콧등을 손가락으로 눌러 5분 동안 세게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함.
- 이마나 양쪽 눈 사이에 찬 물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대줌.
- 위의 방법으로도 멎지 않을 경우, 솜이나 바셀린 거즈로 코를 틀어막음.
- 코피가 계속해서 멎추지 않을 때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

▷ 화상을 입은 경우

-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힘.
-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너무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기므로 물을 약하게 튼.
- 되도록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함.
-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함.
- 상처부위가 식으면 얼음으로 찜질..
-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서 상처를 보호.
- 심한 화상을 당했을 때는 옷을 억지로 벗으려고 하지 않아야 함.

- 간장이나 된장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함..
- 상처에 소독 솜이나 기름 등을 사용하면 안됨.
- 화상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 소아 약물, 독물 중독 및 과용

- 어린이가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삼켰거나 삼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실제로 삼켰다고 생각하고 구조를 요청.
- 어린이의 입 주위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아 화상이 있으면 독물을 삼켰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해야 함.
- 어린이가 삼켰다고 의심 가는 물질과 포장 용기를 찾아내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
- 어린이가 의식이 있어도 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독물이 조직을 부식시키는 물질인 산이나 휘발유, 독한 세척제 등이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해야 함.
- 의식이 없다면 바로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는 경우에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에다 인공호흡을 함. 입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어린이를 자극해서는 안 됨.
- 어린이가 토할 경우에는 몸을 옆으로 눕어서 토한 것으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여야함.
  - 토하게 하는 경우
  - 대부분 독극물은 바로 토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최토제(Ipecac)를 먹인 후 물을 많이 마시게 하면 보통 15분 안에 토하게 됨.
  - 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가솔린이나 유류, 강한 산 등을 마셨을 때는 토하게 하면 부식성이 강하므로 더욱 나쁜 결과가 되기도 함. 또한 흡인성 폐렴에 걸리므로 위세척을 해야 함.
  - 체온계의 수은은 먹어도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배설이 될 수 있음. 담배를 먹었다면 거의 저절로 토하게 되고 간혹 30분쯤 지난 뒤 구역질, 구토, 흥분,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4시간이 지나도 이런 증상이 없다면 안심해도 괜찮은 상태라 판단.

▷ 치아가 빠졌을 경우

- 젓니: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깨끗한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
- 영구치: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치아가 더러워졌으면 흠,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로만 흐르는 물이나 우유에 씻어 줌. 치아의 뿌리 부분을 절대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고 병원으로 가져가도록 함.

④ 가정내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7가지 위험요소

- ㉠ 추락사고 : 창문이나 베란다 옆에 침대, 의자 등의 가구를 두거나 장난감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

을 두고 안전창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낙상사고인 만큼 창문이나 베란다 옆에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를 두거나 장난감을 두어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 또한 방충망으로는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창문에는 낙상방지용 안전창살을 설치하는 것이 좋음.

㉠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물건, 바퀴 달린 장난감, 전선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계단 넘어짐 사례)

-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러짐 사고는 잠깐 아이에게서 눈을 떴을 사이 눈 깜짝할 순간에 발생하며 대부분 부모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험요소를 제거해 두어야 함. 특히 바닥의 물기나,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물건이나 장난감, 전선 등에 의해 넘어질 경우 머리를 다치기 쉬우므로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항상 정리정돈을 해 둬.

㉡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 찢어짐 사고 : 가구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 부딪히는 사고는 주로 가구와 관련해서 발생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걸음이 익숙하지 못한 아이가 부딪혔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 모서리가 둥글어야 하며, 날카로운 경우 모서리 보호대를 부착함.

㉢ 화상사고 : 밥솥이나 다리미를 어린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경우

- 밥솥이 뜸을 들일 때 분출되는 증기로 인해 화상사고를 당할 경우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보다 훨씬 심하게 다치며, 다리미의 코드를 꽂은 채로 두는 것도 매우 위험. 또한 난로와 같은 전열 기구에는 보호막이 있어야 함.

㉣ 전기안전사고 : 전기 콘센트에 안전 커버가 없는 경우

- 어린이들은 움푹 팬 곳에 손가락이나 젓가락을 집어넣길 좋아함. 따라서 안전커버를 덮어 감전 사고를 예방.

㉤ 질식 및 중독사고 : 의약품, 락스, 제초제 등 유독 물질을 어린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경우

- 어린이는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입에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알약이나 사용하다 남은 제초제, 농약을 음료수 병, 박카스 병 등에 담아놓거나 아이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둘 경우 음독사고가 발생하기 쉬움.

㉥ 익사 및 기타사고: 화장실 변기, 싱크대, 가위나 칼이 들어있는 서랍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린이를 목욕시키다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를 받고 온 사이 익사)

-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시기의 어린이는 화장실 변기 속에 빠져 익사하거나 싱크대나 서랍을 열어 칼, 가위 등 위험한 물질을 끄집어내서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 수동 개폐 잠금장치를 하고 있으며 이미 일반적으로 생활화해야함.



⑤ 가스 누출시 올바른 환기방법

- 당황하지 말고 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음.
- 먼저 연소기 점화꼭,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가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고, 창문을 비롯하여 출입문 등을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환기함. 전기 기구를 켜거나 끌 때에 스파크가 발생하는데, 누출된 가스는 작은 전기스파크로도 불이 붙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나 방석,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쓸어내듯이 밖으로 몰아냄.
-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에 머물고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정으로 확산되므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택함.

5) 미국의 가정 안전 권장 수칙

장소	예방대책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 플라스틱 백, 라이터, 성냥은 어린이가 손대지 못하도록 잠가 놓습니다.</li> <li>◦ 조리 중에 자리를 떠날 때는 냄비의 손잡이를 스토브 뒤쪽으로 돌려놓고 뜨거운 액체나 음식물을 탁자의 모서리에 두지 않음으로써 화재와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li> <li>◦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멈춤, 떨어뜨림, 구르기의 일련의 과정을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숙지시킵니다.</li> <li>◦ 어린이에게 딱딱한 캔디, 견과류, 포도, 팝콘, 당근, 건포도 같은 목에 걸릴 수 있는 딱딱하고 둥근 음식물은 주지 않습니다.</li> <li>◦ 정수기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는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 뜨거운 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피합니다.</li> </ul>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를 유아용 침대(바가 있는 침대)에서 등을 바닥으로 해서 재울 때에는 베개를 베지 않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침구류를 깔아 줍니다.</li> <li>◦ 유아용 침대를 사용할 때에는 국내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하되 매트리스는 잘 맞고 아늑한 것으로 사용합니다.</li> <li>◦ 작은 완구, 풍선, 작은 공은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합니다.</li> <li>◦ 완구를 고를 때에는 연령 표시를 확인합니다. 완구 정리 서랍에는 안전 뚜껑 지지대(safetylids supports ) 가 있어야 합니다.</li> <li>◦ 목 졸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블라인드용 술장식을 사용하고 완구나 노리개 젓꼭지에 끈을 달지 않습니다.</li> </ul>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에 특히 목욕 중인 어린이를 혼자 남겨두지 않습니다.</li> <li>◦ 뜨거운 증기나 물에 의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 끓이기 온도계를 50°C에 세팅해 두고 반화상 기기를 설치합니다.</li> <li>◦ 욕조와 샤워기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와 손잡이 바를 설치합니다.</li> <li>◦ 헤어 드라이기, 컬리 아이롱과 같은 가전 기기는 어린이의 손과 물이 닿지 않게 합니다.</li> </ul>
모든 생활 장소/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를 피울 경우 집안에서, 특히 어린이 주위에서 피우는 것을 금합니다.</li> <li>◦ 난로, 벽난로, 나무를 태우는 난로, 실내용 난방기구, 가정용 가스 기기는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매년 검사합니다.</li> <li>◦ 계단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차단하도록 한 안전 문, 콘센트의 구멍을 막는 안전 플러그, 서랍이나 캐비닛의 안전 빗장을 사용합니다.</li> <li>◦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도와 계단에 적절한 조명을 하고 미끄럼방지를 위해 플러그를 바닥에 고정시킵니다.</li> <li>◦ 세정제, 살충제, 기타 잠재적 위험 물질은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어린이가 손대지 않도록 보관합니다.</li> </ul>

<출처: 미국 CPSC 자료>

## 6) 가정 안전 사고 예방 실천 수칙

첫째, 가정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심장압박, 인공호흡법 등 심폐 소생술법과 하임리히법을 습득하겠습니다.

둘째, 가정 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모두 찾아 안전하게 해놓겠습니다.

셋째, 비눗물로 가스 밸브에 묻혀 가스가 누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가스 누출시 올바른 환기방법을 습득 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응급 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습득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기·가스 등 각종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정내 소화기를 비치하겠습니다.

### ※Tip1. 가정안전 체크리스트 항목

- 부엌이나 세탁장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는 유해 물질들이 아동보호포장으로 되어있습니까?
-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보관함에 자물쇠나 안전빗장이 있습니까?
- 배수관 세척제나 표백제와 같은 위험 물질은 모두 본래의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조리대, 도마, 행주, 수세미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합니까?
- 2층이상 창문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가사용 세제와 도구를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할 때 안전하게 치워놓습니까?
- 살충제와 같은 유해제품이 음식물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보관되어 있습니까?
- 식사 보조용의자에 아이 혼자 두지 않으며 하며 항상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가스레인지의 안쪽 버너를 사용하고 냄비의 손잡이는 뒤쪽 방향으로 돌려놓습니까?
- 욕실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약의 뚜껑이 어린이들이 쉽게 열 수 없는 것입니까?
- 유독성 세제와 화장품, 목욕용품 등이 어린아이가 닿을 수 없도록 보관되어 있습니까?
- 좌변기의 뚜껑에 안전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욕조와 세면대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 탁자에 담배, 성냥,ライター 등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 2층이상 창문 앞에 피아노, 침대가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 아파트의 베란다 앞 책상, 의자를 놓아 자칫 어린이의 추락 위험을 부추기지는 않았습니까?
- 소화기는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있습니까?
- 장난감과 장난감의 부품, 풍선 등 작은 물건이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 층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매년 배터리를 교체합니까?
- 창문 블라인드나 커튼 줄이 내려온 곳에 아기의 침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 화장수, 향수, 아세톤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침대 기둥의 간격은 6cm를 넘지 않고 빠진 기둥이 없습니까?
- 매트리스는 가장자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습니까?
- 부품이 느슨한 부분이 없습니까?

## 과제2. 비상구 확인하기

### 1) 과제 개요

모든 국민들에게 비상구 확인하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 후 평상시 노래방, 호프집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시 “비상구가 어디있어요”하며 확인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업주는 평상시에 비상구를 탈출이 용이토록 개방해놓고 시민들은 만일 비상상황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

### 2) 과제 선정 사유

-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성남 노래방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시 항상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사고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더욱이 화재사고 발생시 비상구가 열쇠로 잠겨 있거나 또는 비상구 통로 계단에 술박스가 크게 쌓여 있어 비상시 전혀 기능을 못하여 사고를 키우는 사례도 계속 발생함
- 특히 화재 사고 발생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평상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경우 사고시 빠르게 대피하여 사고를 모면할 수 있음

### 3) 실제 발생 사고 사례

사례1.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 1999년 10월 30일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시작됐으나 2층 호프집은 창문등을 패널로 막아 비상구를 찾지 못한 손님56명 사망, 81명 중경상

사례2.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 : 2009년 11월 14일 신창동 국제시장 4공구에 있는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건물과 시설이 낡았고 출입구가 비좁아 비상구를 찾지 못해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5명 등 15명이 화재로 사망

사례3. 씨랜드 화재사고 : 수련원 준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1999년 6월 30일 23명 사망, 6명이 부상당함

### 4) 일본의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 사례

- 호텔 숙박시 안내서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머리로 확인하지 말고, 직접 따라가서 눈으로 확인토록 하는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을 전개함
- 또한 대형건물의 유리창에 반드시 지진, 재난 발생시 119소방대원이 건물로 들어가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지점표시로 빨간색 역삼각형 표시를 모두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함

※Tip : 안전의식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례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규모 9.1지진 발생 시 영국인 9세 소녀 킬리스미스가 조그만 섬에서 100여명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해외 토픽에 보도됨

- 엄마와 해안가에서 산책을 즐기던 킬리스미스가 바닷물이 프라이팬에 물이 끓는 듯이 곳곳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 또한 파도가 완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물방울이 솟아오르며 급기야는 물살이 바닷가 쪽으로 급격히 빠짐.

물고기가 바닷물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 수영객이 물고기를 주우러 뛰어들 때 킬리스미스가 엄마에게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배웠는데 이런 현상이 지진해일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빨리 피해야 한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해일이 몰려온다."는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함

- 엄마가 관리인에게 이야기하여 수영객을 모두 건물 안으로 대피시킴. 건물로 대피한지 채 5분도 안되어 엄청난 해일이 몰려와 무려 23만 명을 사망, 실종시킴, 이 섬에서는 한명도 다치지 않음.

- 만일 이 소녀가 옆 섬에 갔으면 옆 섬은 살고 이 섬은 많은 사망, 실종자가 나왔을 것임

#### 5) 비상구 확인하기 위한 실천수칙

첫째, 노래방, 호프집 등 다중 이용 업소 방문시, 특히 지하시설 이용시 반드시 주인에게 "비상구가 어디있습니까?"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둘째, 확인된 비상구를 직접 따라가 눈으로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영업주가 비상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 비상구를 확보토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주민 등 지인들에게 비상구 확인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상 삶속에서 비상구 확인하기처럼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6) 비상구 미확보시 처벌 규정

- 비상구를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 80조에 의거 200만원이하 벌금부과가 가능

- 소방법 94조에 의한 비상구 유지관리 규정을 보면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여 화

재 등 비상시 피난활동을 불가능케 할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시 200만원의 벌금부과가 가능

- 계단 및 복도, 비상구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역시 소방법 94조에 의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피난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3. 교통안전

3.1 슬로건 :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요!

3.2 실천과제별 교육내용

과제1.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1) 과제 개요

- 교통사고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해줄 경우 운전자가 보는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은 큰 폭으로 줄어들음
-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기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며 내가 먼저 양보운전을 적극 실천하도록 유도함
-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운전자가 양보해 주겠지" 운전자는 "보행자가 양보해 주겠지"하며 서로 먼저 갈려다 사고가 발생하므로 운전자와 보행자간 서로 손으로 의사표시하기 운동을 전개함. 즉,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먼저가겠다"는 표시를 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고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를 해주는 것을 보행자와 운전자간 약속으로 정한 후 스스로 실천화함

2) 과제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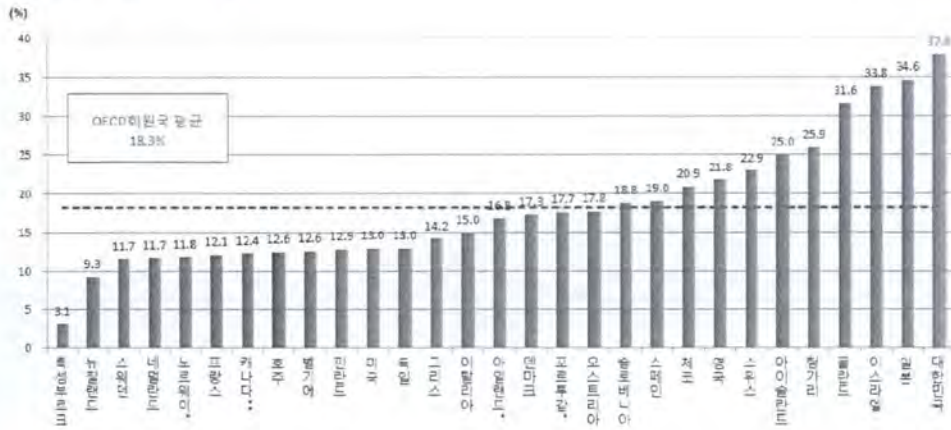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눈에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땀니다"라고 비쳐질 정도로 우리 운전자들이 양보하려는 마음이 매우 부족함
- 실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선진국은 보행중 사망률이 10%대에 불과한데 우리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운전자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주간지인 'Time'에서도 "생명을 담보로 한 스릴을 즐기려면 한국에 가서 운전을 해라"라고 경고할 정도로 한국의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함

3) 실제 보행자 사고 사례

- ①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지극히 후진국형 사고유형을 보이고 있다.

② 실제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각 국가별 보행중 사망률은 룩셈부르크가 3.1%, 뉴질랜드 9.3%, 스웨덴·네덜란드 11.7%이고 OECD국가 평균은 18.3%인데 비해 한국은 37.3%로 가장 꼴찌를 보이고 있다.

**보행 중 사망자수 구성비**



주 : 1) \*-2009년, \*\* -2008년  
 자료 : IRTAD 「[http://cemt.org/IRTAD/Irtad\\_Database.aspx](http://cemt.org/IRTAD/Irtad_Database.aspx), 2012.7

③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도 보행중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의 82%가 보행중에 발생할 정도로 보행자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선진국의 보행자 우선 정책 사례**

- ① 1967년 일본의 동경도지사인 미노베는 혁명적인 교통정책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향후 교통정책의 중심을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겠다는 것임. 향후 모든 도로를 건설할 때 그동안 「도로-차도=인도」를 「도로-인도=차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는 도로건설시 차도보다는 인도부터 만들어서 확실하게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겠다는 것을 천명함.
- ② 프랑스의 도로교통법 219조에 “50m이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보행자는 시계와 차량 속도를 고려해 긴박한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합법화 할 정도로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
- ③ 미국의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좌,우를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보행자 배려 운전을 중요시 하고 있음.  
 실제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시 보행자를 발견한 후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 시험에 불합격될 정도로 양보운전을 강조하고 있음

**5) 보행자 배려운전을 위한 실천 수칙**

- 첫째, 운전을 할 경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일찍 출발하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방어운전을 하겠다.
- 둘째, 횡단보도 진입시 반드시 정지선을 준수하여 보행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 셋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손으로 먼저 가도록 수신호 하겠다.

넷째, 운전자용 녹색불이 들어와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가 없는지 좌,우를 확인한 후 출발하겠다.

다섯째, 나부터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하며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보행자 배려운전을 실천토록 적극 권장하겠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27조 모든 차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미준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벌점 10점에 3만원 ~ 7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 부과함.

- 상기 위반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2배로 가중처벌되어 범칙금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 자전거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 이륜차는 6만원, 자전거는 4만원을 부과함.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범칙금

위반지점	승합자동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일반도로	스쿨존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스쿨존의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적용.

※Tip1. 보행자의 안전보행 체크리스트

### 보행자의 안전보행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20점)	B등급(16점)	D등급(8점)	F등급(4점)	자신의 등급
무단횡단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하는 편이다	
횡단보도 우측통행	항상 우측통행 한다	우측통행 하는 편이다	우측통행 하지 않는 편이다	우측통행 안전성을 전혀 모른다	
보행자 녹색불에 운전자와 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춘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편이다	거의 운전자와 눈맞추기를 안한다	전혀 눈 맞추기를 안한다	
운전자에게 손들어 의사표시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항상 손으로 수신호 한 후 건넌다	손으로 수신호 하는 편이다	거의 수신호 하지 않는다	전혀 수신호 하지 않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항상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 편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 등급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등급	점수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
A 등급	85점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보행자
B 등급	71~85점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보행자
C 등급	60~70점	일반적인 평범한 보행자
D 등급	45~59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한 보행자
F 등급	45점 이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보행자

※Tip2. 운전자의 자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운전자의 자가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A등급(10점)	B등급(8점)	D등급(4점)	F등급(2점)
안전띠착용 생활화	단속과 관계없이 매우 잘 매고 있다.	잘 매는 편이다.	잘 안 매는 편이다.	거의 매지 않고 다닌다.
양보 운전	양보를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잘 안하는 편이다.	거의 양보를 안 한다.
30km 서행운전 (스쿨존, 생활도로)	항상 서행한다.	서행하는 편이다.	서행 안하는 편이다.	전혀 서행 안한다.
차량의 정지선 준수	항상 준수한다.	준수하는 편이다.	준수하지 않는다.	항상 준수하지 않는다.
운전중 휴대폰	일체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한다.
음주 운전	전혀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하는 편이다.
전조등 조기 점등	상대방을 위해 항상 조기 점등 한다.	정시 점등 한다.	늦게 점등하는 편이다.	항상 늦게 점등한다.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는지	항상 켤다.	켜는 편이다.	안 켜는 편이다.	거의 안 켤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또는 서행 여부	항상 한다.	하는 편이다.	하지 않는 편이다.	항상 하지 않는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결코 하지 않는다.	안하는 편이다.	가끔 한다.	항상 한다.

### 등급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평가

등급	점수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 위험 정도	
A 등급	A+	95~100점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최상류층 운전자
	A-	90~94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운전을 하는 상류층 운전자
B 등급	B+	85~89점	양보·방어운전을 잘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B-	80~84점	비교적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안전운전형 운전자
C 등급	C+	75~79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 노력형 평범 운전자
	C-	70~74점	무사 안일한 성격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운전자
D 등급	D+	65~69점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운전하는 하류층 운전자
	D-	60~64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하류층 몰상식 운전자
F 등급	·	59점 이하	지금 당장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최하류층 난폭 운전자

## 과제2. 생활도로 30km이하 서행하기

### 1) 과제개요

“속도를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는 영국의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주는 교통안전 경구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의 80%이상이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의 50%이상이 차도폭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상기 유형의 사고는 전부 속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과속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스쿨존, 생활도로 등에서 시속 30Km이하로 서행운전 하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시급히 요구된다.

### 2) 과제선정사유

○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외국인이 말하길 “한국인은 매우 친절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운전자는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운전자들은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 특히 자동차만 타면 습관적으로 조급해지며, 과속 난폭운전 욕구가 드러나는 등 “당연히 차가 먼저 가야지”하는 천민의식을 소유한 운전자가 너무 많다.

○ 간선도로가 막히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좁은 생활도로로 들어와 지체된 시간을 보상받고 시어하는 보상심리가 발동, 생활도로에서 보다 더 빨리 달리는 운전자도 매우 많다.

### 3) 실제 생활도로 사고 피해 사례

① 한국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의 83%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고의 50% 이상이 차도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② 이렇게 생활도로에서 사고가 많은 원인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안전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운전자가 좁은 생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이다.

### 4) 30km이하 서행운전 실천 수칙

첫째, 우선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이 없는 좁은 생활도로 등 30km 이하 서행운전 지점을 먼저 파악한다.

둘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나올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쿨존, 실버존에서 30km이하로 서행운전을 실천한다.

셋째, 모든 생활도로에서 어린이 등 보행자를 만날 경우 반드시 손으로 먼저 가도록 양보하며 반드시 30km이하로 방어운전을 실천한다.

### 5) 차량 속도 위반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속도위반시 벌점 15점에 3만원 ~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기존 범칙금의 2배가량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 역시 일반도로보다 2배나 가중 처벌된다.

• 차량종류별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6-2)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4만원	17만원	13만원	16만원	9만원	11만원
	40km/h 초과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60km/h 이하						
	20km/h 초과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40km/h 이하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주·정차위반	5만원 * 6만원	9만원 * 10만원	4만원 * 5만원	8만원 * 9만원	-	-	

✓ \* 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 했을 때 적용

• 차량종류별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9)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 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60km/h 이하								
	20km/h 초과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40km/h 이하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통행금지·제한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 운전면허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사항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60km/h 초과	60점	120점
	40km/h 초과 60k/h 이하	30점	6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30점
	20km/h 이하	-	15점
신호·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20점

#### 4. 산업안전

4-1 슬로건 : 안전점검 습관화로 안심일터를 스스로 만들어요

4-2 실천과제 교육내용

과제1.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 1) 과제개요

○ 안전점검은 설비의 불안전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말함.

○ 기기 및 설비의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의 제거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해 방지와 제품의 품질 향상,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재해 요인의 대책과 실시를 계획적으로 하고 기기, 설비의 안전상태 유지 및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임.

○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에 이러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위험을 크게 줄여 나가는 등 스스로 안심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함.

##### 2) 과제 선정 사유

○ 2011년도 사망재해자 2,114명중 9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나 작업중 안전활동 미흡 등 직접원인으로 인한 재해의 비율이 높음
- 불안전 상태로 인한 재해는 기계, 설비 등 물 자체의 결함이 9.2%, 안전방호장치결함이 36.3%나 됨
- 불안전행동으로 인한 재해는 불안전상태방치가 55.6%나 되는데 기계기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위험장소접근, 운전중인 기계장치를 손질하거나 심지어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년도	재해자	사망자	부상	신체장해자	업무상질병	비고
2011	93292	2114	84662	36968	6516	
2010	98645	2200	89459	37440	6986	

##### 3) 안전 점검 미실시 사고 사례

사례1. 배지부 전단 회전부에 끼어있는 인쇄물 제거중 협착

OO공장 생산부 인쇄공정에서 피재자가 기장을 보조하여 인쇄작업중 배지부 전단 회전 부위에 끼어 있는 인쇄물

종이를 덮개를 열고 제거하던 중 손, 팔, 어깨 및 머리 등 신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사망 1명

○ 작업현장 상황

- 동료 작업자(기장)는 급지부에서 인쇄 셋팅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보조 작업자로 인쇄기 및 인쇄 상태를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배지부 덮개에는 인터록 장치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능이 해제된 상태였음

○ 재해자의 행동상황

- 피재자는 배지부에 종이가 걸려있는 것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덮개를 열고 제거하려다 손, 팔 및 머리부위가 협착됨

□ 사고발생원인

○ 운전 중인 상태로 인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 운전 중인 인쇄기에 끼어 걸려 있는 종이를 제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하나 운전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방호장치 해제금지 조치 미흡

-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인쇄기 배지부 뚜껑에 설치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 하고 작업을 실시함

□ 재해예방 안전대책

○ 운전 정지 및 안전조치 후 인쇄기의 이물질 제거 작업 실시

- 인쇄기에 끼어 걸려 있는 종이를 제거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조치후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 방호장치 해제금지

-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 장치를 원상태로 한 후 작업하여야함

사례2. 산소 과잉 누출에 의한 화상 사망

2013년 4월 22일 15:10분경 울산시 동구 소재의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용접부위 곡직작업을 수행하고, 반대편 곡직상태를 확인한 후, UPPER STOOL내에서 다시 곡직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히팅토치(Heating Torch)에 점화하는 순간 산소과잉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화상 / 사망 1명

□ 사고발생원인

○ 통풍이 불충분한 밀폐공간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미설치

- 통풍이 불충분한 밀폐공간인 UPPER STOOL내에서 히팅토치를 이용하여 곡직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지 않음.

※적정공기 : 산소농도 범위가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가 1.5% 미만 수준의 공기.

○ 히팅토치의 취급 부적절 및 작업 중단 시 밸브를 잠그지 않음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조치(소화기구 비치 등) 미실시

□ 재해예방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 대한 환기실시(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히팅토치 취급관리 및 가스등의 공급구 관리 철저

-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철저

4) 선진국의 4단계 재해 예방 활동 모범 사례

STEP 1 안전조회

- 출근과 함께 리더의 주관아래 대형을 갖춘다.

- 아침인사와 함께 동료들의 건강을 확인한다.

- 복장, 보호구를 점검한다.

- 무재해직장 체조 및 근골격계예방체조실시

STEP 2 작업지시 ( 5W 1H )

- 오늘 실시해야 할 작업의 내용, 목표량, 작업장소, 방법, 순서 및 역할 분담

- 기계, 기구 의 작동유무와 이상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STEP 3 위험예지활동

- 오늘 실시해야 할 작업에서의 위험요소 인지

- 위험의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적확인 실시

- 동료들과 손을 잡는 등 구호를 크게 제창(터치 앤드 콜 기법 활용)

구호 : 내 가정 우리 회사 내가 지키자. 좋아! 우리 회사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

- 작업중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실시

- 안전보건수칙을 게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 진행순서

①현수막부착 → ② 일일지적확인 → ③정리정돈 및 수칙준수 → ④자체주간점검 (활동내용 정리) → ⑤ 개선 및 평가 → ⑥으로feedback

STEP 4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 작업수행에 대한 복명 실시, 보고서 등 제출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등 실시
- 동료들과 함께 터치 앤드 콜 실시 : 오늘도 무재해 달성, 좋아

5) 안전점검 습관화를 위한 실천수칙

첫째, “한번 발생한 사고는 또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기존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점검 습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둘째, 근무 시작 전 오늘 할 작업의 내용, 작업 장소와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인지한다.

셋째, 기기나 설비의 결함,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는지 안전장구는 잘 착용했는지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과제2. 작업장 안전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

1) 과제개요

○ 보호구의 정의 및 특성

보호구란, 재해방지나 건강장해방지의 목적에서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이며,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안전 보호구라 하며, 건강장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건 보호구라 칭하며, 직접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아님

○ 보호구의 종류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보호구는

①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②안전대 ③ 안전화 ④ 안전장갑

⑤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⑥용접용 보안면 ⑦방진 마스크

⑧ 방독 마스크 ⑨송기마스크 ⑩전동식 호흡 보호구 ⑪ 보호복(방열복)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이 있음.

○ 산업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보호장구착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적극 조성함.

2) 과제선정사유

○ 2011년도 사망재해자 2,114명중 9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원인으로 인한 재해의 비율이 높음 - 불안전상태로 인한 재해는 복잡

보호구의 결함이 9.2%나 됨

- 불안전행동으로 인한 재해는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이 9.2%나 됨

년도	재해자	사망자	부상	신체장해자	업무상질병	비고
2011	93292	2114	84662	36968	6516	
2010	98645	2200	89459	37440	6986	

\*최근 산업재해 통계

○ 특히 50세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의 사고는 43000명으로 전체재해의 46%나 차지하고 이들의 관리와 특히 보호구 사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큼

### 3) 안전보호구 미착용 사고사례

사례1. 족장(비계) 철거 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추락

2009년 10월6일(화) 10시 20분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서 신조 중인 정유운반선의 저장탱크 내부에서 족장 철거작업 중 높이 약 17m인 상부 족장에서 탱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추락/사망 1명

□ 사고 발생원인(조사중)

○ 족장(비계) 철거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적정성

- 안전대 사용여부 또는 안전방망 설치여부 등

□ 재해예방대책(조사중)

○ 추락방지조치 실시

- 족장(비계) 철거 작업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로프등)를 선행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 족장 철거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정상적인 사용상태 관리감독

사례2.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건물 청소작업중 추락사망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건물관리업에서 피해자가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하여 건물 유리창을 물청소하던 중 약 4.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 원인

○ 개인 보호구 미착용

- 피재자가 작업한 장소(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운반구)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피재자가 작업한 장소(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운반구)는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 지휘자 미지정

-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또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 미지정

□ 동종재해예방대책

○ 개인 보호구 착용(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조)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

5) 안전 보호구 착용을 위한 실천 수칙

첫째, 안전한 보호구 선택방법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스스로 습득한 후 주위 동료들에게 적극 알려준다.

둘째, 작업 현장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부터 안전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한다.

셋째, 주위 동료가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과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준 후 스스로 안전 보호구를 착용토록 권장한다.

6)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처벌 조항

- 2013년 6월 1일부터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동안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시 1차 경고시 2차 적발시 과태료 올려왔으나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져 즉시 부과로 변경함.
-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되어있음.

## 제6장. 31개 시,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 1. 우리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Zero화 하겠다”는 각오로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적극 앞장서고 민.관.기업.언론.공익단체 등이 힘을 합쳐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큰 폭으로 줄여 나갈

#### 2) 사업 참여단체

- 국가 지자체 :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공공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교통연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남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민간기관 :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남부지역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경기대표, 경기도 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경기도 녹색어머니 연합회, 경기도 새마을 교통봉사대, 경기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지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영자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산업보건센터

#### 3) 사업 수행방법

- 1차 : 우리 지역의 민.관.기업.언론 등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 단체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차 : 대표적 기관, 단체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함
- 3차 : 상기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사고 Zero운동 실행팀들이 각각 맡은 맞춤형 활동 매뉴얼에 맞춰 활동을 전개함

#### 4) 안전사고 Zero운동 실행팀의 활동 매뉴얼

##### 1) 官

##### ① 지자체장

- 안전사고 Zero운동 실행 사업의 재정 지원

- 우리 지자체의 안전 조직 강화
- 우리 지역의 안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② 국회의원
  - 안전부를 통한 우리지역의 안전 교부금 지원 유도
  - 지자체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강구
- ③ 의회 의원
  - 우리 지역의 교통 특성을 감안한 안전 조례 제정
  - 우리 지자체가 안전 조직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하는 역할 수행
- ④ 교육청
  -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 어머니안전지도자를 통한 학교 순회 안전 교육 실시
  -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님의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참여 요청
- ⑤ 경찰서
  -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 강화 홍보와 강력한 단속 실시
  -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안전 교육 강화
  - 지역의 안전사고 사례 분석 내용 제공

## 2) 민

- ① 시민단체 (녹색, 모범, 안실련, 해병대, 의용소방대, 새마을 등)
  - 인구 10만명당 안전 안전사고 사망자 1명 감소 사업 적극 추진
- ② 지역 시민
  - 우리 지역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십계명 준수(별첨)등 동 운동 적극 참여
  - 안전사고 Zero운동 동참 회원으로 참여
- ③ 운전자
  - 3가지 약속 준수 및 「안전사고 Zero운동 스티커 부착」
  - ※운전자-운전자 약속 : 하루에 10번씩 양보, 내가 먼저 양보
  - 운전자-보행자 약속 : “먼저 가라”고 손으로 의사표시하기 운동
  - 보행자-보행자 약속 : 차에서 내린 후 보행자 입장에서 무단횡단 안 할 것을 약속
  - ※나부터 3가지 운동전개 : 양보운전, 정지선 준수, 안전띠 착용

## 3) 기업 : 손해 보험사 (보험 설계사)등 관내 기업

- 우리지역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기업들의 연합체 구성, 재정지원
- 기업 직원들 역시 우리 지역 주민, 운전자 입장에서 민의 역할 충실히 수행

## 4) 언론

- 우리 지역 안전사고 Zero운동을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 지역민이 나서서 Zero화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5) 교통관련 유관단체 (안전공단, 버스·택시 공제조합 등)
- 안전사고 Zero운동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련자료 제공
  - 안전사고 Zero운동 추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 6) 공익단체 (라이온스, 로타리, 약사회 등)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운동 적극 참여 및 재정 지원

- 7) 종교조직
-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보급 및 홍보

## 2. 우리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내용

- <사업1>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사례 분석 실시
- 사고원인, 사고유형, 특성 등 파악
  - 인적, 도로환경적, 제도적 측면의 사고예방방법 도출

- <사업2>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 작성
-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의회, 지역경찰서 등 관의 역할
  - 지역 언론과 기업, 공익단체의 역할
  - 시민단체와 개별시민(운전자, 보행자)의 역할

- <사업3>시민단체 등 Zero운동 실행팀과 안전 간담회
- 상기 맞춤형 활동 매뉴얼 실행 주체들이 모여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사업4>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 제로 비전 활동 매뉴얼 실행 팀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제로화 하겠다.”는 각오로 선포식 개최
  - 우리 지역의 안전 증진을 위한 민, 관, 기업, 언론 등에게 『맞춤형 활동 매뉴얼』제공

- <사업5>1차로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1명씩 감소 사업 추진

- [세부사업1]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 사업
- 미취학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 인증서를 받은 후 초등학교 입학 시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는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교육 시스템을 도입함

[세부사업2]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순회 교육 사업

- 우리 지역의 어머니안전지도사회가 주축이 되어 교육용 신호등, 횡단보도 등 실습 교보재를 갖고 다니며 우리 지역의 관내 모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함

[세부사업3] 대 지역민 안전사고 예방법 홍보, 계몽사업

- 모범운전자회 등 우리 지역의 관내 모든 사업용 택시가 주축이 되어 차내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지역민 동참방안」 리플릿을 비치 후 승객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실제 구체적 동참방안을 알려줌

[세부사업4]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지수 향상 사업

- 우리지역의 운전자, 보행자의 교통문화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 정지선 준수율, 헬멧 착용률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여 교통문화지수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을 민·관이 함께 함

[세부사업5] 초등학교 워킹스쿨버스 사업

- 워킹스쿨버스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써 스쿨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듯이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함

[세부사업6]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취약지점 제보 및 개선사업

- 우리 지역의 모범운전자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취약지점을 찾아 우리 지역의 경찰서에 제보하여 즉각 개선토록 하며 우리지역의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운전을 당부함

[세부사업7] 인터넷상으로 우리 지역민 안전 교육사업 수행

- 우리 지자체 안전사고 Zero운동 활동 매뉴얼과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우리지역 주민 대상 안전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월 1회씩 실시함

[세부사업8] 지자체장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사업」건의

-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수행해야 할 각종 안전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동 사업이 수행되도록 건의함

[세부사업9] 위반차량감시 계도사업(법규위반자에게 사랑의 편지쓰기운동)

- 우리 지역의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지역의 운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시, 장소, 위반 차량 번호, 위반 내용을 적어 우리 지역 경찰서에 제보한 후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는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함

[세부사업10]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강력단속

- 경찰서에서 주축이 되어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차량 등 안전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함

[세부사업11]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캠페인 전개

(어린이 보호장구 실비 대여 사업도 함께 전개)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과 장착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을 높여 나감
- 현재 16%에 불과한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을 우리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장구 실비 대여 사업 등을 함께 수행하며 선진국처럼 90%대로 보호장구 착용률을 높여 나감

[세부사업12] 안전조례 제정

- 우리 지역의 의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안전 조칙을 강화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세부사업13]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프랑스식 라벨비 제도 도입)

-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줄이기에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한 안전 아이디어는 우리지역 주민과 함께 사고예방사업을 전개함

[세부사업14] 1초등학교 3모범운전자 안전 결연사업

- 모범운전자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 지역의 관내 모든 초등학교 별로 모범운전자 3명씩 안전 결연 사업을 맺어 모범운전자가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지도와 과속난폭차량 계도, 스쿨존 안전사고 취약지점 제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세부사업15] 각종 안전 사업 수행

- 우리 지역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거북이 안전운전 캠페인」, 「하루에 10번씩 양보하세요.」등 제반 안전 이벤트를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지역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감

### 3.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1칙.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으로 건너십시오.

-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보행자의 왼쪽에서 접근하므로 오른쪽으로 간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보다 안전합니다.

2칙. 비상구 찾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 노래방, 호프집 등 특히 지하의 다중이용업소 방문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는 운동입니다.

3칙.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손으로 양보운전을 해주세요.

-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하고, 보행자는 손을 들어 “제가 먼저 갈게요”하는 것을 운전자와 보행자 간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가야 합니다.

4칙. 1가정 1안전 요원화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압박법, 인공 호흡법, 하임리히법 등 심폐 소생술 능력을 길러 주십시오.
- 가정에서 가스 누출시 창문을 열고 신문지나 방석 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으로 바닥이 아닌 천장 윗부분을 쓸어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 ※ 가정에서 쓰는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시 천장 위로 올라가며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 앉습니다.

5칙. 무단횡단은 어린이 안전사고 조장행위입니다.

-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모방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이 바로 주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 하는 것은 자녀에게 안전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칙.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순찰, 동행, 돌봄 서비스 활동을 수행해 주십시오.

- 순찰 서비스 : 우범지역, 사고 취약지점을 순찰하며 개선해 감
- 동행 서비스 :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 어린이들을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해줌
- 돌봄 서비스 :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를 적극 돌보아줌

7칙.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려주세요. (www.go119.org)

- 안전운전 자가진단표에 나와 있는 10가지 점검항목에 스스로 나 자신의 운전행태, 운전습관을 비교하여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가 몇 점인지 평가한 다음 자신의 안전운전 점수를 10점씩만 올리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8칙. 생활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세요.

- 생활안전 가족회의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실제 발생한 어린이 사고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가정의 교육방법이다.

9칙. 자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가지 습관을 길러주세요.

- 첫째. 우선 멈추는 습관  
어린이들이 도로로 나갈 때 또는 도로를 건널 때 뛰지 말고 좌·우를 살펴보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 둘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보행자 초록 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눈으로 차량 멈춤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 셋째.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운전자가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차를 보면서 도로를 건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10칙. 작업전부 안전점검 및 안전보호구 착용운동을 전개해요.

- 작업 전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안전점검하고 작업 후에도 정리정돈을 잘하여 향후 사고위험소지를 아예 없애주세요.
- 반드시 작업 중에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 보호대 착용을 생활화 합니다.

#### 4. 기대효과

-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 줄이기 사업에 지역에 있는 민·관·기업·언론·종교 조직 등 많은 단체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큰 폭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 실제 선진국의 활동 사례들을 고찰 할 때 민·관·기업·언론 등이 함께 할 때 시행 첫 해 안전사고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구체적 사고예방을 위한 실천 10칙 제공 등을 통하여 「안전을 통한 전 지역민의 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을 통해 부모님에게는 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동일 유형의 사고에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 심각한 안전사고를 지역민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해가는 지방자치제도의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민·관·기업·언론 등이 합심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 교통문화가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다.

5. 지자체별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 연간 소요예산

사업명	금 액
안전사고 제로화 간담회	100만원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400만원
안전사고 Zero화 아이디어 공모전	500만원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 교육 인증 사업	1000만원
노인정 순회 안전 교육사업	500만원
안전사고 Zero화 캠페인 (4회)	400만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계도 사업	500만원
안전사고 취약지점 제보 사업	100만원
안전 유공자 시상식	500만원
사고다발지점 맞차사고 관리사업	1000만원
합 계	5000만원

※ 사업 내용과 예산은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1. 경찰청, 2013년판 교통사고 통계
2. 도로교통공단 2010~201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
3. 안전행정부 2011년 안전 교육 표준 교재 지도서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자료집
5. 형사정책 연구원 발행 관련 자료집
6. 전기 안전 공사 발행 관련 자료집
7. 가스 안전 공사 발행 관련 자료집
8. 화재 보험 협회 발행 관련 자료집
9. 승강기 안전 관리원 발행 관련 자료집

##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전 도민 소통 계획(안)

- 전 도민이 안전사고의 잠재적 피해자겸 가해자임
- 전 도민에게 안전사고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내 가족도 나 자신도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며 위기감을 느끼도록 함
- 그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안전사고 예방법 제공 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나부터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을 전개토록함
- 즉 전 도민 모두가 “ 설마 사고가 나겠어, 가 아니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평상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고 생활 하는 것이 안전문화 운동의 핵심임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나 자신과 가족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토록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이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결국 모든 도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함

□ 사업실시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 □ 사업추진방법

○ 첫째, 교통사고, 산업재해,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폐해를 모든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특단의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내 가족도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함

○ 둘째, 그 위기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법을 개발, 전 도민들에게 보급하여 평상시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3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상기 방법을 나부터, 우리가족부터 실천하며 지역주민을 교육·계도할 수 있는 「의식개혁 엘리트군」을 100명씩 양성함

○ 셋째,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 지역민이 나서서 예방하겠다.”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내 민·관·기업·언론·종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해 감

## 2

## 세부 추진 계획

### □ 구체적 추진방법

1) 교통안전, 산업안전, 어린이 안전 분야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상기 사고 유형별 구체적 안전사고 예방 실천방안을 도출함

2) 31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고유형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현황 등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수를 산정, 1위~31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식 개혁 엘리트군」을 100명씩 엄선·양성함

3) 지역별 「의식 개혁 엘리트군」이 주도하여 우리 지역 내 민·관·기업·언론·종교·공익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사고 Zero 운동본부」를 경기 안문협 산하에 결성하고, 동 본부가 주관하여 「안전사고 Zero화 간담회」와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안전 점수와 순위를 높여 나가는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함

4) 31개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가족의 안전사고 Zero 운동 실천 방안」을 제공하고 모든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Zero 운동 동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여 양보운전, 정지선 준수 등을 실천토록 유도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함

5) 연말에 각 자치단체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가장 많이 줄인 지자체, 안전점수와 순위가 높은 우수 지자체와 우수 Zero 운동 본부 및 의식 개혁 엘리트를 포상한 후 우수사례를 타 시·도에 보급하여 모범이 되도록 함

### □ 참가기관 및 단체명단

- 국가 지자체 :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공공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지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교통연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남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민간기관 :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사단 남부지역협의회, 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경기대표, 경기도 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경기도 녹색어머니 연합회, 경기도 새마을 교통봉사대, 경기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지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영자 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산업보건센터

□ 구체적 추진 일정

시 기	내 용
2014년 2월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안전사고 Zero 운동 추진 사업」과 세부 실천계획안 확정</li> </ul>
2014년 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안전사고 및 사고유형별 사망 사례분석, 구체적 사고 예방 방법 도출</li> <li>• 평가지표를 활용한 31개 기초자치단체별 안전점수 산정 및 순위 매김</li> <li>• 31개 지방자치단체별 의식 개혁 엘리트군 100명씩 선정, 교육</li> <li>• 31개 지역별 「안전사고 Zero 운동 본부」 실무책임자 선정</li> </ul>
2014년 6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순회「의식 개혁 엘리트군」대상 안전교육 실시</li> <li>• 31개 지자체 안전 담당과장, 31개 지역별 안전사고 Zero 운동 본부 실무책임자, 지역별 의식 개혁 엘리트군 임원에 대한 1박 2일 워크숍 실시</li> <li>• 「31개 지역별 안전사고 Zero 운동 실무 추진 협의회」결성 및 1차 간담회 개최</li> </ul>
201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개최</li> <li>• 31개 기초자치단체별 안전사고 Zero Vision 선포식 개최</li> </ul>
2014년 선포식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에 맞춰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 운동 사업」추진</li> </ul>

### 3

## 안문협 참여 단체별 역할

### □ 국가·지자체

#### 1) 경기도

-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
-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전 도민 소통계획 작성
- 2014년 43개 단체별 안전사고예방사업 내용, 세부추진계획, 예산 등 자료수집 후 모든 단체가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사고 감소효과 극대화
- 안전문화운동 참여 43개 기관별 활동 매뉴얼 작성
- 안전문화운동 추진 도민 대상 강의 교재 개발, on-off line상 적극 활용
- 31개 시, 군별 의식개혁 엘리트군, 즉 「안전문화운동 추진요원」100명씩 엄선 후 교육강사로 양성
- 손보험회, 민간보험회사, 버스, 택시, 화물 공제 조합 등 안전사고 감소로 수익을 얻는 기관들의 적극 동참 유도
- 운전자 교육, 민방위 교육, 교원 연수 등 각종 연수 시 안전문화운동 교육 실시
- 경기도 관내 기업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안전문화운동 동참 유도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 체험교육 버스 운행 등 어린이 교육사업 시행
- 경기도 내 대학,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종교조직, 의료, 법조계 동참유도
- 31개 시,군에 「우리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운동」적극 추진 독려

#### 2) 경기도지방 경찰청

- 범죄 예방 업무
  - 「범죄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 실천수칙 보급
  - 개방형, 이웃 친화형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인 CPTED운동 전개
  -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동행, 돌봄 서비스 운동 전개
- 교통안전 업무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 감시단 결성, 위반차량 계도 활동 수행
  - 경찰청 산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조직활용, 스쿨존내에서 시민운동형 카파라치 실시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지정 운전자 제도 실시(일본사례 벤치마킹)
    - ※ 일본은 2001년 「음주운전과의 전쟁」선포 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하향하고 동승자까지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음주운전 조절운동 전개, 75%의 사고감소 효과. 현재는 주류업, 음식업 단체들과 합동으로 「우리는 운전하실 분께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운전하실분 께는 음료를 무료로 드립니다」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3) 경기도 교육청

-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안전문화운동 실천 10칙」, 「우리 가족의 교통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전달 후 동참 요청
- 학교 교사, 학부모 등 각종 연수 시 「안전문화운동 실천 방안」포함 요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취약 지점 개선 활동 수행
- 「사이버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제도」초등학교, 유치원에 홍보 후 수강유도
- 초, 중, 고등학교의 안전수업 시 안전문화운동 실천방법 지도

#### 4)고용노동부 경기 지청

- 경기도 내 근로자, 사업주 대상 「우리직장 사고 Zero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프랑스 라벨비 제도 참조)
  -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앗차 사고 사례 안전관리 프로그램 도입(일본 카마가야시의 앗차사고 참조)
  - 경기도 내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안전 서포터즈 실시
- #### 5)경인 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
- 경기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결성 및 제반활동 수행
  - 의약품 오남용 예방 수칙 홍보 및 유효기간 초과한 의약품 약국전달 운동 전개

#### 6)한강 유역 환경청

-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운동」등 제반 캠페인 실시
- 경기도 내 물놀이 시,군 위험 지점 일제 안전 점검 실시
- 7~8월 경기도 내 물놀이 시설에서 음주수영, 구명조끼 착용 등 안문협 소속 단체들이 합동 캠페인 실시

#### 7)31개 시, 군

- 「우리 지자체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수행 예산 5,000만원 확보
- 경기도와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함
- 31개 시,군별 안전문화운동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 공공기관

##### 1)언론사 3개 기관

- 안전문화운동 추진관련 지속적 홍보, 도민 동참 유도
- 3개 언론사 합동 「안전을 통한 전 도민 소통」관련 기획 기사
- 경기도 31개 시,군별 안전문화운동 모범사례 지속 홍보

##### 2)경기 개발 연구원

- 경기 안전문화운동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경기도 내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위한 Sink Tank역할 수행

##### 3)사회안전 공공기관

- ①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청소년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을 위한 제반노력
- ②자살 예방 센터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안문협 소속 단체와 함께 수행
- ③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외국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노력

#### 4)생활안전 공공기관

- ①한국 전기 안전 공사·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전기안전 캠페인 전개
- ②한국 가스 안전 공사·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 전개
- ③승강기 안전 관리원·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승강기안전 캠페인 전개

#### 5)교통안전 공공기관

- ①도로교통공단·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②교통안전공단·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③도로공사·안문협 소속단체와 공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④경기도 교통연수원·사업용 운전자 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 6)산업안전 공공기관

- ①산업안전 보건공단 : 노동부 경기지청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 ②산업안전 단지공단 : 노동부 경기지청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 □ 민간단체

##### 1)기획 홍보 분과4개 민간단체

- 연간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및 홍보방안 작성
- 31개 시,군별 100명씩 「의식개혁 엘리트 군」추천
- 「안전문화운동 실천10칙」홍보 및 생활속 실천

##### 2)사회안전 8개 민간단체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
- 불량식품 추방,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
- 인터넷 상 음란물 퇴치 등 청소년 유해 환경을 퇴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수행
- 가정폭력, 자살예방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

##### 3)생활안전 4개 민간단체

- 의식개혁 엘리트군 추천 안전문화운동 실천10칙 홍보 및 실천
- 경기도 내 안전사고 취약지점 개선운동 등 제반 안전 모니터 활동 수행
-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위한 제반 자율 방재 활동 수행
-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등 「1가정, 1구급 요원화 확보 운동」전개
-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등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

##### 4)교통안전 3개 민간단체

- 의식 개혁 엘리트군 추천, 안전문화운동 실천10칙 홍보 및 실천
- 초등학교 등,하교 어린이들에게 3가지 습관 길러주기 운동 전개
  - 횡단보도 우측에서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정리, 1초등학교 3봉사대원 자매결연 맺기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캠페인 전개

#### 5) 산업안전 3개 민간단체

- 의식 개혁 엘리트군 추천, 안전문화운동 실천 10칙 홍보 및 실천
- 근로자 연수 시 「안전문화운동」강의 실시
- 경기도 내 기업인들이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에 재정지원 등 적극 참여
-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운동 등 감성안전 프로그램 실시
- 산업안전 관련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역할을 뒷받침 함

## 4 소요예산 마련 방안

-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안전사업예산 확보
- 기업의 사회봉사예산과 라이온스 등 봉사예산 중 안전예산 확보

## 5 기대효과

- 1) 우리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안전사고 Zero운동을 전개하여 가족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여 안전문화를 조기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2) 각 지역별 안전사고 Zero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사고를 현저히 감소시켜 줄 수 있다.(시행 첫해 24%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기대)
- 3) “우리지역의 안전사고는 우리지역민이 나서서 예방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의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 4) 전 도민이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법을 평상시 실천토록 유도함으로써 안전을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5) 「우리지역의 안전사고 Zero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와 사회적 소통으로 인해 동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제2, 제3의 지역적 현안사업을 해결해 가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